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043-01

정책보고서 2016-90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 분석 및 2017년 선정기준 연구

최현수 · 오미애 · 진재현 · 천미경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기초연금 2016년 선정기준 및 수급률 제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공저)

【공동연구진】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진재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천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와 용역계약(2016.4)한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 분석 및 2017년 선정기준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제1장 서 론 ····· 1

제2장 장애인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 11

제1절 장애인연금 개요 ····· 13

제2절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 22

제3절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및 지급 ····· 47

제3장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별 소득인정액 구성 분포 분석 ····· 53

제4장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요소별 비중 및 상대적 영향도 분석 ····· 71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DB 구축 ····· 89

제6장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추정 및 2017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 101

참고문헌 ····· 117

부록 ····· 119

〈부록 1〉 장애인연금 도입 및 확대의 빈곤감소 및 소득보장 효과 ····· 119

〈부록 2〉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별 소득재산 항목별 분포 분석 ····· 125

〈부록 3〉 중증장애인 가구 및 노인가구 소득인정액 분포 비교 ····· 166

제 1 장 서 론

1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연금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전환과 더불어 전체 중증 장애인의 70%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장애인연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급가구 및 탈락가구의 소득재산 보유 현황 및 분포 통계 DB 구축이 필요함

○ 이러한 장애인연금 수급·탈락가구의 소득재산 분포 및 특성 분석을 통해 장애인연금 상세 통계 DB 구축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선정체계 형평성 분석,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개선 등 장애인연금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 특히, 2014년 장애인연금 확대에 따른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 및 급여액 인상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 평가 및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자 함

□ 또한, 장애인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2017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액 조정방안을 사전에 도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 2017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공적 행정자료, 2016년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및 배우자 소득·재산정보를 바탕으로,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조정안을 도출하여 정책적으

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을 활용한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분석 및 수급률을 고려한 선정기준 조정방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중증장애인 소득재산분포, 기초연금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누적분포를 기초로 선정기준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장애인연금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급가구 및 탈락가구의 소득재산 보유 현황 및 분포 통계 DB 구축

○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소득재산 분포 심층 분석을 통한 통계 DB 구축

□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및 탈락가구 중증장애인 및 배우자 소득재산 보유 현황 및 분포 심층 분석

○ 공제 전 소득재산 원자료 기준 세부 항목별 보유 분포 심층 분석

○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적용에 따른 소득재산 보유 분포 심층 분석

○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소득재산 보유 분포 및 특성 비교 분석

□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주요 집단별 소득재산 세부 항목별 보유 분포 및 특성 비교 분석

○ 가구유형, 연령, 지역, 장애연금 수급여부 등에 따른 집단별 소득재산 보유 분포 및 특성 비교 분석

□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재산 분포 및 특성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및 수급대상 선정체계 형평성 분석,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등 제도 운영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

○ 소득인정액 산출 개선사항 도출 및 수급변동 정책 모의분석

□ 장애인연금 확대에 따른 신규 수급 및 급여액 인상의 빈곤감소 및 소득보장 효과 분석

○ 2014년 장애인연금 확대에 따른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효과 및 급여액 인상 효과 등을 분석하여 정책 평가 및 홍보,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자 함

- 분석 가능한 행정자료 및 실태조사 등 마이크로데이터를 검토 및 활용하여 장애인연금 확대의 다양한 효과 분석

○ 장애인 소득보장 효과 분석 관련 해외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

- 영국 ISER 워크샵에 참석하여 정책설계 평가에 활용되는 마이크로데이터 기반 정책 효과성 분석프레임 및 방법론 벤치마킹, 영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편 후 효과성 분석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장애인연금의 확대에 따른 효과성 분석에 활용함

□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누적분포표 도출 및 선정기준(안) 제시

○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위한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분석 DB 구축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및 배우자의 행복e음 소득·재산항목별 행정자료 추출 이후, 장애인 등록정보와 소득재산 항목별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Data Linkage 방법론을 활용한 장애인 소득재산 행정 DB 연계 구축

○ 정책 모의분석을 활용하여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안과 연계하여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조정방안 도출

- 2017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분석 DB 구축 및 전체 중증장애인가구 소득인정액 모의분석을 통하여 누적분포 산출
- 중증장애인 규모 및 수급률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및 제시

3. 연구방법

□ 문헌 및 사례 연구

○ 국내 언론 동향 및 선행 연구, 장애인연금 선정체계 등 정책 현황 자료 검토

□ 장애인 소득보장 효과 분석 해외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

○ ISER 정책설계 및 평가에 활용되는 마이크로데이터 기반의 정책효과 분석프레임 및 방법론 벤치마킹, 영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편 후 효과성 분석 연구 자료를 통해 장애인연금 효과성 분석에 활용함

□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 관련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소득재산 분포 심층 분석을 통한 통계 DB 구축

○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및 탈락가구 중증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보유 현황 및 분포 심층 분석

○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주요 집단별 소득재산 세부 항목 보유 분포 및 특성 비교 분석

- 가구유형, 연령, 지역, 장애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집단별 소득재산 보유 분포 및 특성 비교 분석

□ 행정자료 연계에 의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분석 DB 구축 및 심층 분석

○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및 제도 개선방안 적용을 위한 공적 행정자료 추출대상별 분석 DB 연계(data linkage) 및 통계적인 추정방법론에 의한 합리적인 정책 모의분석 DB 구축

○ 분석 DB를 활용한 소득인정액 모의 산출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 누적분포를 기초로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 자문회의 개최

○ 연구수행 방향 및 추진전략, 장애인연금 확대 관련 정책 효과 측정방법 및 분석결과,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 분석결과,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 소득인정액 분포 및 2017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 개편 관련 논의를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함

4. 연구수행체계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연구목적 및 연구방향, 분석 DB 설계 및 구축 기본방향과 지원방안을 마련함

□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과 관련된 DB 구축 및 분석,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조정방안 마련 등 핵심적 연구 수행은 연구진이 담당함

○ 연구진은 DB 구축 및 분석방법론, 연구내용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구함

□ 특히, 본 연구는 장애인연금 수급가구·탈락가구 특성 심층 분석,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에 필요한 분석 DB를 다각적으로 구축해야 함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등 장애인에 대한 공적 행정자료 제공 등 DB 구축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 및 관리함

○ 소득재산 연계정보 제공 및 분석환경 제공은 건강보험공단이 협조하며, 현행 장애인연금 수급장애인 및 배우자 수급신청 및 선정 등과 관련된 공적 행정자료와 기초통계 제공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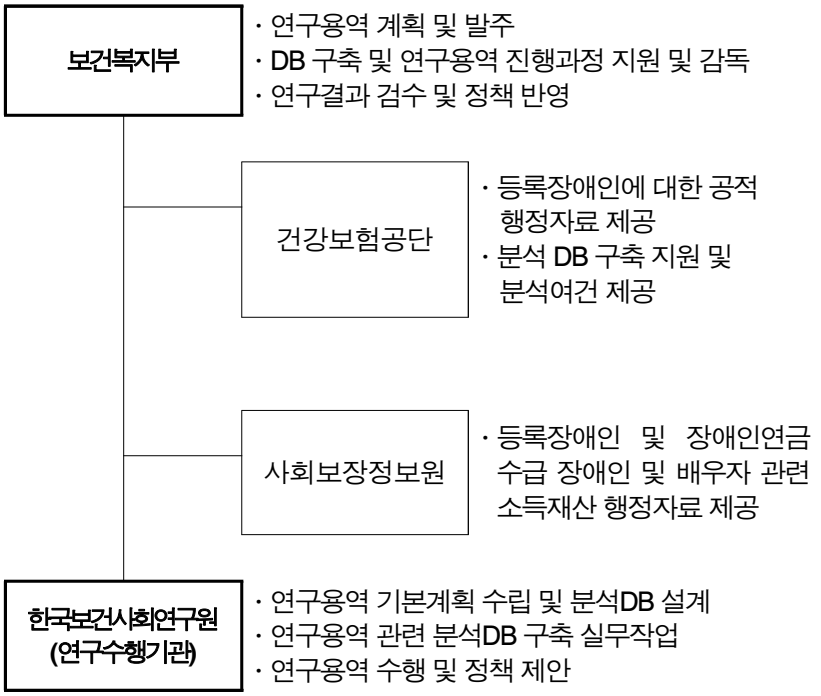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소득재산 보유실태 심층 분석으로, 향후 제도 운영 및 개선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확대 및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개선 등 선정체계 개편과 중장기 발전방안 기초연구로 활용 가능함

□ 2014년 7월 이후 장애인연금 집행 과정에서 축적된 기초자료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수급률 제고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

항을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함

□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및 고시를 위하여 분석 DB 구축과 정책 모의분석을 사전에 실시함으로써 2017년 장애인연금 집행의 효율성 및 수급률 제고에 기여함

제 2 장

장애인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2 장애인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 여기서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및 제도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2016년 현행 장애인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1]를 요약 제시함

제1절 장애인연금 개요

1. 장애인연금의 정의 및 목적

□ 정의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 하는 사회보장제도

□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1) 장애인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개요는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제6권)' 자료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 정리함

2.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신청일 현재,「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수급자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56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상시근로소득-56만원)×30%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 차상위 초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3. 장애인연금의 종류

가. 기초급여(18~64세)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대상자 :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 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 급여액

- 2014.4~2014.6 : 99,1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4.7~2015.3 : 2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5.4~2016.3 : 202,6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6.4~2017.3 : 205,230원(잠정)(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단,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미지급함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의 20% 감액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구 분	차 액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18만원 초과	16만원 초과~18만원 이하	14만원 초과~16만원 이하	12만원 초과~14만원 이하	10만원 초과~12만원이하
	202,60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8만원 초과~10만원 이하	6만원 초과~8만원 이하	4만원 초과~6만원 이하	2만원 초과~4만원 이하	2만원 이하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28만원 초과	24만원 초과~28만원 이하	20만원 초과~24만원 이하	16만원 초과~20만원 이하	
	324,160원	280,000원	240,000원	200,000원	
	12만원 초과~16만원 이하	8만원 초과~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8만원 이하	4만원 이하	
	160,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82만원 미만	82만원 이상 ~ 84만원 미만	84만원 이상 ~ 86만원 미만	86만원 이상 ~ 88만원 미만	88만원 이상 ~ 90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18만원 초과	16만원 초과 ~ 18만원 이하	14만원 초과 ~ 16만원 이하	12만원 초과 ~ 14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202,60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소득인정액	90만원 이상 ~ 92만원 미만	92만원 이상 ~ 94만원 미만	94만원 이상 ~ 96만원 미만	96만원 이상 ~ 98만원 미만	98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8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초과 ~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42만원 미만	142만원 이상 ~ 144만원 미만	144만원 이상 ~ 146만원 미만	146만원 이상 ~ 148만원 미만	148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18만원 초과	16만원 초과 ~ 18만원 이하	14만원 초과 ~ 16만원 이하	12만원 초과 ~ 14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200,00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소득인정액	150만원 이상 ~ 152만원 미만	152만원 이상 ~ 154만원 미만	154만원 이상 ~ 156만원 미만	156만원 이상 ~ 158만원 미만	158만원 이상 ~ 160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8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초과 ~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3)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소득인정액	132만원	132만원 이상 ~ 136만원 미만	136만원 이상 ~ 140만원 미만	140만원 이상 ~ 144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과의 차액	28만원 초과	24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16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324,160원	280,000원	240,000원	200,000원
소득인정액	144만원 이상 ~ 148만원 미만	148만원 이상 ~ 152만원 미만	152만원 이상 ~ 156만원 미만	156만원 이상 ~ 160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과의 차액	12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0원 이상 ~4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60,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4)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구 분	차 액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8만원 초과	6초과 ~ 8만원 이하	4초과 ~ 6만원 이하	2초과 ~ 4만원 이하	2만원 이하
	101,3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12만원 초과	8초과 ~ 12만원 이하	4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이하	
	162,08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 : 2014. 6. 30 이전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직역연금 수급자

나. 부가급여(만18세 이상)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

○ 부가급여액(만18세 이상)

- 20,000원 ~ 282,600원(2015.4월~2016.3월)
- 20,000원 ~ 285,230원(잠정)(2016.4월~2017.3월)

구 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 재가/ 생계, 의료수급)	8만원	282,600원[1)]
보장시설수급자 (일반/ 생계, 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0원	7만원[2)]
차상위계층 (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14만원[3)]
차상위초과 (일반)	2만원	4만원

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현재 65세 이상인자(65세 연령 도래자 포함)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안함

4.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가. 장애수당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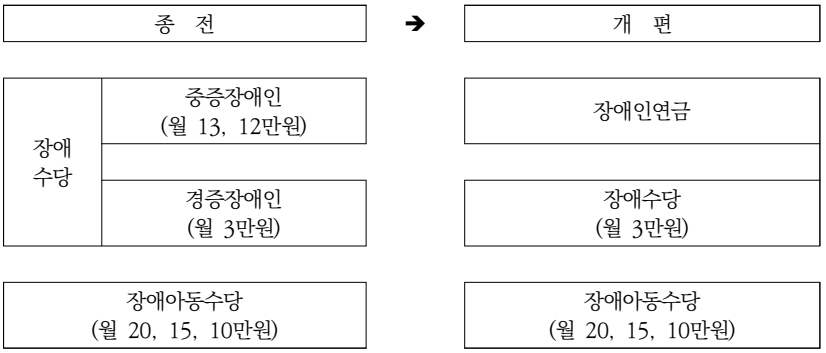

□ 종전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으로 개편

○ 보장시설 장애수당을 받던 경증장애인(월 2만원)과 장애아동(중증 월 7만원, 경증 월 2만원)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으로 해당 금액 계속 수급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에 대한 특례

○ 별도의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 심사 및 지급결정 없이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당연 지급

□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은 해당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계속 지급 가능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

제2절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1. 자산조사

□ 조사 대상자의 범위

○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 배우자의 범위 : 장애인일 필요는 없음

- 연령 무관 (만18세 미만, 65세 이상도 포함)
- 국적 무관 (외국 국적인 배우자의 소득·국내 소재 재산 포함)
- 법적혼 무관 (사실혼, 사실이혼 포함)
- 동거여부 무관 (해외체류, 가출·행방불명, 교도소 수감자 포함)

○ 조사대상

- 단독가구(1人)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부부가구(2人)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통합조사표 구성

- 단독가구 : 한 개의 통합조사표에 1인으로만 구성하여 관리
- 부부가구 : 한 개의 통합조사표에 2인으로만 구성하여 관리

가.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금액 중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 기타사업), 재산소득(이자, 연금),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2) 소득 산정기준

□ 공적자료 반영기준

○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전월소득'을 반영

□ 변동자 소명시 처리기준

○ 상시근로소득

-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월 소득액(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급여 지급월부터 반영)을 산정

-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나 월급명세서에 의한 소득산정 시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반영

○ 사업소득

- 사업형태가 변경(휴·폐업)된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을 반영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3) 소득 유형별 조사방법

□ 근로소득

○ 정의: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은 제외
-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급여, 국외 근로 급여는 포함

○ 유형

-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근로소득(근로소득에 반영하지 않음)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은 자 제외)

- 공공일자리 소득 : 장애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

○ 조사방법

① 상시근로자 소득

- 행복e음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반영. 조회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ⅱ) 국민연금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ⅲ) 근로복지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ⅳ)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ⅴ)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신청자(수급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 다만, 회사부도로 실직상태이나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건보자격변경이 불가능하며, 퇴직증명서 발급 등이 어려운 경우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http://www.kftc.or.kr - 당좌거래 정지정보 조회' 확인 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

- 행복e음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조회 결과로 확인가능하며, 근로소득에서 자동 제외

③ 공공일자리 소득

- 행복e음 시스템의 조회 결과를 반영
- 공적자료 조회 대상자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은 제외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정의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조사방법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 우선 반영
  -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임대소득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 기타사업소득

- 정의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반영(행복e음 조회)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농업, 축산, 어업, 임업 소득은 제외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인적 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 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 동일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 '공제 적용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많은 소득금액을 적용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각종 권리의 대여로 받는 소득

- 행복e음으로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 우선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 건물·상가를 보유한 경우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토록하여 소득 파악

○ 이자소득 : 행복e음에 의해 조회되는 금융기관 이자소득을 반영

- 정의: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에서 이자소득 공제액 48만원을 차감한 금액

○ 연금소득 : 은행법, 보험업법에 따른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 행복e음으로 조회되는 금융재산조회 결과 적용

□ 공적이전소득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보훈급여,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비용보전 성격의 수당·급여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소년소녀가정지원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및 장애아동 입양 양육수당, 한부모가정의 (추가)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한부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기초연금 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지원금
- 흥익회 원호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 재한 원폭 피해자가 받는 수당
- 밭농사 직접 지불 보조금
- 조건 불리 지역 소득 보조금
- 석면 피해자 요양 생활수당
- 대일항쟁기 피해자(희생자) 의료지원금
- 양육휴직수당
-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제 경기대회 입상한 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연금
- 체육유공자 연금수당
- 경영이양 소득보조금
- 친환경 농업 소득보조금
- 문화재보호법 및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조례에 의한 이주민특별일자리 사업에서 받는 급여, 고령자 세대에 대한 지원금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사업에 의한 지원금
- 희귀난치성질환자 간병비 지원금
- 국가보훈처 지급 보상금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참전명예수당,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액 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 기타 비용보전 성격의 수당·급여 : 노동부의 직업훈련수당,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 보조금

- 지자체에서 조례 등에 의해 지원하는 각종급여
  - 이·통장 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복지·보훈 대상자 추가지원금
-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폐재해위로금

○ 적용 방법 : 행복e음 조회 결과 자동 반영

□ 사적이전소득

○ 취지 :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가구의 장애인자녀가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지원 금품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경제적 수준 평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

○ 포함되는 소득 : 무료 임차소득

○ 확인방법

- 신청한 중증장애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조회를 통해 세대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확인하여 행복e음에 입력
- 신청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택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아 보관

나. 재산조사

(1) 재산의 소득환산액

□ 정의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주거공제) : 주거유지 등 최소한의 생활영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제외

구 분	공제액(만원)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13,500
중소도시 (도의 '시')	8,500
농어촌 (도의 '군')	7,250

○ 신청자가 보유한 일반재산의 합산 금액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공제금액 차감

(2)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3호)

○ 항공기, 선박(「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

○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9조 2항)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입목재산, 어업권(「지방세법」 제6조 제11호, 제13호)

○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지방세법」 제6조 제14호~제18호)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

○ 자동차(「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한 자동차)

□ 금융재산

○ 현금 또는 수표, 채권, 출자금, 출자지분,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저축, 적금, 부금,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보험 및 수익증권 등

(3) 재산가액 산정기준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항목	산정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입목재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어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금융재산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① 정의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지방세법」 제6조 제4호)
  - 건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건물물(「지방세법」 제6조 제4항)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② 조사방법

- 토지(전답, 임야)
  - 행복e음 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통해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적용
- 건물·건축물
  - 행복e음 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통해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주택
  - 행복e음 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주택인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

□ 항공기·선박

①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 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②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 선박·항공기 가격 = 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 임차보증금

① 정의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② 조사방법

-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반영
-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월세거래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현재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여 반영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함에 유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적용률(0.95)을 곱하여 산정,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전액 산정
  - 주택 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적용율(0.95)

□ 조합원입주권

①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② 조사방법

- 조합원입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계획 등 입증 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자료 등 확인 가능한 공적 자료를 징구하여 확인

□ 분양권

① 정의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② 조사방법

- 분양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 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
  - 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 입목재산

①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지방세법 제6조 제11호)

- 지상의 과수, 입목,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②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 어업권

① 정의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권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②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어업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 회원권

① 정의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②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 여부 및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③ 조회결과 적용

-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각종 회원권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월 100%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적용

(나) 금융재산

□ 명의인 :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로 판결 받은 경우를 제외한 차명·도명 주장 계좌는 불인정

□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주식 등의 평가액은 증권계좌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연금 개시 전) : 잔액

○ 보험증권 : 해약 시 환급 가능한 금액

-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 다른 용도로 사용시 기타(증여)재산과 동일 방식으로 처리 산정

○ 연금보험 : 연금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 재산 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

○ 일상생활 유지 위한 필수 자금 성격의 금융재산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 배우자의 유무 및 수급에 관계없이 '가구' 기준으로 2,000만원 공제

□ 조회기준일, 조회기준금액

○ 조회기준일 : 신청시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 조회기준 금액 : 계좌별 기준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계좌

□ 조회 결과 적용

※ 금융재산도 처분 시 기타(증여) 재산으로 처리 : 기타(증여)재산 가액 = {(처분한)재산 가액(금융재산 감소)}-(타 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법」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 금융재산을 인출하여 주택 등 일반재산을 취득함에 따라 금융과 일반 재산이 중복 산정된 때에는 금융재산에서 중복분 차감 처리

○ 요구불예금 계좌를 타 계좌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중복조회된 경우에는 중복 부분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 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 및 금융재산이 감소된 경우 '기타(증여)재산' 산정방식에 따라 처리

□ 기타일시금 처리 방안

○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퇴직)연금
- 사망일시금: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우선 반영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처에 따른 재산의 이동을 확인하여 해당 재산유형을 반영

(다) 자동차

□ 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자동차 가액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반영

○ 「행복e음」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적용 순위

① 보험개발원 평가기준(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③ 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또는 취득가액(×잔가율)

* 잔가율: 차령 기준으로 정한 잔존가치 비율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비율

④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조회결과 적용

○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산정

○ 일반자동차는 차량가액을 연 4% 소득환산액에 반영

○ 고급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을 월 100% 소득환산액에 반영

(라) 기타(증여) 재산

□ 정의 :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1](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3항)을 증여하거나 감소된 경우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재산의 가액[2]에서 타재산 증가분[3], 본인 소비분[4],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일[5]로부터 소진시까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기타(증여)재산 = (처분한) 재산 가액-(타 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1)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3항의 재산 : 토지·건축물·주택, 항공기·선박,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입목, 어업권,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등

(2) 재산의 가액 :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3) 타재산 증가분 : 타재산 구입으로 증가한 재산가액, 부채상환금(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한정)

(4) 본인 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장애인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등에 사용된 금액, 이혼위자료, 양육비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금,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5) 증여일(또는 처분일) : 등기접수일(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후 보장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가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처분 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재신청하거나, 기존 수급자가 재산 감소를 이유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여 처리

□ (자연적 소비금액) 매월 기준중위소득의 50% 차감

○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반영한 금액 차감

○ 장애인부부의 경우 자연감소분 산정시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달까지 부부기준으로 적용하고, 사망한 다음 달부터 단독가구 기준으로 적용

□ '11.7.1일 이후 처분(증여)된 재산은 처분(증여)한 날부터 재산의 가액이 '0"원이 될 때까지 재산에 포함

(마) 부채

□ 정의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 부채 인정범위

○ 금융기관 대출금(종류 및 용도 관계없이 인정, 금융정보조회결과 적용)

- 개인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약관대출, 신용카드 미결제금(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대금)
-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해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재임대 또는 전전세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 준용
-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월세거래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현재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사실 확인하여 반영
- 임대차계약서는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인정
- (주택 임대보증금)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미제출시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요청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다음의 부채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 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미소금융재단에 의한 미소금융 대출금,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 등이 증명한 부채,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
- 법원의 화해 또는 조정조서에 의해 확인된 사채

□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개인간 사채는 불인정

○ 물건에 설정 등기된 (가)압류, 근저당

○ 금융기관의 채권최고액

○ 금융기관 대출금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 된 경우(신청자(수급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기업대출, 대출금의 이자 상환금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 임대보증금

* 2010년 7월 1일 이후 '신청자(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 부채 인정 시 유의사항

○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은 부채에 해당되지 않음

○ 임차보증금을 양도한 경우에도 부채상환금으로 불인정

2. 부가급여 대상자 조사

□ 부가급여 지급 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내에 해당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 가구 범위 적용, '가정 해체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도 적용

※ 종전 차상위계층 장애수당과 동일

※ 단, 65세 이상인 부모가 미혼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 가구 특례 적용

□ 소득인정액

○ 부가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조사방식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단위: 원/월)

구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의 50%
1인가구	1,624,831	812,415
2인가구	2,766,603	1,383,302
3인가구	3,579,019	1,789,509
4인가구	4,391,434	2,195,717
5인가구	5,203,849	2,601,925
6인가구	6,016,265	3,008,132
7인가구	6,828,680	3,414,34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

제3절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및 지급

1.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 조사 결과 확정·사업과 통보

○ 자산 조사 결과 확정(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조사담당자가 조사 결과를 행복e음에 반영 후 사업과로 통보

○ 장애등급 심사 결과 확정(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를 행복e음에 반영 후 사업과 및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으로 통보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 장애등급 결정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

□ 수급자 최종 결정 및 통지(시군구 사업과)

○ 시군구 사업과 담당자

- 자산조사 결과 및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결정여부 및 장애인연금액 최종 결정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를 신청자와 수급자에게 통지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2. 장애인연금 지급

□ 지급개시 : 신청일이 속한 달

○ 신청일 : '사회복지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날 또는 직권 신청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은 날

○ 접수일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의 구비서류(장애등급 심사 관련 구비 서류는 제외한)를 모두 제출한 날

□ 지급기간

○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 지급 기준(장애인연금법 제13조)

○ 장애인연금 중지 사유

- 사망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 장애등급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장애인연금 정지 사유

-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수급자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수급자의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지급 방법

○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에 따라 지방재정시스템 연계 후 금융결제원(또는 시·도 금고)에 입금 의뢰

□ 지급 계좌

○ 원칙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입금

○ 예외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 예외 사유
  ①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나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
- 대리 수령 가능인 : 배우자,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기준

구분	보장시설	그 외 시설 (실비입소시설, 개인신고시설, 유료복지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A 유형 (보장시설수급자)	B 유형
그 외	C 유형	D 유형

-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A 유형
  - 장애인연금 지급액
    - 기초급여 : 202,600원(2015.4월~2016.3월, 감액이 없는 경우 최고 지급액), 205,230원(2016.4월~2017.3월, 예상급여액으로 변동 가능)
    - 부가급여 : 70,000원(종전장애수당 수급 특례자에 한함)
  - 경증 장애수당 지급액 :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 지급 관청 : 해당 보장시설의 설치·관리 관청
- 실비 입소자, 보장시설이 아닌 시설의 입소자의 경우 : B, C, D 유형
  -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 재가 장애인과 동일하게 지원
  - 지급 절차
    - 시설 소재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주민등록법 제6조, 사

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 신청 : 시설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시설 소재 관청)의 읍·면·동
- 자산조사 : 시설 소재 관청의 통합조사팀
- 장애등급 재심사 : 시설 소재 관청의 읍·면·동
- 보장 결정 및 지급 : 시설 소재 관청의 사업과

제 3 장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별 소득인정액 구성 분포 분석

3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별 소득인정액 구성 분포 분석

□ 여기서는 2017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과정에서 활용된 공적 행정자료 기준 분석 DB를 활용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구특성별로 소득인정액 및 소득재산항목에 대한 보유실태를 비교 분석함

○ 장애인가구 특성을 가구유형, 지역구분, 연령집단, 장애등급별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특성별로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분포를 비교 분석함

□ 분석방법 ☞ Violin plot

○ Violin plot은 밀도의 분포를 나타내는 density plot과 주요 통계와 분위별 경계를 보여주는 box plot을 동시에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가구유형별 주요 소득·재산항목별 분포를 살펴봄

○ Violin plot은 density plot과 box plot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각 항목별로 어느 수준에 분포하는지와 극단치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

- Density Plot

•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는 연속확률변수가 주어진 구간 내에 포함될 확률(확률밀도)를 함수로 나타낸 것이며, 확률밀도함수는 0보다 같거나 크며, 전체 면적이 1임

- 확률밀도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density plot이며, 전체 면적을 1로 하여 항목별 분포가 어디 치우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음

- Box plot

- Box plot을 이용하여 중위값의 위치로 분포 상의 중심을 파악할 수 있으며, 최소·최대값으로 분포 상 꼬리부분을 파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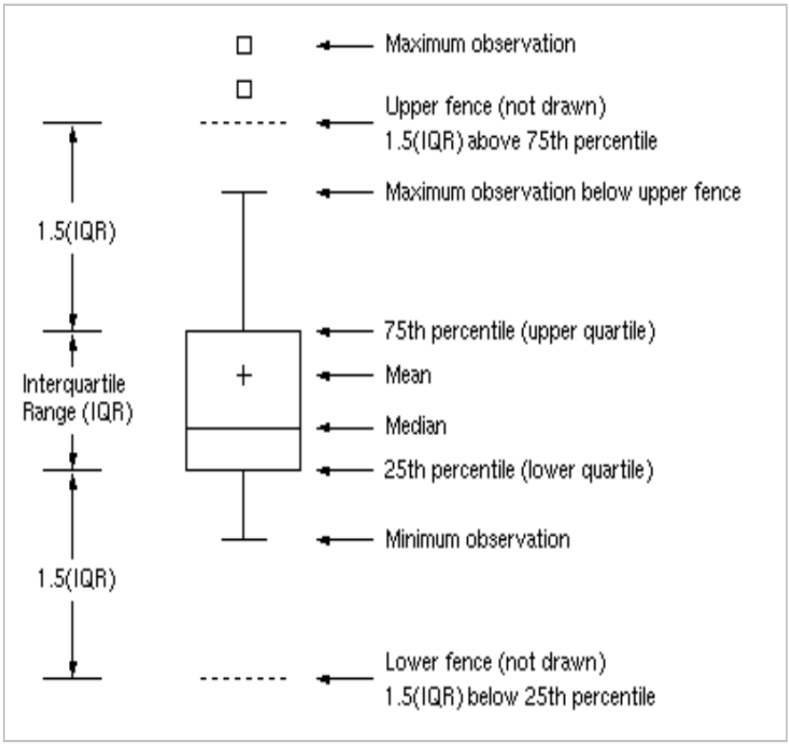

- BoxPlot 주요내용 구성 및 의미
  - IQR(Interquartile Range, Q3-Q1으로 계산) 중심으로 Upper fence와 Lower fence를 벗어나는 이상치를 확인 및 점검할 수 있음
  - 최대(Maximum), 최소(Minimum), 평균(Mean, +표시)
  - 4분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1분위(Q1, 하위 25%, Lower quartile), 2분위(Q2, 하위 50%, 중위, Median), 3분위(Q3, 하위 75%, Upper quartile) 경계값 제시

□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별 소득인정액 보유실태 및 구성항목 분포 분석결과

○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위해 장애인 및 배우자 중심으로 분석 DB 구축과정에서 연계한 행복e음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 정보를 활용함

○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별 소득인정액 및 이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실태를 Violin plot으로 분석하여 제시함

※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과 관련하여, 소득인정액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세부 소득재산 항목별 분포는 〈부록 2〉에 제시함

□ 가구유형 ☞ 장애인 단독가구 vs. 장애인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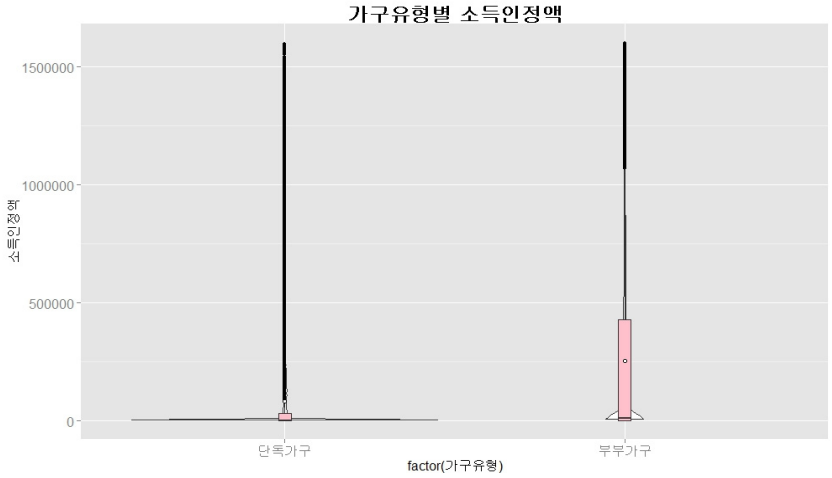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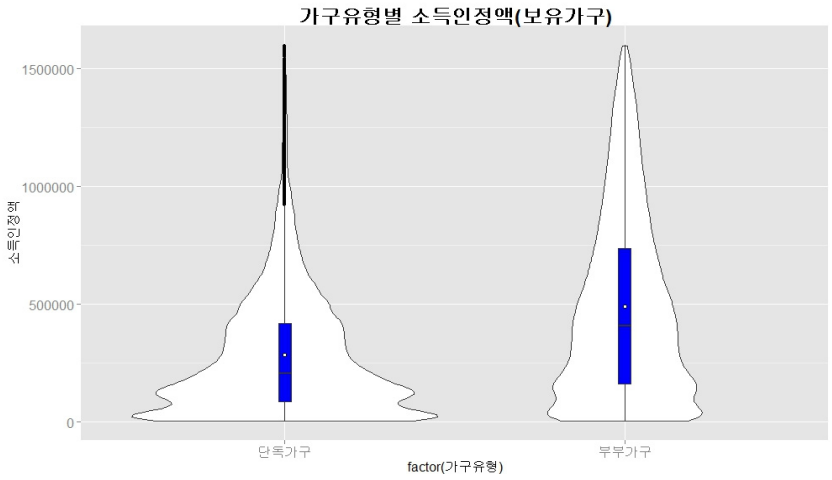

○ 소득평가액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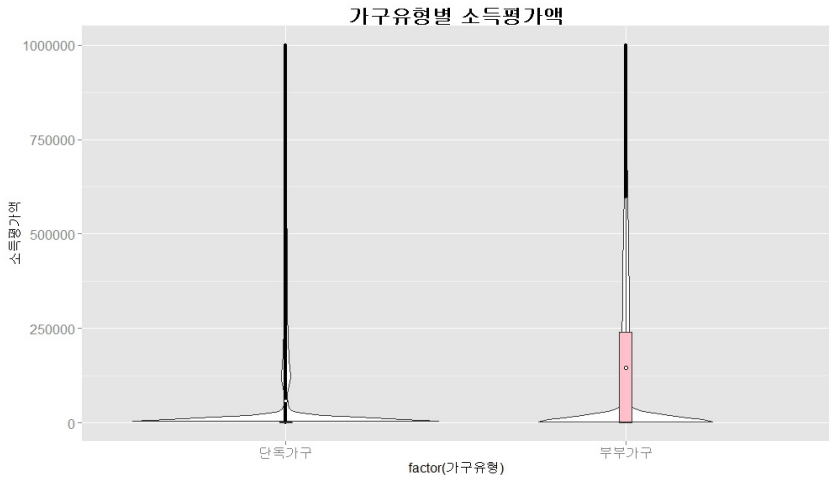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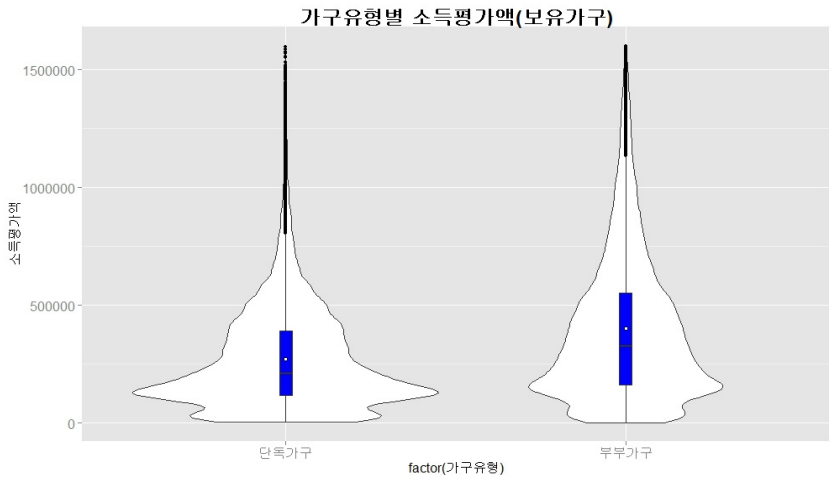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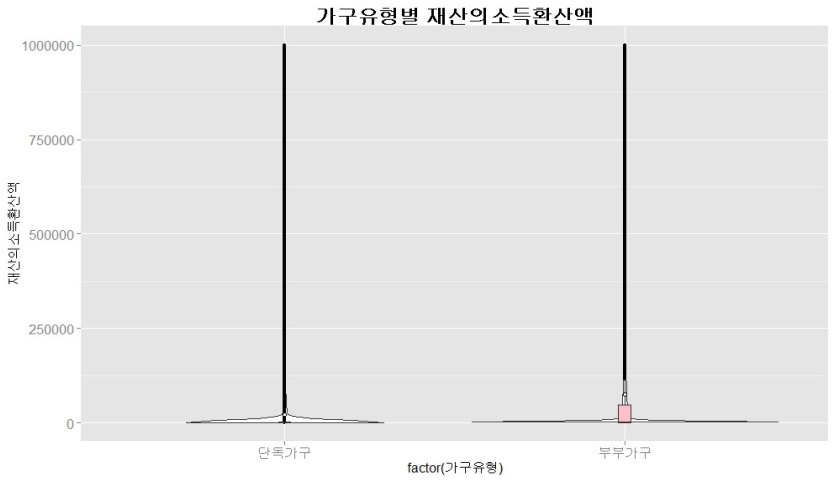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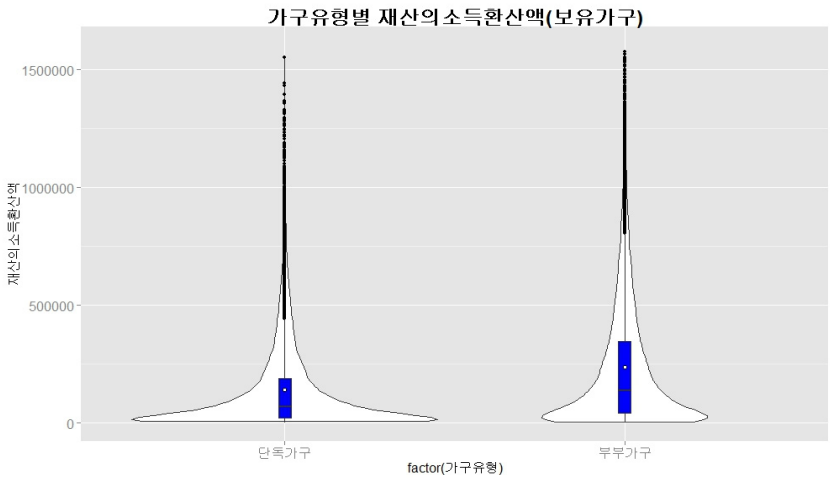

□ 지역구분 ☞ 대도시 vs. 중소도시 vs. 농어촌

○ 소득인정액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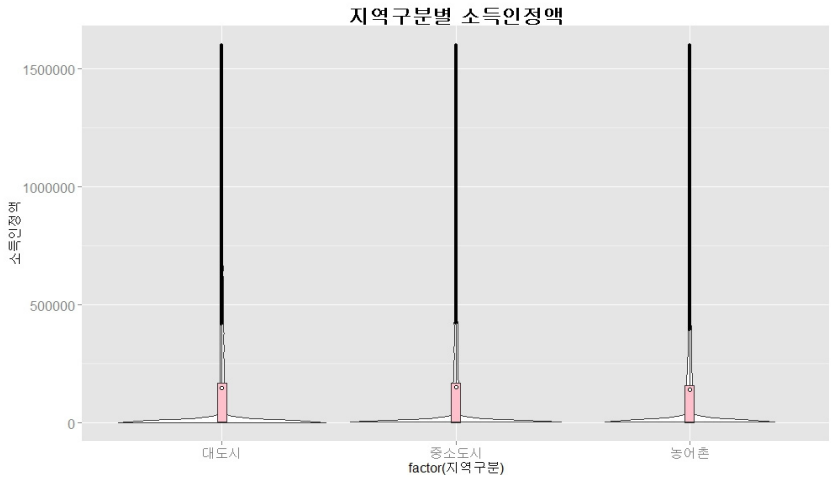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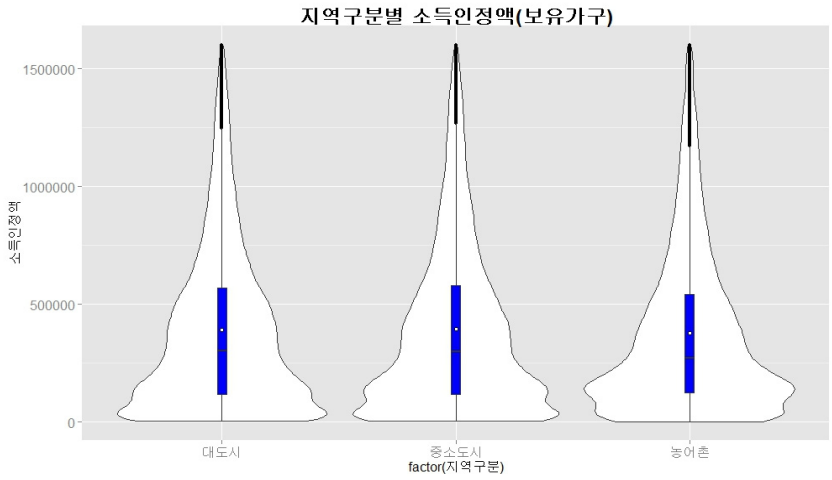

○ 소득평가액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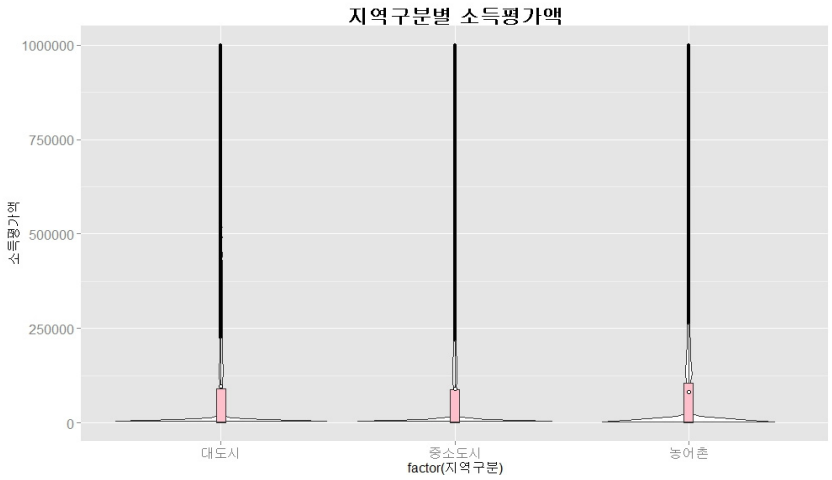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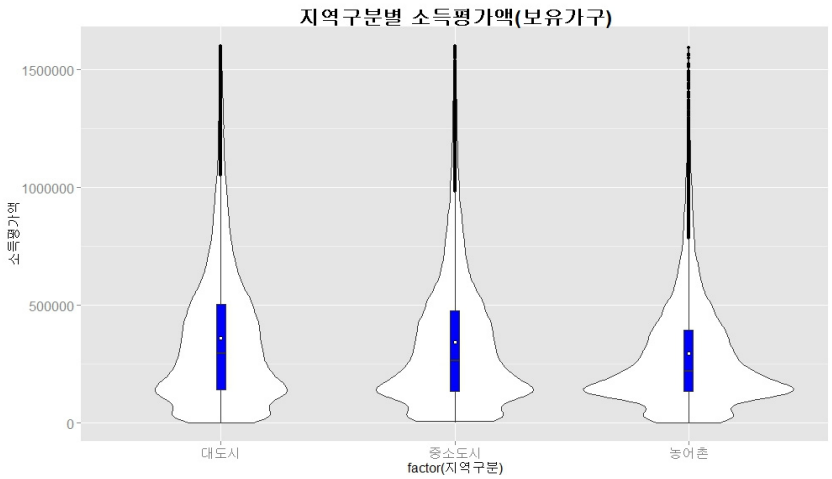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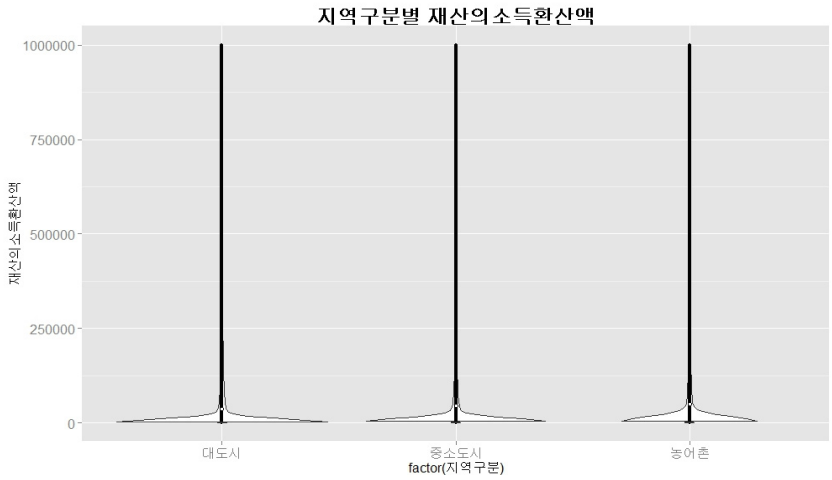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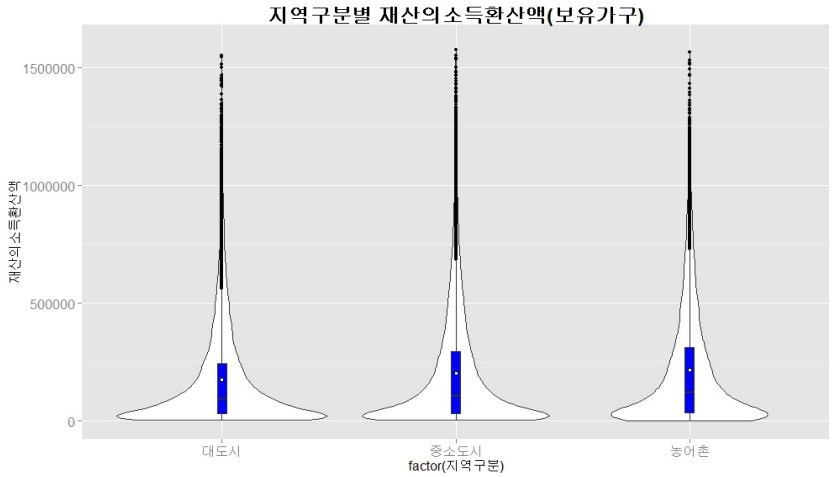

□ 연령집단 ☞ 18~64세 vs.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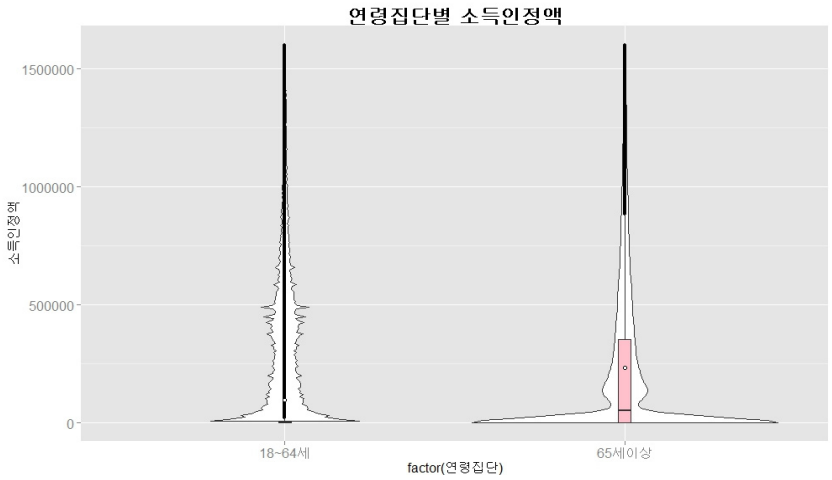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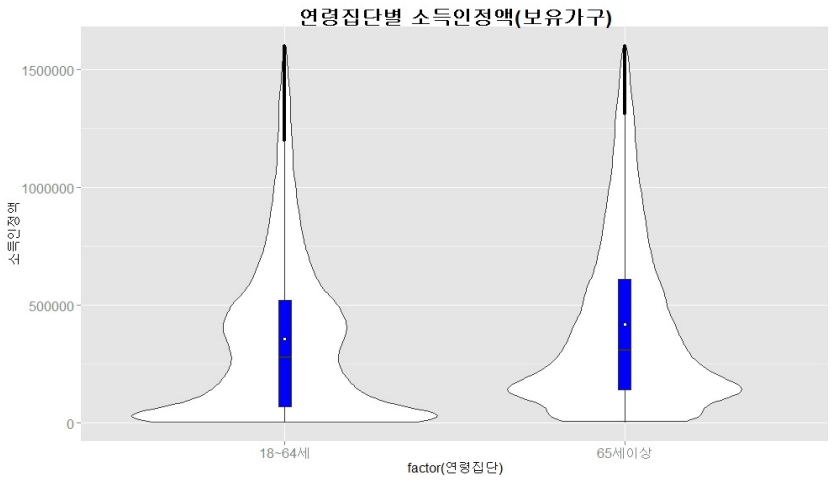

○ 소득평가액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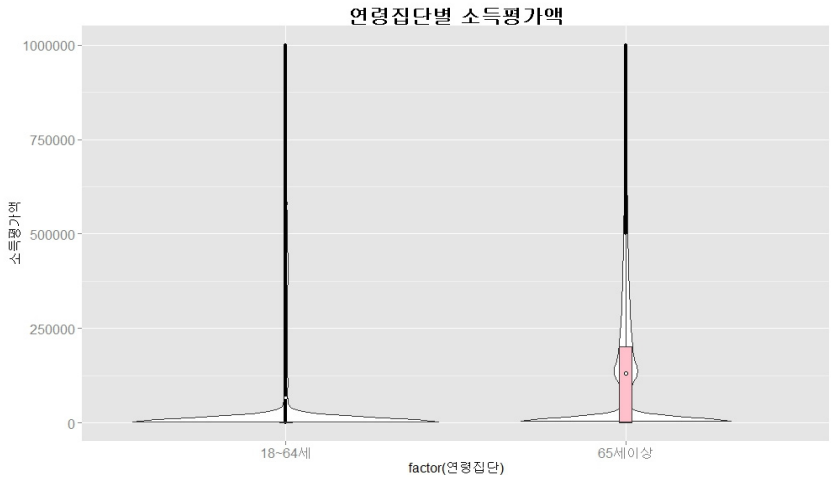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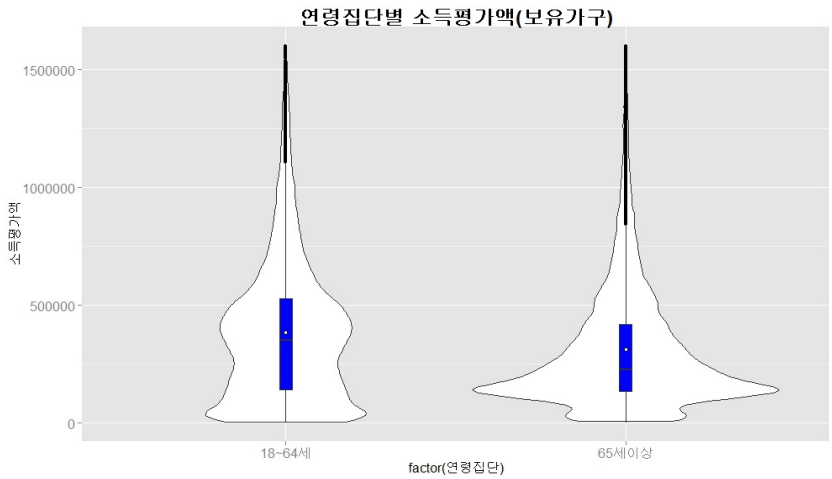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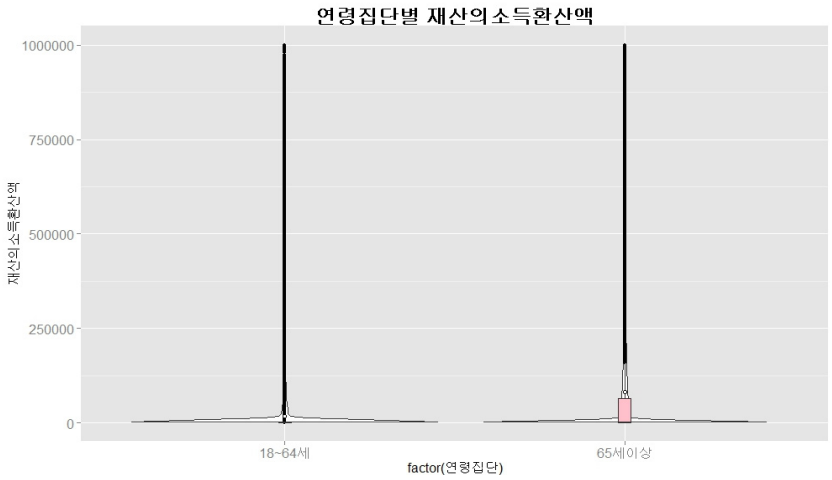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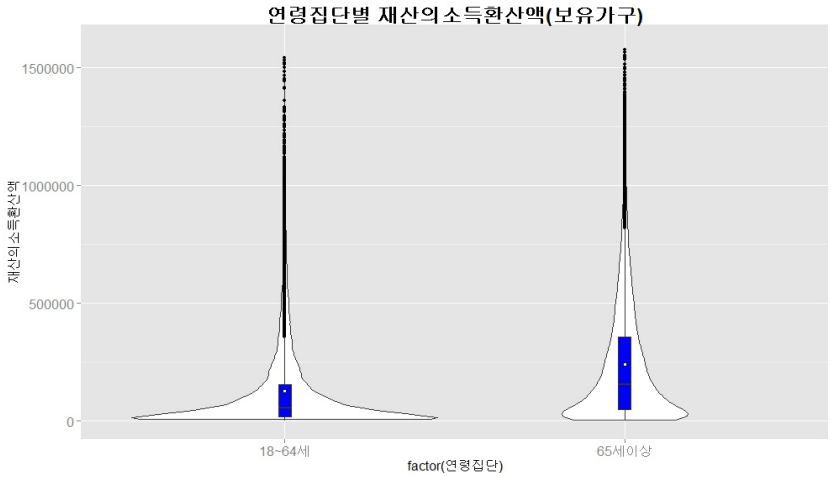

□ 장애등급 ☞ 1급 vs. 2급 vs. 3급 중복

○ 소득인정액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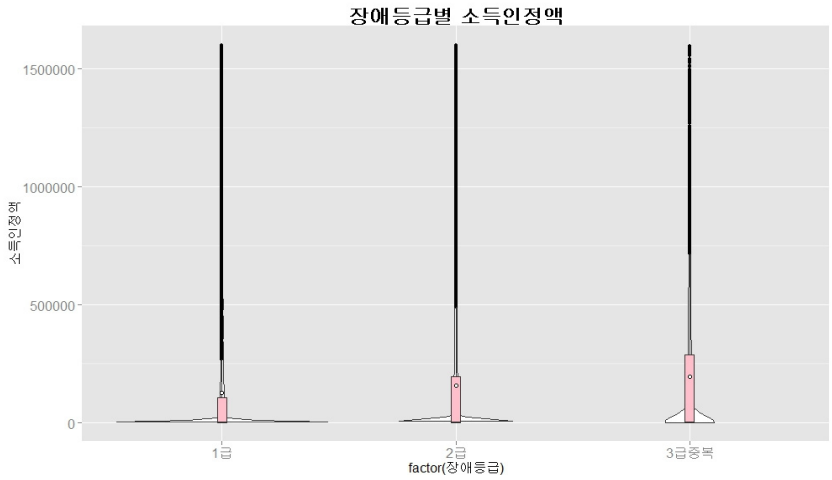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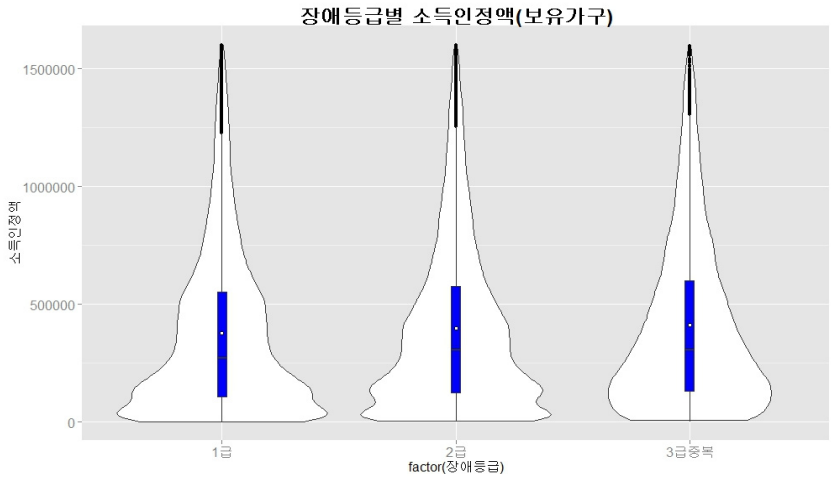

○ 소득평가액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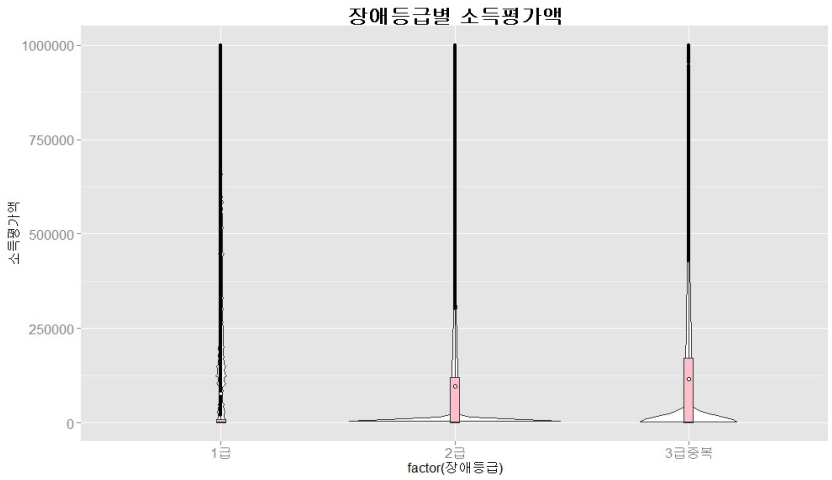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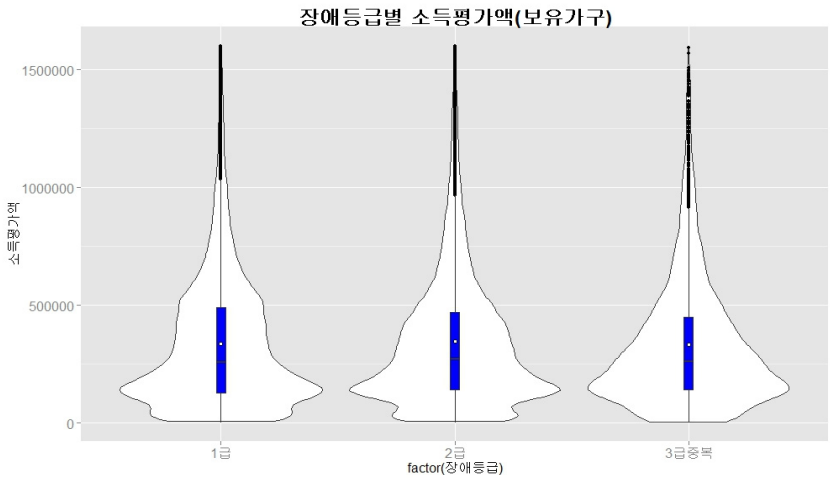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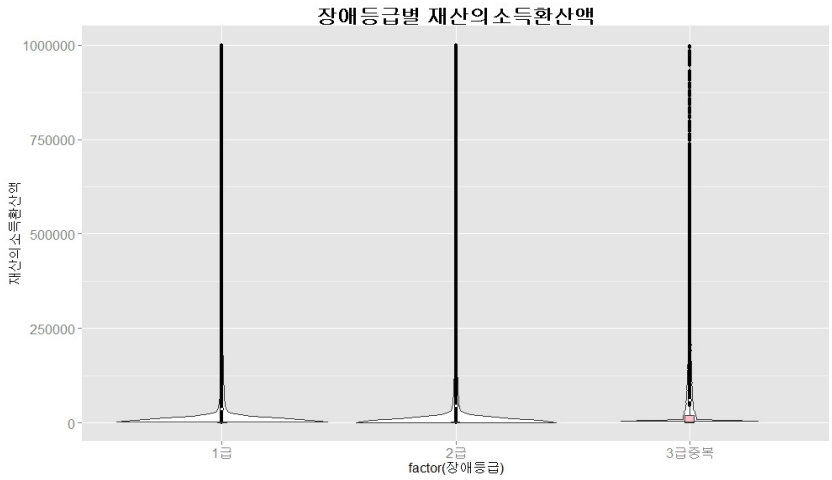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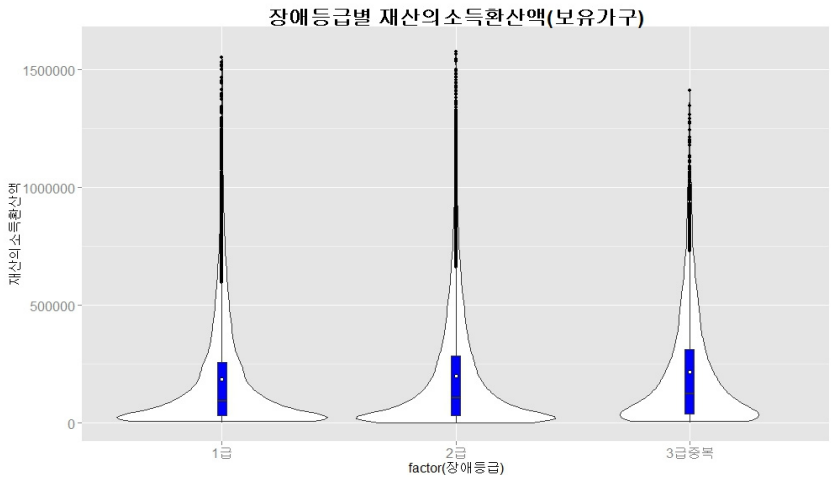

제 4 장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요소별 비중 및 상대적 영향도 분석

4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요소별 비중 및 상대적 영향도 분석

□ 여기서는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마련을 위해 행복e음에서 추출된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재산 항목별 DB를 기초로 소득인정액 구성 비중 및 상대적 영향도를 분석함

○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 및 제도 개선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최신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소득인정액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재산 항목별 반영 비중을 분석함

- 이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재산항목별 비중 및 영향도를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

□ 최신 통계기법인 데이터마이닝은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이들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관계, 패턴, 규칙을 탐색하고 찾아내어 모형화 함으로써 유용한 지식을 추출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이며, 방대한 정보로부터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데이터마이닝 분야가 발전하였음

- 데이터마이닝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신용평가, 품질개선, 부정행위의 적발, 이미지분석, 수요 및 판매 예측 등의 분야에서도 활용됨

□ 설명변수(예를 들어,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로부터 반응변수(예를 들어, 소득인정액)를 산출하는 과정은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통계학의 주요 이슈임

○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모형을 적합하고 새로운 관측값에 대해 소득인정액 값을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은 최근 주목받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론을 접목시킴으로 해서 보다 향상된 산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반응변수의 형태에 따라 크게 기계학습 분야는 회귀(Regression) 문제와 분류(Classification)로 나눌 수 있음
- 회귀 문제에서는 반응변수가 소득인정액과 같이 실수의 형태이고 분류 문제에서는 반응변수가 수급 여부와 같이 범주의 형태임

□ 기계학습이론(machine-learning)의 분류 기법 중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방법으로 변수의 중요도(Importance)를 계산하여 각 변수별 중요도를 살펴볼 수 있음

○ 랜덤 포레스트는 Breiman(2001)에 의해 제안된 방법으로 하나의 가장 좋은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많은 의사결정나무를 구축하여 이들을 합하는 앙상블(ensemble) 기법임

○ 랜덤 포레스트는 분류 정확도가 우수하고 이상치에 둔감하며, 계산이 빠르다는 장점을 이용해 랜덤 포레스트의 중요도(Importance)를 계산하여 변수별 중요도를 살펴볼 수 있음

○ 영향도는 통계모델에서 특정 변수가 반응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관성 크기를 나타냄.

- 그림과 같이 두 변수 A, B 값들로 이루어진 4개의 단노드(terminal node)가 있을 때, 단노드의 과반수(majority)에 의해 0그룹 에 속하는지, 1그룹에 속하는지를 판정하게 됨
- 변수 A에 의해 샘플의 상당수가 0그룹과 1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변수 A 가 두 그룹 판별하는 데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만약 변수 A의 값을 무작위로 바꿔서 각 샘플에 할당하게 되면 변수 A는 두 그룹를 판별하는 데 연관성이 없게 됨
- 변수 A값이 무작위로 할당된 샘플로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구축했을 때 단노드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의 비율과 원래의 데이터 값을 사용하여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구축했을 때 단노드에서의 올바른 의사결정의 비율 차이가 변수 A 의 중요도임
- 변수 A가 0그룹에 속하는지, 1그룹에 속하는 지를 판별하는 데 중요한 변수라면 무작위로 할당된 경우의 올바른 의사결정 비율과 원래 데이터의 올바른 의사결정 비율차이가 크게 날 것임. 반면에, 변수 A 가 0그룹에 속하는지, 1그룹에 속하는 지를 판별하는 데 중요하지 않은 변수라면 무작위로 할당된 경우의 올바른 의사결정 비율과 원래 데이터의 올바른 의사결정 비율에 차이가 없음
- 따라서 랜덤 포레스트의 중요도 그림(Importance plot)을 이용하여 각 변수별 중요도를 살펴볼 수 있음

○ 랜덤 포레스트에서 의사결정나무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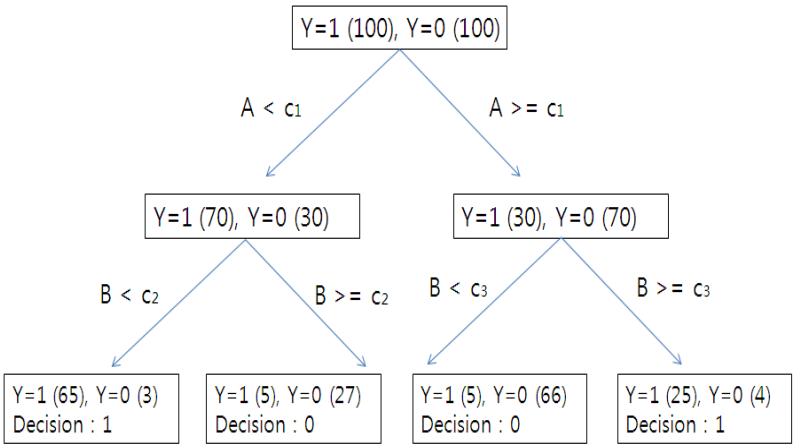

□ 또 다른 방법론으로, 부스팅(Boosting) 알고리즘은 Freund와 Schapire(1997)에 의해 처음으로 분류(Classification) 문제를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되었으며, 회귀문제와 분류문제 모두에 적용할 수 있고 해석도 용이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음

○ 부스팅 알고리즘에서 basis function 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Stump임

- Stump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로 root node에서 한번만 분기하는 즉 단노드(teminal node)가 두 개인 것을 말함
- 의사결정나무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

$$T(x;\Theta) = \sum_{j=1}^{J} \gamma_j I(x \in R_j)$$

- 여기서 R_j은 단노드(teminal node)에서의 서로 배반인 설명변수 영역, $\Theta = \{R_j, \gamma_j\}$ 은 추정해야할 모수를 나타냄

□ 본 연구에서 사용할 부스팅 알고리즘은 위의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부스팅 트리이며, 알고리즘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Initialize $f_0(x) = \underset{\gamma}{\operatorname{argmin}} \sum_{i=1}^{N} L(y_i, \gamma)$

2. For m = 1 to M:

(a) For $i = 1, 2, \cdots, N$ Compute

$$\gamma_{im} = - \left[\frac{\partial L(y_i, f(x_i))}{\partial f(x_i)} \right]_{f = f_{m-1}}$$

(b) Fit a regression tree to the targets γ_{im} giving terminal resions

$R_{im}, i = 1,2,\cdots,J_m$

(c) $\gamma_{jm} = \underset{\gamma}{\operatorname{argmin}} \sum_{x_i \in R_{jm}} L(y_i, f_{m-1}(x_i) + \gamma)$

(d) Update $f_m(x) = f_{m-1}(x) + \sum_{j=1}^{J_m} \gamma_{jm} I(x \in R_{jm})$

3. Output $\hat{f}(x) = f_M(x)$

□ 모형을 구축한 후에는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수반되며, 구축된 여러 모형들 중에서 오차가 가장 작은 모형을 선택한 후에 선택된 모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침

○ 부스팅에서 모형 산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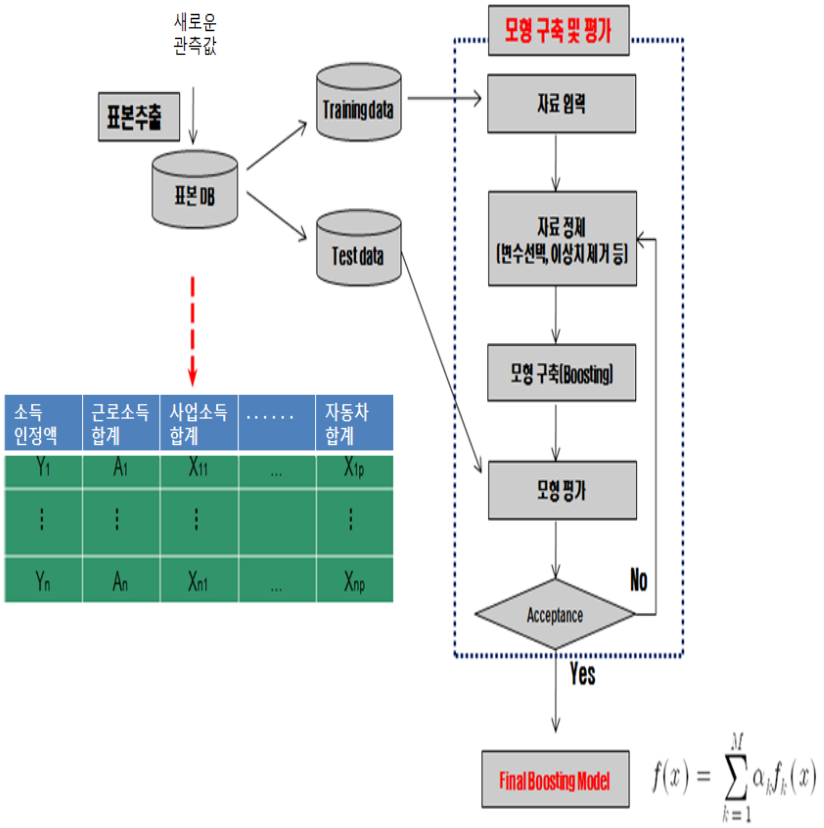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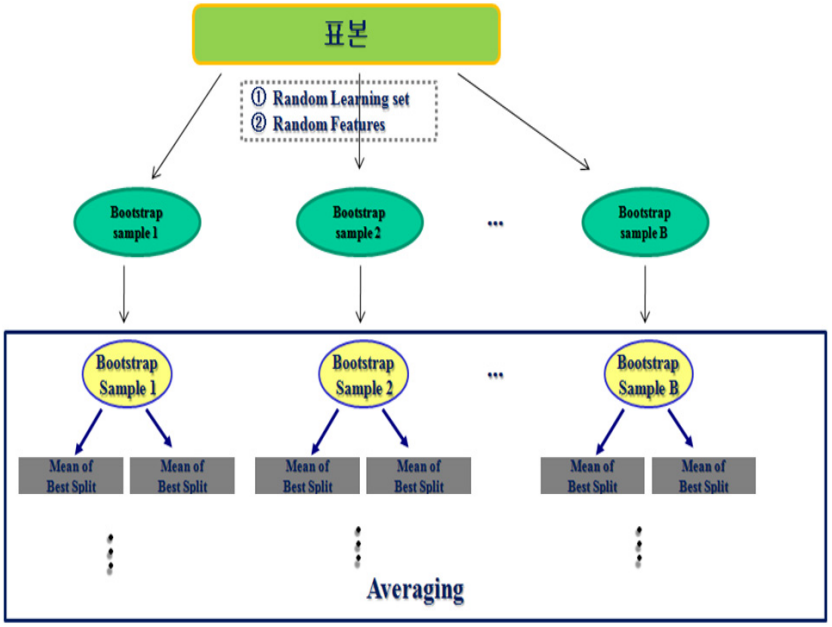

□ 위의 모형을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구성한 소득·재산항목별 반영 비중 및 중요도를 분석하여 Relative Influence Plot으로 제시하였음

○ 분석과정에서 가구유형에 따라 두 가지 하위 집단으로 각각 구분하여 집단별 분석을 수행하였음

- 장애인단독 가구
- 장애인부부 가구(부부장애인 포함)

1.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상대적 영향도 분석 (소득평가액 vs.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분하여 소득인정액의 변화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relative influence plot으로 제시함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미치는 상대적 영향도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종합적으로, 장애인연금 전체 수급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소득인정액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비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가구유형별로 살펴보아도, 장애인단독가구, 장애인부부가구에서 공통적으로 소득평가액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도가 절대적으로 나타남

-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연금의 경우 재산보다 소득 보유가 소득인정액 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소득 유형별로 공제 확대 등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소득평가액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 항목 중 어떤 항목의 상대적 영향도가 높은지 세부 소득항목별 분석결과는 이어서 제시함

○ 전체 ☞ 소득평가액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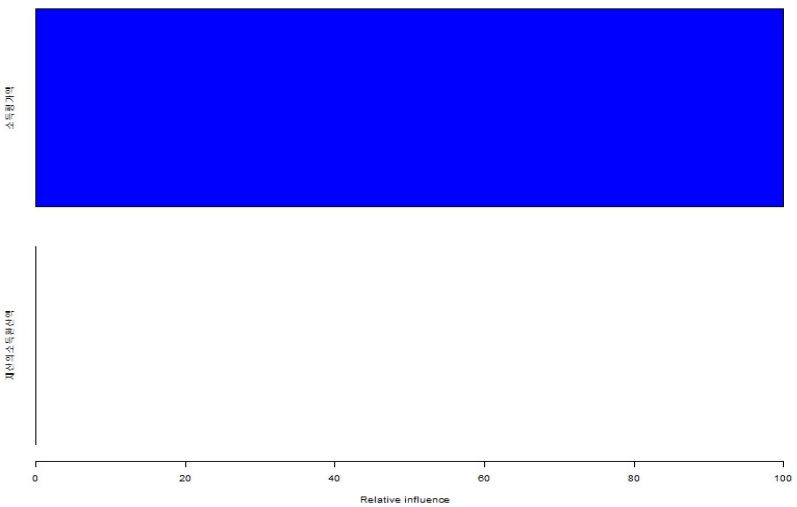

○ 장애인단독 ☞ 소득평가액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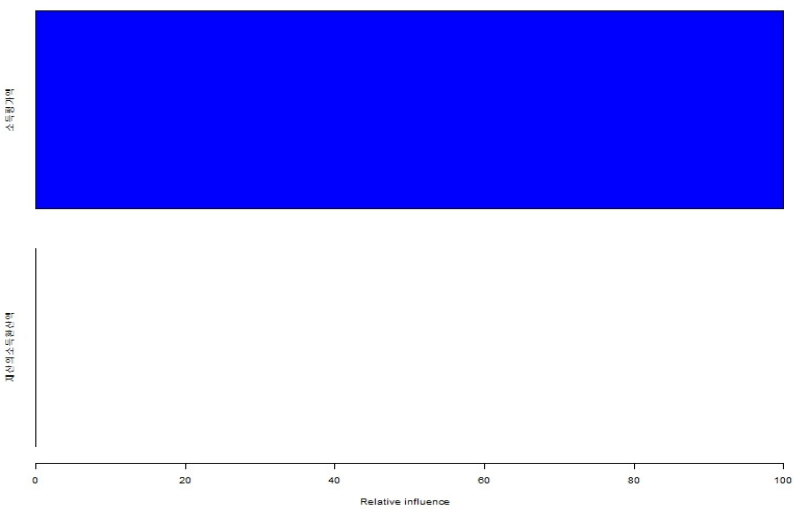

○ 장애인부부 ☞ 소득평가액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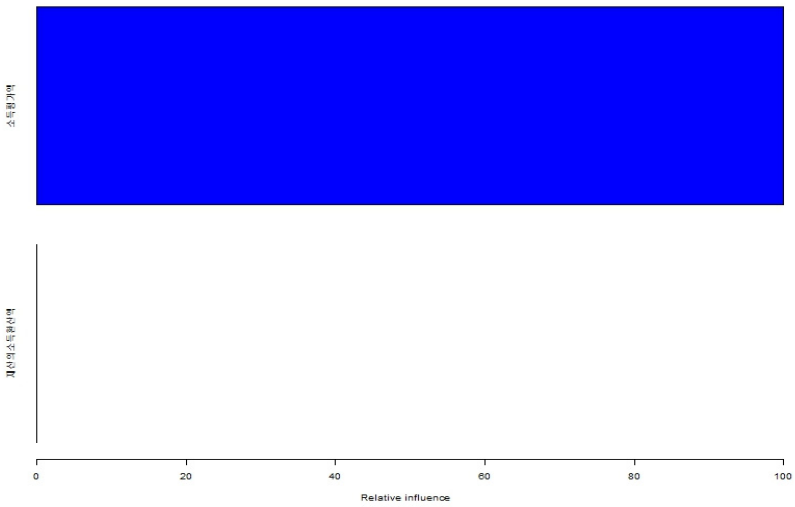

2. 소득평가액 구성항목별 상대적 영향도 분석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선정 시 소득인정액 중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이와 같은 4가지 소득항목이 소득평가액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도를 가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소득평가액에 미치는 영향은 가구유형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경우 소득평가액 산정 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이 소득평가액 산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소득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득항목은 근로소득으로 반영되는 상시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음

○ 가구유형별로 소득평가액에 대한 소득항목별 상대적 영향도 분석 결과, 모든 가구에서 근로소득의 영향도가 절대적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장애인단독가구, 장애인부부 등 가구유형에 상관없이 소득평가액에 대한 상대적 영향도는 상시근로소득이 절대적으로 나타났음

○ 전체 ☞ 근로소득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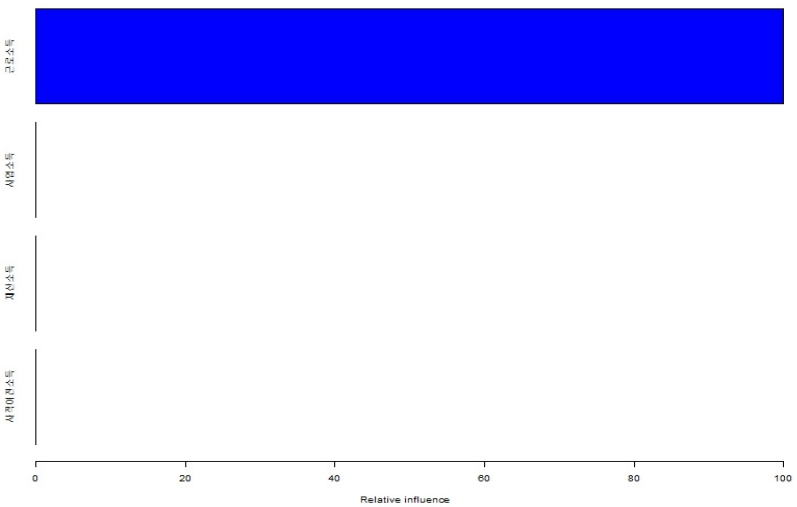

○ 장애인단독 ☞ 근로소득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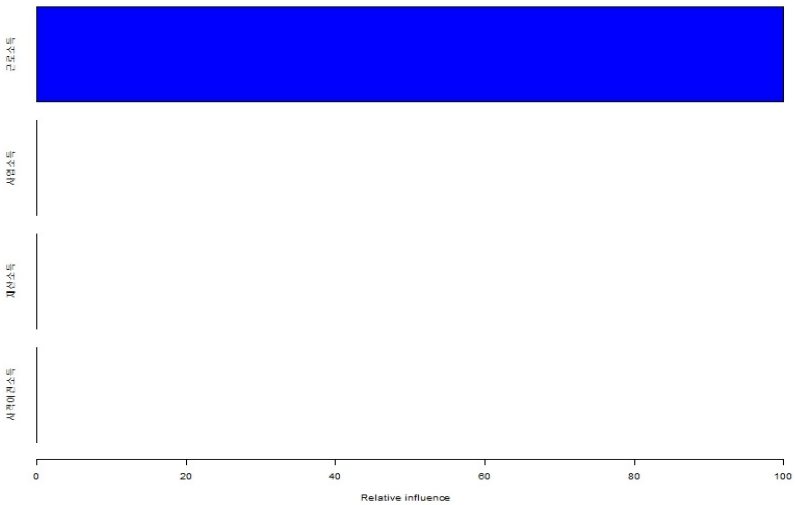

○ 장애인부부 ☞ 근로소득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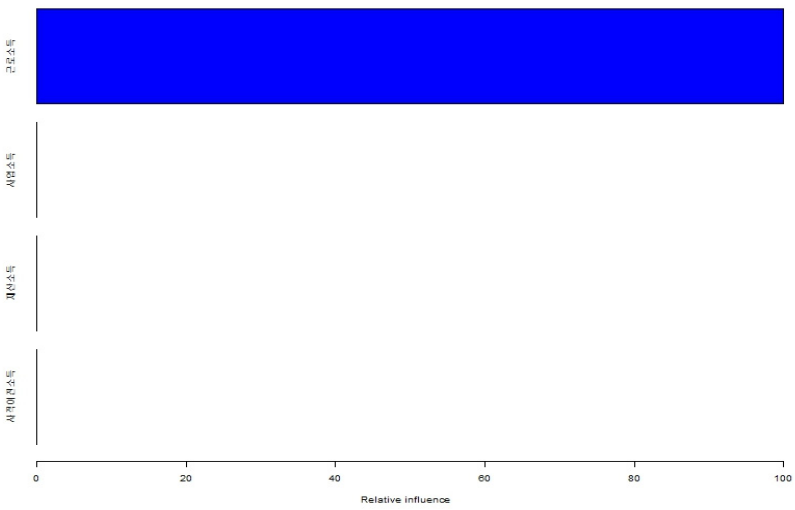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성항목별 상대적 영향도 분석

□ 마지막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성항목별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분석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항목은 건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과 같은 부동산 중심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로, 이러한 항목 간 상대적 영향도를 분석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항목별로 상대적 영향도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분석결과, 일반재산이 약 87%, 금융재산이 약 13% 정도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가구유형에 따라 상대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부동산의 상대적 영향도가 금융재산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장애인단독 가구의 경우, 금융재산의 상대적 영향도가 약 19%로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부부 가구는 약 4%로 일반재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나타났음

○ 그러나, 앞서 소득인정액 구성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의 경우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비해 소득평가액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항목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전체 ☞ 부동산 등 일반재산(87) : 금융재산(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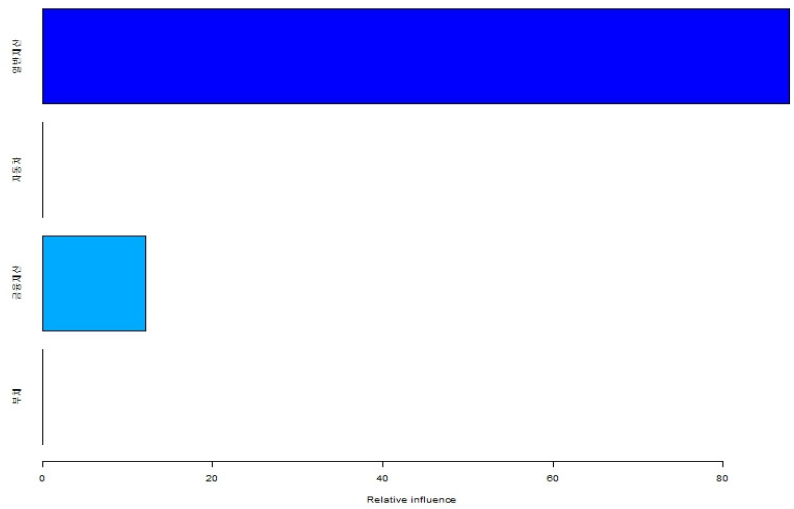

○ 장애인단독 ☞ 부동산 등 일반재산(81) : 금융재산(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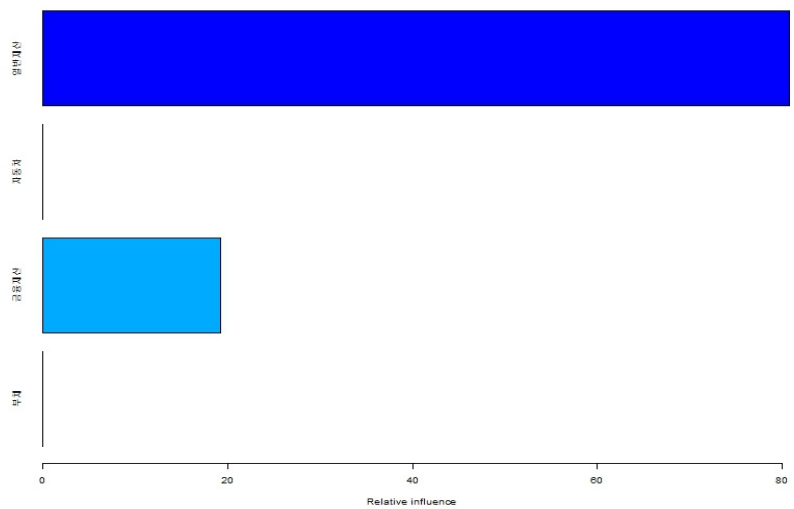

○ 장애인부부 ☞ 부동산 등 일반재산(96) : 금융재산(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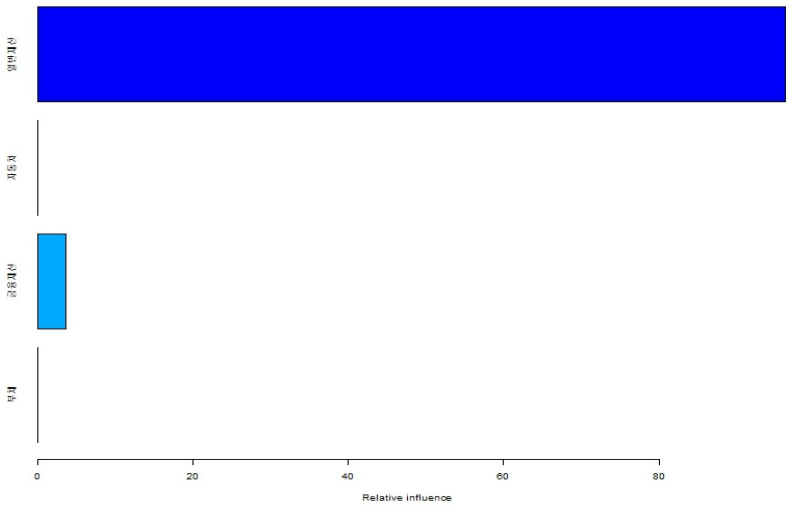

제 5 장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DB 구축

5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DB 구축

□ 여기서는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과정 중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전체 증증장애인 가구 소득인정액 분포 정책 모의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분석 DB 구축과정을 제시함

1. 분석 DB 구축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및 보정

□ 행복e음의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의 등록정보 및 현행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항목별 수급정보 & 건강보험공단 보유 소득재산 항목별 공적 행정데이터 통합 연계 DB

○ 행복e음에서 추출 제공한 2016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DB 구성

- 건강보험 소득재산 항목별 자료추출 시점인 2016. 11월 현재 행정전산망 주민등록정보 기준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모든 세대의 개인을 추출한 후 개인별로 소득재산 항목별 자료를 연계하여 선정기준 분석 DB 구축

  •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 중 행정전산망 및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자료가 존재하는 중증장애인(499,493명) 소득재산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DB 구축

  • 중증장애인이 있는 모든 가구에 함께 포함된 비장애인 가구원(888,093명) 역시 추출하고 소득재산 원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DB 구축

- 전체 중증장애인 및 가구원(배우자, 기타 가구원 포함) 1,387,586명을 대상으로 초기 분석 DB 구축

○ 행정전산망 및 건강보험공단 공적 행정자료가 존재하는 모든 중증장애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정보 원시자료를 기초로 분석 DB 구축

- 전체 중증장애인 및 배우자 대상 건강보험공단 보유 인적 정보, 소득재산 정보 추출 후, 장애인연금 수급 중인 중증장애인의 행복e음 소득재산 및 수급정보 병합

□ 소득재산 항목별 행정자료 연계 및 시차 보정

○ 소득항목

- 국세청 종합소득(2015년 귀속, 2016년 11월 신규 연계, 2017년 적용) 연계
- 건강보험보수월액(2016년 11월 기준), 공적연금(2016년 11월 기준) 연계 적용
- 분석 DB 구축 시 신규 연계된 2017년 적용 예정인 국세청 종합소득 및 주택, 토지, 건물 시가표준액 이외 항목인 건강보험보수월액 및 공적연금의 경우 2017년 행복e음 연계 / 선정시점으로 시차 보정
  - 건강보험보수월액 ☞ 2016년 연간 임금상승률 예상치 3.3%(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6. 4월호) 반영
  - 공적연금급여액 ☞ 2016년 연간 물가상승률 예상치 1.0%(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16. 10월) 반영

○ 재산항목

- 재산세 부과 행정자료 기준 주택, 토지, 건물 과세표준액(2016년 6월 기준, 2016년 11월 신규 연계, 2017년 적용)을 시가표준액 환산 반영

○ 공적연금 이외 공적이전소득, 임차보증금, 자동차가액, 금융재산, 부채 등 건강보험공단 제공 불가능한 항목 제외된 상태
☞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의 '제한적 소득인정액' 산출

2. 중증장애인 및 배우자 기준 최종 분석 DB 구축

□ 행정전산망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고 일정한 비율 이상 존재하고 판별 가능한 세대주와의 관계별로 부부 단위 DB 구축

○ 세대주와의 관계 중심으로 보장단위(자산조사 범위)에 맞는 중증장애인 및 배우자 기준 분석 DB 구축

- 세대주·배우자(64.6%), 자녀·자부(16.3%), 부·모(7.8%)가 전체의 88.7% 차지
- 친척 및 동거인(중증장애인 28,087명, 5.6%)을 단독으로 가정 포함하여 전체의 99.6% 중증장애인과 그 배우자로 구성된 DB 구축

□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최종 분석 DB 구성

○ 분석대상 가구 및 가구원수

- 중증장애인 및 배우자 구성 가구 ☞ 488,508가구

- 중증장애인 및 배우자 ☞ 714,565명

○ 가구유형 분포

- 단독가구 ☞ 262,451가구(53.7%)
- 부부가구 ☞ 226,057가구(46.3%)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도출 분석 DB에 반영되는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 소득·재산 항목

종류	소득 및 재산 항목	건강보험 DB			비고
		제공된 항목	원자료 제공	기준 시점	
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자)	근로소득 (원/연간)	국세청	'15년 귀속 '16.11 연계	소득금액
	사업소득 (종합소득자)	사업소득 (원/연간)			소득금액
	이자소득 (종합소득자)	이자소득 (원/연간)			소득금액
	배당소득 (종합소득자)	배당소득 (원/연간)			소득금액
	기타소득 (종합소득자)	기타소득 (원/연간)			소득금액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연금급여액 (원/연간)	각 연금공단	'16.11 기준 연계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근로소득 (근로소득자)	건강보험보수월액 (원/월)	건강보험 공단	'16.11 기준 연계	직장가입자만 해당
	기타 공적이전소득	보훈연금, 산재급여 등			
재산	일반재산 (건축물)	건물 (원/과세표준액)	해당 지자체	'16.6 기준 '16.11 연계	시가표준액 환산
	일반재산 (주택)	주택 (원/과세표준액)			시가표준액 환산
	일반재산 (토지)	토지 (원/과세표준액)			시가표준액 환산
	일반재산 (선박/항공기)	선박/항공기 (원/과세표준액)			시가표준액 환산
	전월세보증금	-			
	자동차가액				
	금융재산	-			
	골프장회원권	-			
	부동산 취득권리	-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부채	부 채	-			

* 음영 부분은 소득인정액 구성 주요 소득재산 항목 중 분석 DB 구축 시 누락되는 항목임

□ 이상과 같은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 중심으로, 일부 누락 항목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 시 소득인정액 추정 및 산출을 위하여 분석 DB 원자료 활용

○ 건강보험 공적 행정자료에 기초하여 구축된 분석 DB 한계

- 분석 DB에 포함된 소득·재산항목 중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공적이전소득과 수급신청 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재산, 증빙서류 제출을 필요로 하는 임차보증금, 자동차가액, 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누락 소득·재산항목 보정을 통한 예상 소득인정액 추정방법

-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 대상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누락된 소득·재산항목 보정 전 중증장애인 가구의 제한적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전체 분포를 우선 도출함
- 그 후, 분석 DB에서 누락된 소득·재산항목을 보정할 경우 개별 가구의 2017년도 예상 소득인정액을 추정하고 전체 수급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선정기준 조정방안을 도출하는 방법을 모의분석 과정에서 활용함

3.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위한 중증장애인가구 소득인정액 모의 산출방법

□ 2017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전체 중증장애인 & 배우자 기준으로 구축된 분석 DB를 바탕으로 현행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선정체계를 적용한 전체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함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중증장애인가구(중증장애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 모의 산출방식 개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국세청 종합소득 월평균 + 월평균 공적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 건강보험 보수월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 지역별 기초공제액) × 연간 재산의 소득환산율(4%)* } / 12

* 2015년 재산의 소득환산율 조정결과 반영

- 현행 장애인연금 소득평가액 산정과정에 상시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의분석 과정에서 동일하게 반영함
  - 상시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수준은 2011년 40만원, 2012년 43만원, 2013년 45만원이었으며, 2014년에는 장애인연금 확대 시행 시 48만원 정액공제 이외에도 나머지 근로소득의 30% 정률공제를 추가 확대하였음

  - 근로소득공제 수준은 2015년도에 52만원 정액공제와 30% 정률공제를, 201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여 2016년도 적용 예상 근로소득공제 수준인 56만원 정액공제와 30% 정률공제를 적용함
  - 2017년 선정기준 도출을 위해서는 개별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모의 산출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여 2017년도 적용 예상 근로소득공제 수준인 60만원 정액공제와 30% 정률공제를 적용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과정에 일반재산에 대하여 지역별 기초공제액을 적용하며, 소득인정액 모의 산출과정에도 일반재산가액 산정 시 현행 지침에 따라서 시가표준액 및 보정률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 기준 주택, 토지, 건물 등 일반재산가액 합계에서 지역별 기초공제액을 적용함
- 특히, 2015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적용 당시 소득인정액 제도 개선사항으로 상향된 기초공제액 기준을 적용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함
  - 대도시 1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2015년 선정기준 조정 시 기존과 동일하게 재산 유형과는 상관없이 연 5%를 적용하였으나, 수급률 제고를 위해 2015년 하반기 연 4%로 하향 조정된 부분을 2017년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모의분석에 그대로 반영하였음

4. 중증장애인가구 소득인정액 분포를 활용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도출방법

□ 전체 중증장애가구 소득인정액 분위별 분포 및 하위 70% 선정기준 조정방안 분석을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방법

○ 개별 중증장애인가구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가구규모에 따른 가구 균등화 지수를 반영한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을 기초로 전체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위별 분포 분석

- 2017년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하여 현행 장애인연금 가구 균등화 지수(1:1.6)를 적용한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분포를 도출하여 분석에 활용함

□ 소득인정액 하위 70% 해당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방식

○ 가구 균등화 지수 적용에 의하여 '균등 조정된 소득인정액' 산출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분포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포를 기초로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조정방안을 도출함

- 누락 소득·재산항목 보정 전 소득인정액 분포 및 선정기준 조정안에 신청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한 후, 누락 항목에 대한 보정을 통해 추정된 개별 가구의 2017년 예상 소득인정액과 전체 분포로부터 선정기준 조정방안을 도출함

  • 현행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소득·재산항목별 보유분포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누락된 항목에 대한 보정치를 산출하여 반영함으로써 예상 소득인정액 분포 도출

○ 이러한 과정에서 2014년 장애인연금 확대 시행 이후에 변화되고 있는 수급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 조정 후 실제 수급률이 목표 수급률인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의 70%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하위 70% 선정기준 조정방안을 상향 조정하여 최종 조정방안을 제시함

- 2017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시,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연계 후 상승된 장애인연금 수급률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 선정률을 반영하여 조정함

○ 균등 조정된 소득인정액 분포를 바탕으로 최종 도출된 선정기준 조정방안에 대하여 동일한 가구 균등화 지수를 역으로 반영하여 가구규모(장애인단독·장애인부부)에 따른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시함

제 6 장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추정 및 2017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6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추정 및 2017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1. 2017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추정결과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분석 기본방향

○ 2017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전체 중증장애인 & 배우자 분석 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연금 선정체계를 모의 적용하여 개별 장애인가구의 소득인정액 추정

- 분석 DB에 연계된 소득재산 항목 중 신규 연계된 국세청 종합소득 및 부동산 시가표준액 이외 건강보험보수월액 및 공적연금 급여액 기준시점을 2017년 행복e음 연계 및 적용시점에 맞도록 시차 보정
  - 건강보험보수월액: 2016년 연간 임금상승률 예상치 3.3%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6.4월호) 반영
  - 공적연금급여액: 2016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상치 1.0%(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16. 10월) 반영
- 근로소득공제 상향 조정
  -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근로소득의 30% 추가 공제
  - ('14) 48만원 + 30% 추가 공제 ☞ ('15) 52만원 + 30% 추가 공제 ☞ ('16) 56만원 + 30% 추가 공제
- 지역별 기초공제액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은 현행 선정체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의 특성 상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을 제외한 기타 공적이전소득,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가액, 임차보증금 등 누락 항목이 보정되지 않은 '제한적 소득인정액' 우선 도출

○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의 소득재산 항목 기준으로 도출된 '제한적 소득인정액'과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기초통계 및 수급정보 상 실제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추정모형 도출 및 적용

- 개별 가구에 따라 산출된 '제한적 소득인정액'으로부터 비 추정 방법을 활용하여 누락된 항목을 포함시킬 경우 예상되는 '실제 소득인정액'을 추정하고,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토대로 최종적인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 목표 수급률을 위한 소득인정액 분위 상향 조정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가구 균등화 지수(1:1.6)에 의하여 '균등조정된 소득인정액' 산출 결과를 기초로 소득인정액 분포를 도출한 후, 2017년 장애인연금 목표 수급률(중증장애인 70%)을 위해 장애인연금 신청률 및 신청 탈락률(선정률)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함

- 2017년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 시, 2014년 이후 변화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수급률 및 장애등급 재심사 선정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함

• 2014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목표 수급률 70% 확대를 고려하여 2014년 선정기준 도출 당시 장애인연금 신청률(92%

☞ 95%) 및 장애등급 재심사 선정률(87% ☞ 90%)을 수정 반영하여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음

- 〈참고〉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 당시 선정기준 마련 당시 예산기준 소득인정액 하위 56% 선정기준 도출을 위해 신청률 85%와 신청 탈락률(장애등급 재심사 탈락 등) 20%를 반영하였음

○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도출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규모 변화 및 선정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종 목표 수급률 70%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률 산출 시 모수인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규모는 월 단위로 변경되며, 연령 도래 시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기초연금(2017년, 1952년 12월말 이전 출생 노인)과 달리, 장애인연금의 경우 장애등록 및 장애등급 심사를 전제로 하여 수급대상 모수의 변화가 크지 않으나 사전에 이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등록 장애인 중 수급대상을 중심으로 분석함

□ 2017년 중증장애인 가구 예상 소득인정액 구간별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중증장애인 분포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전체 중증장애인 분포				
중증장애인 단독 기준(원) (부부가구의 경우 1.6배 적용)	2016년		2017년	
	중증 장애인 비율	누적 중증 장애인 비율	중증 장애인 비율	누적 중증 장애인 비율
0	36.25%	36.25%	37.70%	37.70%
0 초과 ~ 100,000 이하	15.25%	51.49%	7.07%	44.77%
100,000 초과 ~ 200,000 이하	8.47%	59.96%	7.06%	51.83%
200,000 초과 ~ 300,000 이하	5.03%	64.99%	6.11%	57.94%
300,000 초과 ~ 400,000 이하	3.57%	68.57%	4.92%	62.86%
400,000 초과 ~ 500,000 이하	3.19%	71.76%	4.32%	67.18%
500,000 초과 ~ 600,000 이하	2.93%	74.69%	3.41%	70.59%
600,000 초과 ~ 700,000 이하	2.30%	76.99%	2.89%	73.48%
700,000 초과 ~ 800,000 이하	1.89%	78.88%	2.32%	75.80%
800,000 초과 ~ 810,000 이하	0.20%	79.08%	0.20%	76.00%
810,000 초과 ~ 820,000 이하	0.17%	79.25%	0.18%	76.18%
820,000 초과 ~ 830,000 이하	0.15%	79.40%	0.20%	76.39%
830,000 초과 ~ 840,000 이하	0.15%	79.55%	0.21%	76.60%
840,000 초과 ~ 850,000 이하	0.17%	79.72%	0.17%	76.77%
850,000 초과 ~ 860,000 이하	0.17%	79.89%	0.18%	76.95%
860,000 초과 ~ 870,000 이하	0.15%	80.04%	0.21%	77.16%
870,000 초과 ~ 880,000 이하	0.15%	80.19%	0.17%	77.33%
880,000 초과 ~ 890,000 이하	0.15%	80.34%	0.18%	77.51%
890,000 초과 ~ 900,000 이하	0.14%	80.48%	0.17%	77.68%
900,000 초과 ~ 910,000 이하	0.23%	80.70%	0.16%	77.84%
910,000 초과 ~ 920,000 이하	0.14%	80.84%	0.17%	78.01%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전체 중증장애인 분포				
중증장애인 단독 기준(원) (부부가구의 경우 1.6배 적용)	2016년		2017년	
	중증 장애인 비율	누적 중증 장애인 비율	중증 장애인 비율	누적 중증 장애인 비율
920,000 초과 ~ 930,000 이하	0.14%	80.98%	0.15%	78.16%
930,000 초과 ~ 940,000 이하	0.14%	81.12%	0.15%	78.31%
940,000 초과 ~ 950,000 이하	0.13%	81.25%	0.21%	78.52%
950,000 초과 ~ 960,000 이하	0.15%	81.40%	0.14%	78.66%
960,000 초과 ~ 970,000 이하	0.13%	81.53%	0.14%	78.80%
970,000 초과 ~ 980,000 이하	0.13%	81.66%	0.19%	78.99%
980,000 초과 ~ 990,000 이하	0.13%	81.78%	0.15%	79.14%
990,000 초과 ~ 1,000,000 이하	**0.14%**	**81.93%**	0.15%	79.29%
1,000,000 초과 ~ 1,010,000 이하	0.16%	82.09%	0.14%	79.44%
1,010,000 초과 ~ 1,020,000 이하	0.12%	82.22%	0.13%	79.57%
1,020,000 초과 ~ 1,030,000 이하	0.13%	82.35%	0.14%	79.71%
1,030,000 초과 ~ 1,040,000 이하	0.12%	82.47%	0.13%	79.84%
1,040,000 초과 ~ 1,050,000 이하	0.12%	82.60%	0.16%	80.00%
1,050,000 초과 ~ 1,060,000 이하	0.13%	82.72%	0.13%	80.13%
1,060,000 초과 ~ 1,070,000 이하	**0.12%**	**82.84%**	**0.13%**	**80.25%**
1,070,000 초과 ~ 1,080,000 이하	0.12%	82.96%	0.12%	80.37%
1,080,000 초과 ~ 1,090,000 이하	0.13%	83.09%	0.15%	80.52%
1,090,000 초과 ~ 1,100,000 이하	0.11%	83.20%	0.13%	80.66%
1,100,000 초과 ~ 1,110,000 이하	0.14%	83.35%	0.13%	80.78%
1,110,000 초과 ~ 1,120,000 이하	0.11%	83.45%	0.13%	80.91%
1,120,000 초과 ~ 1,130,000 이하	0.11%	83.57%	0.12%	81.03%
1,130,000 초과 ~ 1,140,000 이하	0.12%	83.69%	0.15%	81.18%
1,140,000 초과 ~ 1,150,000 이하	0.12%	83.80%	0.11%	81.29%
1,150,000 초과 ~ 1,160,000 이하	0.11%	83.91%	0.14%	81.43%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전체 중증장애인 분포				
중증장애인 단독 기준(원) (부부가구의 경우 1.6배 적용)	2016년		2017년	
	중증 장애인 비율	누적 중증 장애인 비율	중증 장애인 비율	누적 중증 장애인 비율
1,160,000 초과 ~ 1,170,000 이하	0.11%	84.02%	0.11%	81.54%
1,170,000 초과 ~ 1,180,000 이하	0.10%	84.12%	0.11%	81.65%
1,180,000 초과 ~ 1,190,000 이하	**0.12%**	**84.24%**	**0.14%**	**81.79%**
1,190,000 초과 ~ 1,200,000 이하	0.10%	84.34%	0.12%	81.91%
1,200,000 초과 ~ 1,210,000 이하	0.10%	84.44%	0.11%	82.02%
1,210,000 초과 ~ 1,220,000 이하	0.12%	84.57%	0.11%	82.13%
1,220,000 초과 ~ 1,230,000 이하	0.11%	84.67%	0.11%	82.24%
1,230,000 초과 ~ 1,240,000 이하	0.09%	84.77%	0.10%	82.35%
1,240,000 초과 ~ 1,250,000 이하	0.10%	84.86%	0.12%	82.46%
1,250,000 초과 ~ 1,260,000 이하	0.10%	84.96%	0.12%	82.59%
1,260,000 초과 ~ 1,270,000 이하	0.10%	85.06%	0.11%	82.70%
1,270,000 초과 ~ 1,280,000 이하	0.10%	85.16%	0.10%	82.80%
1,280,000 초과 ~ 1,290,000 이하	0.09%	85.25%	0.10%	82.90%
1,290,000 초과 ~ 1,300,000 이하	0.09%	85.34%	0.13%	83.04%
1,300,000 초과 ~ 1,310,000 이하	0.08%	85.43%	0.11%	83.14%
1,310,000 초과 ~ 1,320,000 이하	0.11%	85.53%	0.11%	83.25%
1,320,000 초과 ~ 1,330,000 이하	0.08%	85.61%	0.10%	83.35%
1,330,000 초과 ~ 1,340,000 이하	0.09%	85.70%	0.11%	83.47%
1,340,000 초과 ~ 1,350,000 이하	0.08%	85.78%	0.10%	83.56%
1,350,000 초과 ~ 1,360,000 이하	0.08%	85.86%	0.10%	83.66%
1,360,000 초과 ~ 1,370,000 이하	0.11%	85.97%	0.11%	83.78%
1,370,000 초과 ~ 1,380,000 이하	0.08%	86.05%	0.09%	83.86%
1,380,000 초과 ~ 1,390,000 이하	0.09%	86.14%	0.10%	83.97%
1,390,000 초과 ~ 1,400,000 이하	0.08%	86.22%	0.10%	84.06%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전체 중증장애인 분포				
중증장애인 단독 기준(원) (부부가구의 경우 1.6배 적용)	2016년		2017년	
	중증 장애인 비율	누적 중증 장애인 비율	중증 장애인 비율	누적 중증 장애인 비율
1,400,000 초과 ~ 1,410,000 이하	0.08%	86.30%	0.12%	84.19%
1,410,000 초과 ~ 1,420,000 이하	0.07%	86.37%	0.09%	84.28%
1,420,000 초과 ~ 1,430,000 이하	0.09%	86.46%	0.09%	84.37%
1,430,000 초과 ~ 1,440,000 이하	0.08%	86.54%	0.09%	84.46%
1,440,000 초과 ~ 1,450,000 이하	0.07%	86.60%	0.09%	84.54%
1,450,000 초과 ~ 1,460,000 이하	0.08%	86.69%	0.10%	84.64%
1,460,000 초과 ~ 1,470,000 이하	0.07%	86.76%	0.12%	84.76%
1,470,000 초과 ~ 1,480,000 이하	0.07%	86.84%	0.08%	84.84%
1,480,000 초과 ~ 1,490,000 이하	0.07%	86.90%	0.08%	84.91%
1,490,000 초과 ~ 1,500,000 이하	0.07%	86.97%	0.08%	85.00%
1,500,000 초과 ~ 1,600,000 이하	0.67%	87.64%	0.83%	85.83%
1,600,000 초과 ~ 1,700,000 이하	0.58%	88.22%	0.67%	86.49%
1,700,000 초과 ~ 1,800,000 이하	0.56%	88.77%	0.61%	87.10%
1,800,000 초과 ~ 1,900,000 이하	0.50%	89.27%	0.53%	87.63%
1,900,000 초과 ~ 2,000,000 이하	0.46%	89.73%	0.51%	88.14%
2,000,000 초과	10.27%	100.00%	11.86%	100.00%

□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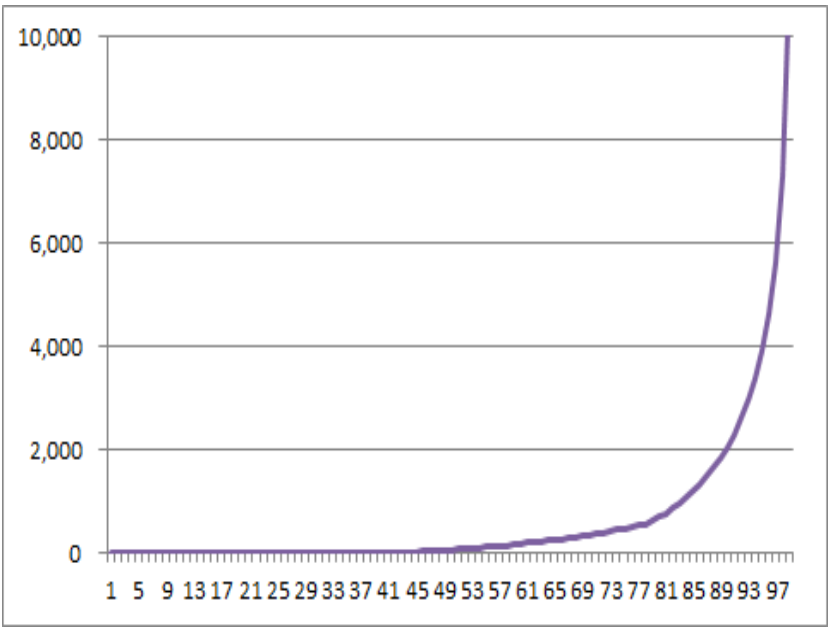

2.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최종 조정안 도출

○ (기본원칙) 목표 수급률 70%를 고려한 2016년 수급률 변화(신청률), 장애등급 재심사 탈락률(선정률)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분위 및 선정기준 도출

- 장애인연금 가구 균등화 지수 (1:1.6) 적용

○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추가 반영에 따른 소득인정액 상향 요인 고려 ☞ 연간 48만원(월 4만원) 공제 적용

○ 장애인연금 신청률(수급률) ☞ 96.16% (수급률 67.31%)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연계한 2015년 이후 수급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14.12) 64.50% ☞ ('15.6) 66.16% ☞ ('15.12) 67.29%
-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되, 장애등급 재심사 기피 등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2016년 선정기준 조정 초기 67.31%임을 감안함
- 2017년 수급률 70% 수준에 근접하도록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수급률 67.31%가 유지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신청률 96.16%를 적용함
- 2016년 선정기준 추정 시 최근 수급률 67.2%가 유지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신청률 96.0%를 적용한 바 있으며, 이를 다소 상향 조정하여 반영함
  - 2014년 기초연금 전환 및 장애인연금 확대, 급여인상에 따른 기대 및 인식 확산으로 인한 수급률 증가를 반영하여 95%를 적용하였으며, 2015년 선정기준 도출 시 201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
  -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 시 예상 수급 신청률 85%를 반영하였으나, 2013년까지는 장애인연금 수급 규모를 고려하여 92%를 반영하였음

○ 장애등급 재심사 탈락률(선정률) 반영 ☞ 11.0% (선정률 89.0%)

- 2014년 10.2% (선정률 89.8%) / 2015년 10.0% (선정률 90.0%)에 이어 2016년과 동일한 수준인 11.0% (선정률 89.0%)으로 반영

-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 당시 장애등급 재심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 탈락률을 20%로 반영하였으며, 2013년 선정기준 도출 시 13.3% 반영

〈참고〉 장애인연금 수급자 규모 및 수급률 변화 추이(2014.6~2016.10)

구분	중증장애인수(명)	수급자수(명)	수급률
2014. 6월	508,316	306,461	60.29
2014. 7월	508,341	306,559	60.31
2014. 8월	508,597	309,857	60.92
2014. 9월	508,979	316,977	62.28
2014. 10월	509,374	321,652	63.15
2014. 11월	509,496	324,858	63.76
2014. 12월	509,164	328,414	64.50
2015. 1월	508,705	329,449	64.76
2015. 2월	508,464	330,282	64.96
2015. 3월	507,852	331,314	65.24
2015. 4월	507,757	332,652	65.51
2015. 5월	507,166	332,958	65.65
2015. 6월	507,492	335,780	66.16
2015. 7월	508,131	338,513	66.62
2015. 8월	508,253	340,139	66.92
2015. 9월	508,879	341,349	67.08
2015. 10월	509,113	342,024	67.18
2015. 11월	509,302	342,532	67.26
2015. 12월	508,927	342,444	67.29
2016. 1월	508,573	342,259	67.30
2016. 2월	508,592	342,349	67.31
2016. 3월	508,517	342,866	67.42
2016. 4월	509,170	343,296	67.42
2016. 5월	509,606	344,778	67.66
2016. 6월	510,185	345,911	67.80
2016. 7월	510,747	346,508	67.84
2016. 8월	510,991	347,847	68.07
2016. 9월	511,225	348,657	68.20
2016. 10월	511,500	349,259	68.28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참고〉 장애인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2014.6~201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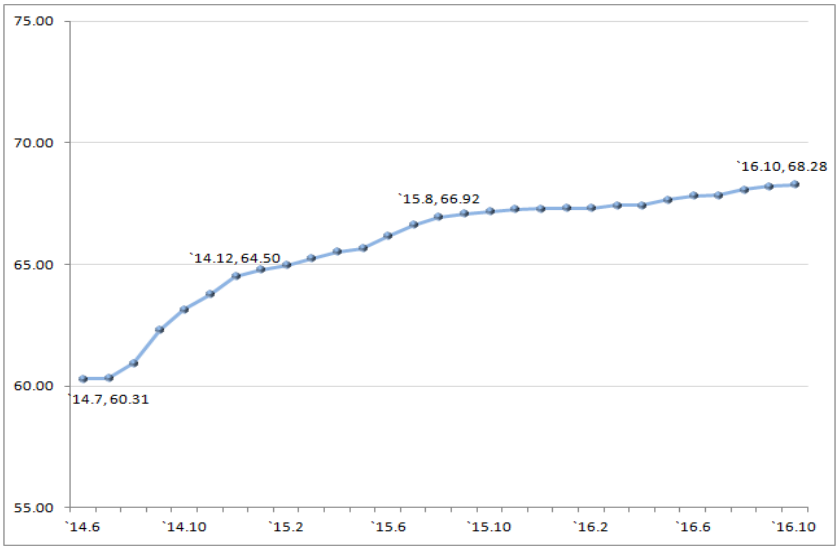

〈참고〉 장애인연금 수급률 전월 대비 변동 폭 변화 추이(2014.6~201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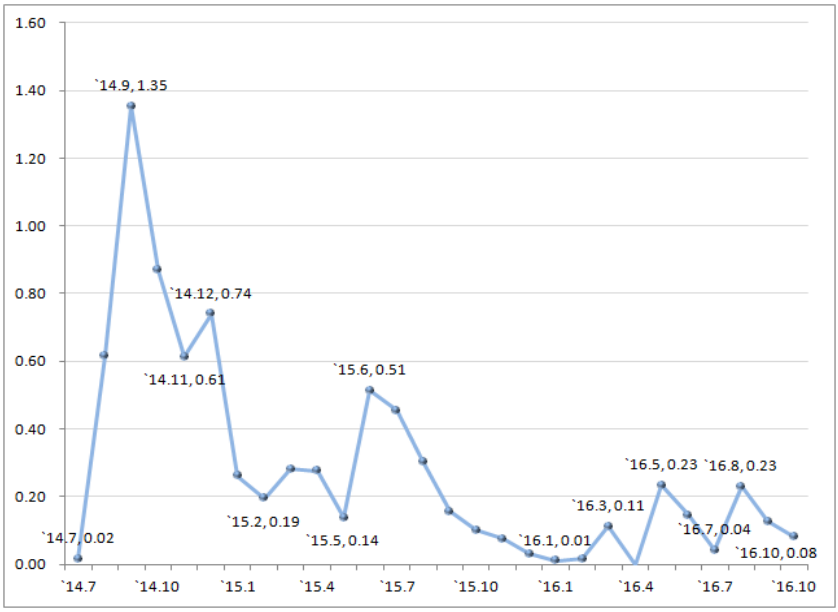

○ 수급률(신청률)·장애등급 재심사 탈락률(선정률)을 동시 고려한 소득인정액 분위 상향 조정

- 앞서 제시한 수급률(신청률) 67.31%(96.16%)과 장애등급 재심사 탈락률(선정률) 11.0%(89.0%)을 최종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하위 81.79% 수준에서 2017년 최종 선정기준액 조정방안(1안) 도출
  - 2016년 선정기준 조정 시, 최근 수급률 67.2%를 반영한 신청률 96.0%를 적용하여, 소득인정액 하위 81.93%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으로 선정기준 조정
- 단,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기초연금과 연계함에 따라서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상승 중이며, 향후 70%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분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선정기준 최소 조정방안(2안)을 별도로 도출하여 제시함
  - 수급률 상향 조정과 장애등급재심사 탈락률 조정 등을 반영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분리 방안으로 소득인정액 하위 80.22% 적용 가능(2안)
- 한편, 2017년 선정기준액의 경우, 2016년 3월 이후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을 연계하여 신규 반영하고 있음에 따라 소득인정액 상승 요인이 존재하므로 선정기준 상향 조정 필요

□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최종 조정방안

○ (기초연금 연계) 소득인정액 하위 81.79%

☞ 단독 1,190,000원 / 부부 1,904,000원

○ (기초연금 분리) 소득인정액 하위 80.22%

☞ 단독 1,070,000원 / 부부 1,712,000원

구분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014년 1~6월	목표 수급률 63%	신청률 92.0% 선정률 86.7%	소득인정액 하위 78.98%	650,000원	1,040,000원
2014년 7~12월	목표 수급률 70%	신청률 95.0% 선정률 89.8%	소득인정액 하위 82.05%	870,000원	1,392,000원
2015년	목표 수급률 70%	신청률 95.0% 선정률 90.0%	소득인정액 하위 81.87%	930,000원 (60,000원 ⇧) (6.9% ⇧)	1,488,000원 (96,000원 ⇧) (6.9% ⇧)
2016년	목표 수급률 70%	신청률 96.0% 선정률 89.0%	소득인정액 하위 81.93%	1,000,000원 (70,000원 ⇧) (7.5% ⇧)	1,600,000원 (112,000원 ⇧) (7.5% ⇧)
2017년 (1안) 기초연금 연계	**목표 수급률 70%**	**수급률 67.31% 신청률 96.16% 선정률 89.00% 탈락률 11.00%**	**소득인정액 하위 81.79%**	**1,190,000원 (190,000원 ⇧) (19.0% ⇧)**	**1,904,000원 (304,000원 ⇧) (19.0% ⇧)**
2017년 (2안) 기초연금 분리	**목표 수급률 70%**	**수급률 67.73% 신청률 96.76% 선정률 90.18% 탈락률 9.82%**	**소득인정액 하위 80.22%**	**1,070,000원 (70,000원 ⇧) (7.0% ⇧)**	**1,712,000원 (112,000원 ⇧) (7.0% ⇧)**

참고문헌

Breiman, L. (2001). Random forests. Machine learning, 45(1), 5-32.

Y. Freund and R. E. Schapire (1997). "A decision-theoretic generalization of online learning and an application to boosting", Journal of Computer and System Sciences, 55(1):119-139.

J. H. Friedman (2001). "Greedy Function Approximation: A Gradient Boosting Machine", Annals of Statistics 29(5):1189-1232.

J. H. Friedman, T. Hastie, R. Tibshirani (2000). "Additive Logistic Regression: a Statistical View of Boosting", Annals of Statistics 28(2):337-374.

T. Hastie, R. Tibshirani, J. H. Friedman (2001). "The Elements of Statistical Learning", Springer.

부 록

〈부록 1〉 장애인연금 도입 및 확대의 빈곤감소 및 소득보장 효과

□ 장애인연금 도입 및 확대에 따른 장애인 빈곤 완화 및 소득보장 효과 분석

- 2014년 장애인연금 확대에 따른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 및 급여인상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평가 및 홍보, 향후 장애인 소득보장실태 조사 개선 등에 활용

□ 분석데이터 ☞ 장애인실태조사(2013년 기준시점) 기반 장애인연금 확대 추정

○ 행정자료, 실태조사 등 다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장애인연금 관련 변수 확인을 통해 장애인연금 확대의 정책 효과성 분석 가능성 검토

- 복지패널(2014년 기준시점)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년 기준시점)의 경우, 중증장애인 표본규모 제약과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정보 통합 제공으로 장애인연금 관련 분석에 한계가 있음
- 가계동향조사(2015년 기준시점)
  - 중증장애인 표본규모 제약,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나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부조 성격의 공적이전을 통합 제공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연금 관련 분석에 한계가 있음
- 장애인연금 확대(2014. 7월) 시점 전후 반기별 행복e음 행정데이터

- 수급대상 선정 관련 소득재산 항목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체 중증장애인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급대상을 중심으로 소득재산 및 급여 변화 심층 분석에 활용 가능함

- 장애인실태조사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2013년 기준시점)의 경우 장애인 대상 심층조사를 수행하여 장애인연금 확대 시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반면에, 장애 관련 정보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음
  - 이를 기반으로 2014년 장애인연금 확대에 따른 신규 수급 및 급여 인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 변화 및 정책효과를 추정하는데 활용 가능
  - 향후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뿐만 아니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정책효과 분석·평가가 적절하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7년도 실시 예정인 장애인실태조사 설계 및 조사과정에서 조사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분석대상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 가구 중심으로 지표 산출

□ 분석지표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및 수급률 증가 ☞ 행정자료 기반으로 별도 활용

○ 중증장애인 가구 및 개인 경상소득 대비 장애인연금의 소득 비중 변화

○ 중증장애인 가구의 빈곤율 변화 및 빈곤감소 효과

- 장애인실태조사 기준시점인 2013년 당시의 통계청 중위소득을 빈곤기준으로 적용

○ 중증장애인 가구 빈곤갭비율 변화 및 빈곤갭비율 감소효과

○ 중증장애인 가구 소득충족률(Income-to-Need Ratio) 변화 및 증가효과

* 빈곤완화 및 소득보장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과 이외에 장애인연금 급여의 활용 및 만족도 등은 장애인실태조사 조사내용 추가 또는 별도 실태조사 연구를 추진하여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분석 가능

☞ 기초연금 도입 이후 기초연금 급여 활용 및 만족도 관련 연구 사례 참조

□ 분석결과

○ 2014년 장애인연금 확대 이후 수급대상 및 수급률 증가 ☞ 장애인 등록정보 및 장애인연금 수급 행정자료 기반 도출

기준시점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급률
2014.6	508,316명	306,461명	60.29%
2014.12	509,164명	328,414명	64.50%
2015.6	507,492명	335,780명	66.16%
2015.12	508,927명	342,444명	67.29%
2016.6	510,185명	345,911명	67.80%

○ 중증장애인 가구 및 개인 경상소득 대비 장애인연금의 소득 비중 변화 (2014년 장애인연금 확대 전후)

- 장애인연금 확대 전후의 중증장애인 가구 경상소득 대비 장애인연금의 소득구성 비중 변화

  : 5.8% ☞ 8.3% (2.5%p, 43.2% 증가)

- 장애인연금 확대 전후의 중증장애인 개인 경상소득 대비 장애인연금의 소득구성 비중 변화

  : 19.0% ☞ 26.5% (7.5%p, 39.8% 증가)

○ 중증장애인 가구 빈곤율 변화 및 이에 따른 빈곤감소 효과(2014년 장애인연금 확대 전후)

- OECD 상대빈곤기준 ☞ '가구원수 제곱근'을 가구균등화 지수로 적용 (4인 2.0)
- 기준 중위소득방식 ☞ 현행 기준 중위소득 방식 (2인 1.7, 3인 2.2, 4인 2.7)

- OECD 상대빈곤기준 적용 및 기준 중위소득방식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빈곤율 변화

빈곤기준		장애인연금 제외 시	장애인연금 확대 전	장애인연금 확대 후	장애인연금 확대에 따른 빈곤감소효과
OECD 상대 빈곤 기준	중위 40%	40.7%	32.0%	26.2%	5.8%p, 18.0%
	중위 50%	**51.8%**	**47.6%**	**44.1%**	**3.5%p, 7.5%**
	중위 60%	60.7%	58.1%	55.0%	3.1%p, 5.2%
기준 중위 소득 방식	중위 40%	36.6%	21.1%	15.7%	5.4%p, 25.8%
	중위 50%	**48.8%**	**39.1%**	**32.2%**	**6.9%p, 17.8%**
	중위 60%	57.9%	54.5%	49.0%	5.5%p, 10.1%

○ 중증장애인 빈곤가구의 빈곤갭비율 변화 및 감소효과

- 빈곤갭비율 ☞ 가구의 빈곤기준선 미충족 비율

빈곤기준		장애인연금 제외 시	장애인연금 확대 전	장애인연금 확대 후	장애인연금 확대에 따른 빈곤갭비율 감소효과
OECD 상대 빈곤 기준	중위 40%	40.7%	22.9%	16.1%	6.8%p, 29.8%
	중위 50%	**43.3%**	**29.4%**	**23.9%**	**5.5%p, 18.8%**
	중위 60%	46.2%	35.3%	30.7%	4.6%p, 13.0%
기준 중위 소득 방식	중위 40%	38.6%	22.3%	14.9%	7.4%p, 33.1%
	중위 50%	**39.6%**	**25.0%**	**18.8%**	**6.2%p, 24.7%**
	중위 60%	42.7%	29.6%	24.4%	5.2%p, 17.5%

- 빈곤율 감소가 빈곤의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보여주는 반면에, 빈곤갭비율 변화는 빈곤의 질적 측면에서 심도의 변화를 보여줌

○ 중증장애인 빈곤가구의 소득충족률(Income-to-Need Ratio) 변화 및 증가효과 (2014년 장애인연금 확대 전후)

- 소득충족률 ☞ 빈곤기준선 대비 가구 경상소득 충족 비율

빈곤기준		장애인연금 제외 시	장애인연금 확대 전	장애인연금 확대 후	장애인연금 확대에 따른 소득충족률 증가효과
OECD 상대 빈곤 기준	중위 40%	59.3%	77.1%	83.9%	6.8%p, 8.9%
	중위 50%	**56.7%**	**70.6%**	**76.1%**	**5.5%p, 7.8%**
	중위 60%	53.8%	64.7%	69.3%	4.6%p, 7.1%
기준 중위 소득 방식	중위 40%	61.5%	77.7%	85.1%	7.4%p, 9.5%
	중위 50%	**60.4%**	**75.0%**	**81.2%**	**6.2%p, 8.2%**
	중위 60%	57.3%	70.4%	75.6%	5.2%p, 7.4%

〈부록 2〉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별 소득재산 항목별 분포 분석

□ 3장에서 제시한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과 관련하여, 소득인정액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세부 소득재산 항목별 분포를 제시함

□ 소득평가액 구성항목별 보유실태

○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별로 소득평가액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항목별 보유실태를 Violin plot을 활용하여 제시함

○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위하여 자산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과 배우자 중심의 분석 DB 구축과정에서 연계한 행복e음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의 특성별 소득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함

○ 소득평가액과 이를 구성하는 주요 소득항목으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선정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의 분포를 분석하여 제시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성항목별 보유실태

○ 행복e음 상의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소득재산 정보를 기초로,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별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이를 구성하는 재산항목별 보유실태를 Violin plot으로 제시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에 주택, 토지, 건물, 전월세보증금 등 부동산 중심의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및 부채에 대한 수급가구 특성별 분포를 살펴봄

□ 가구유형 ☞ 장애인 단독가구 vs. 장애인 부부가구

○ 근로소득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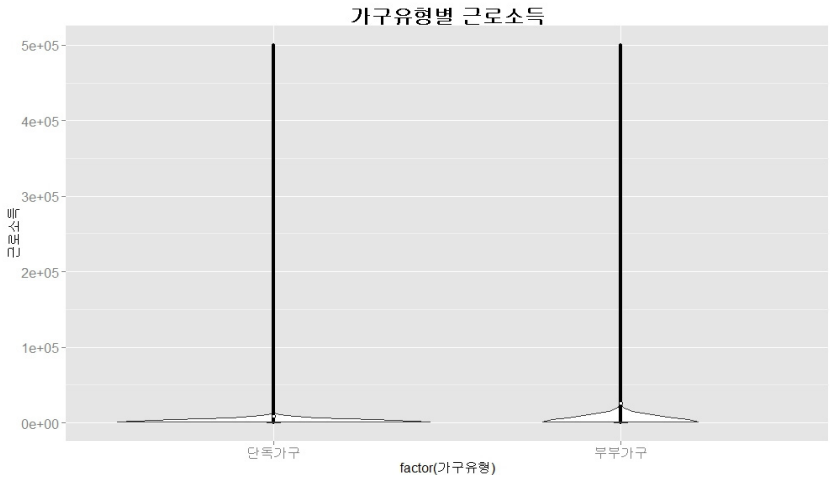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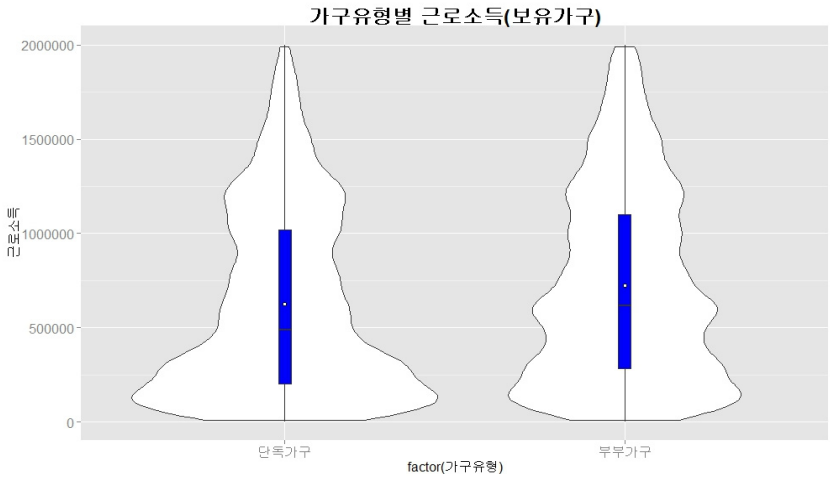

○ 사업소득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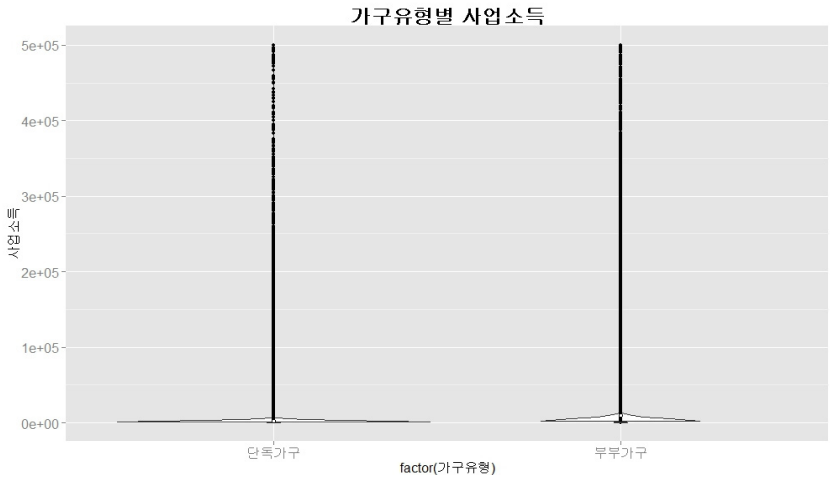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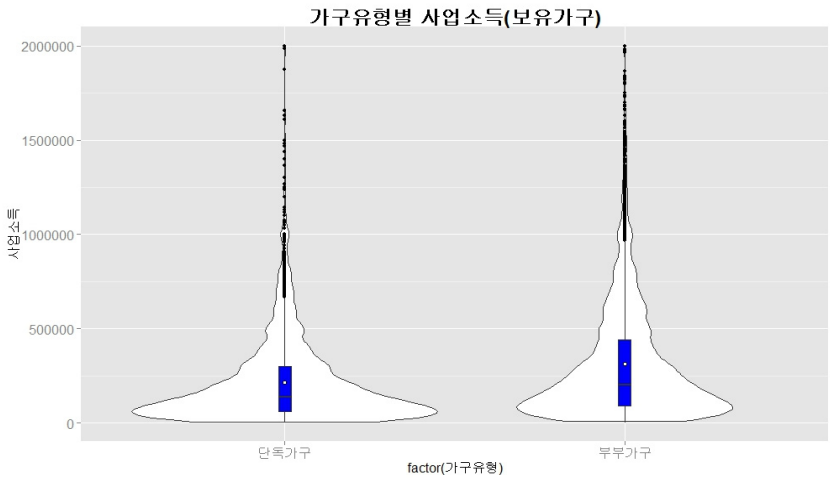

○ 재산소득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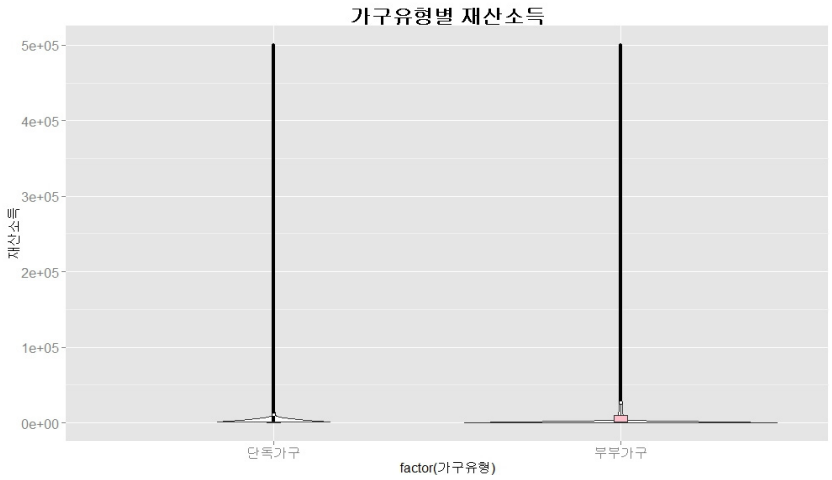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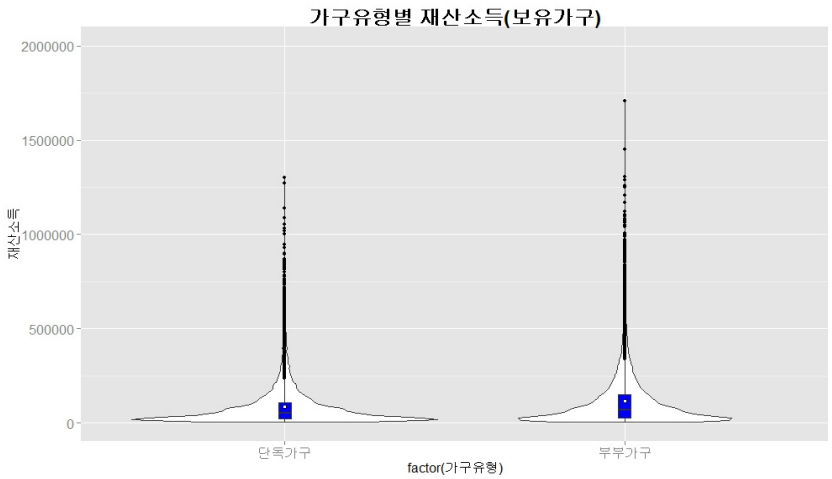

○ 공적이전소득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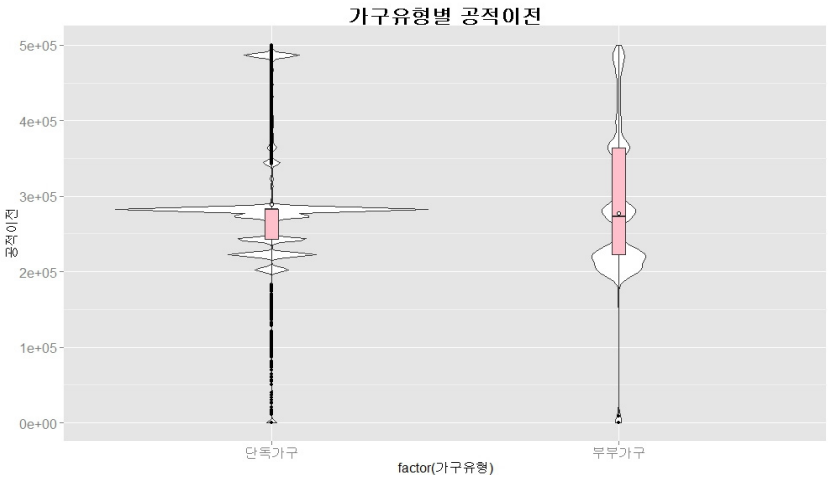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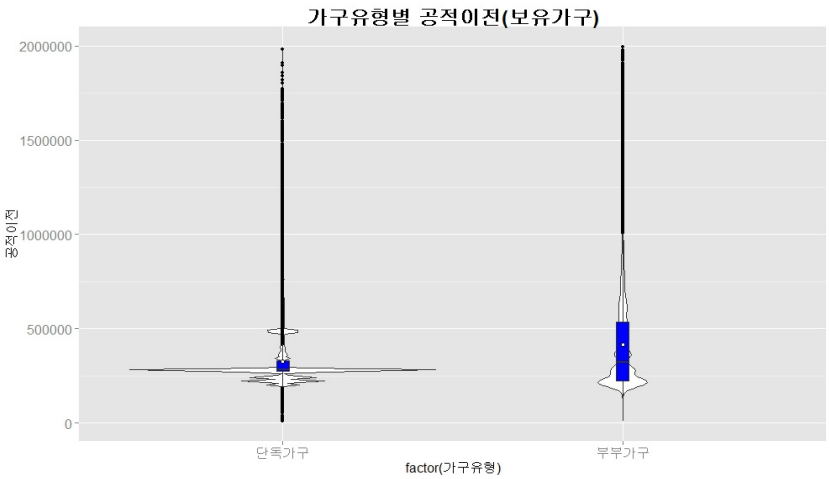

○ 주택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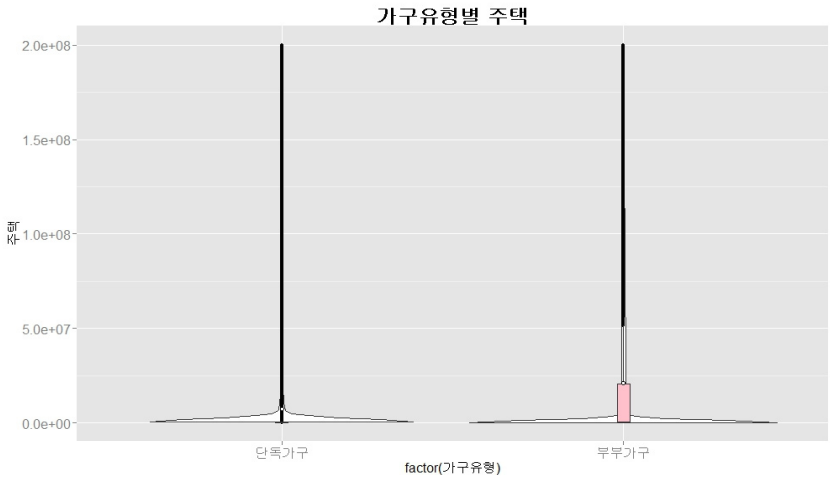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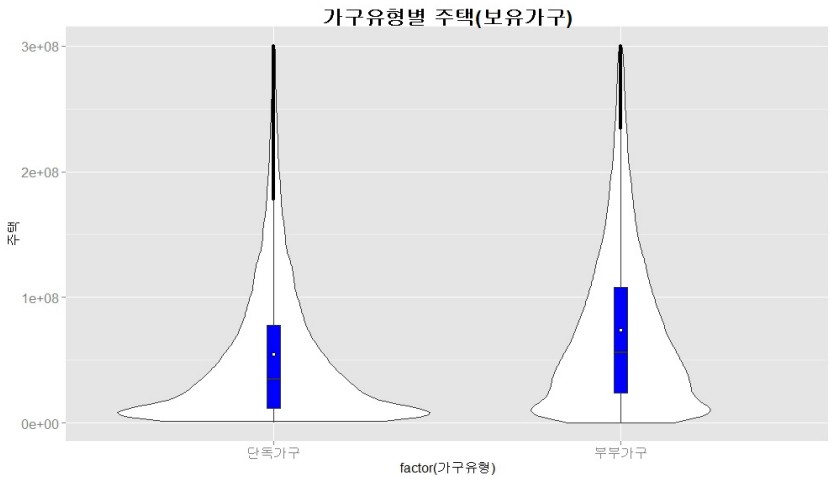

○ 토지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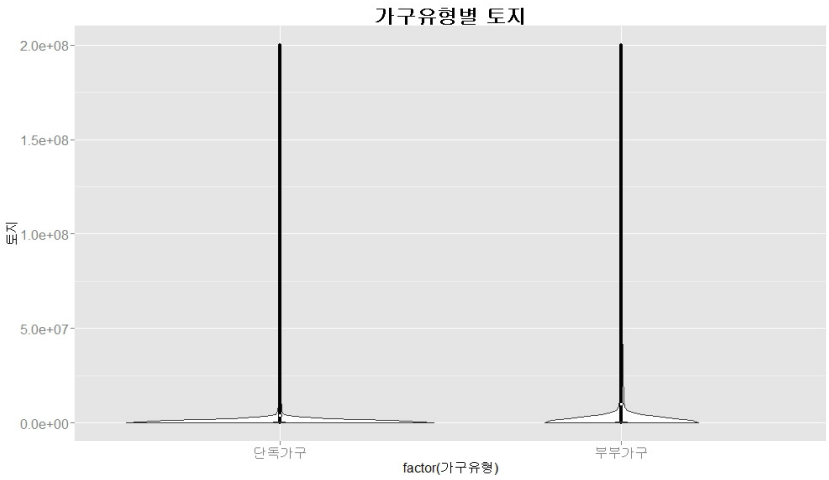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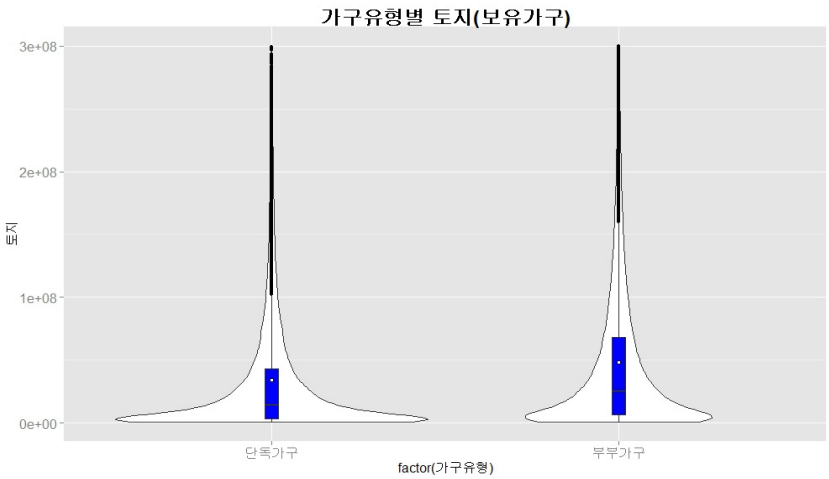

○ 건물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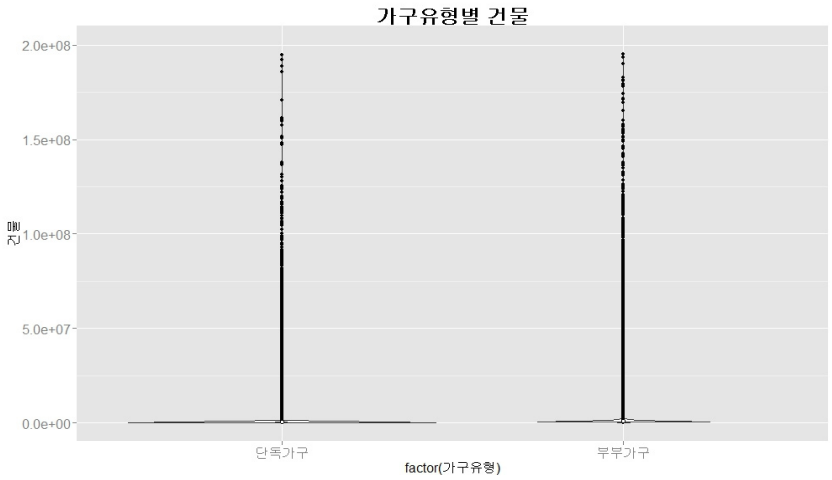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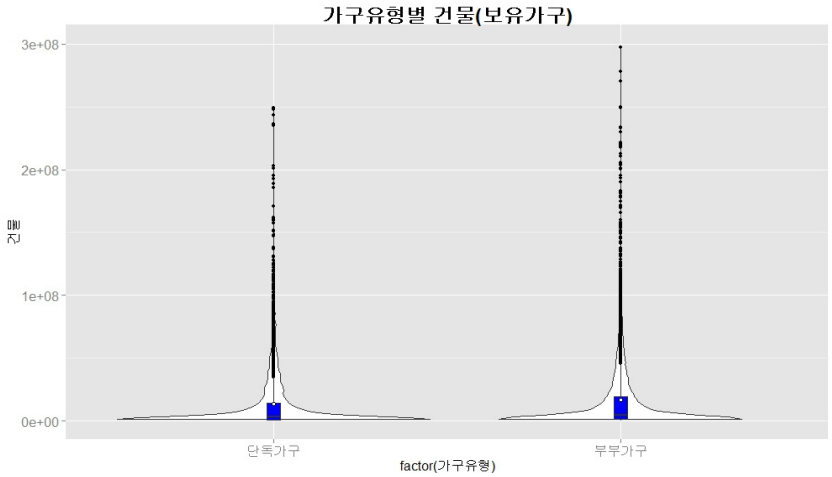

○ 전월세보증금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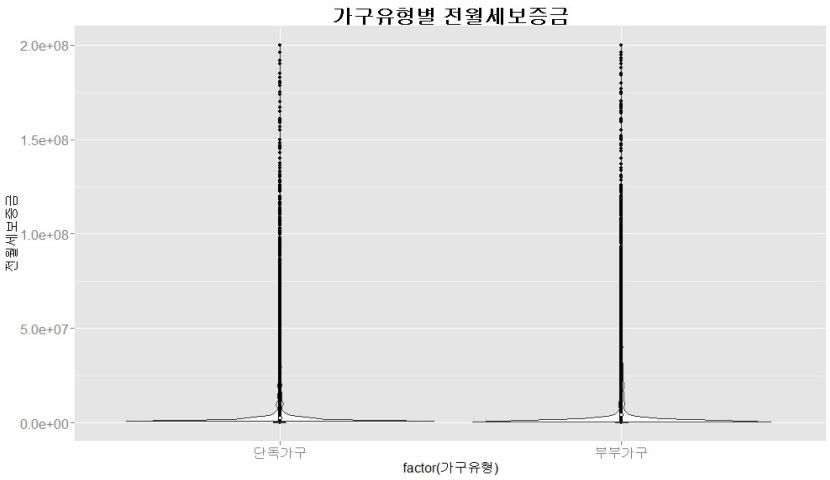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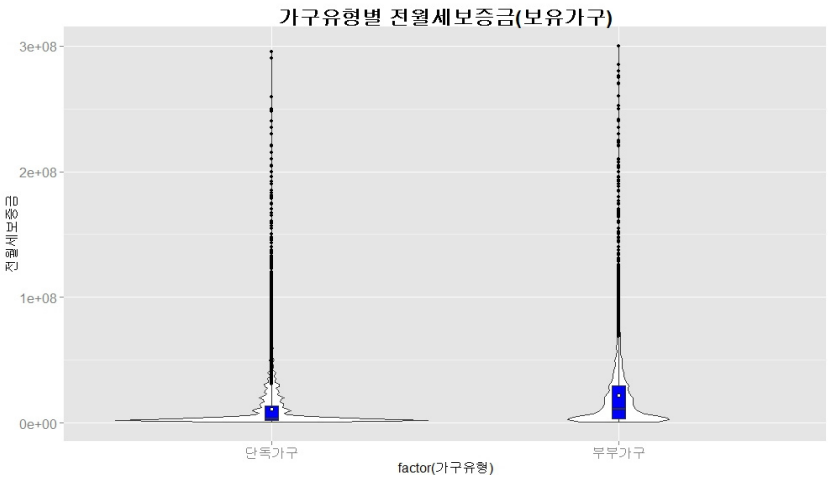

○ 금융재산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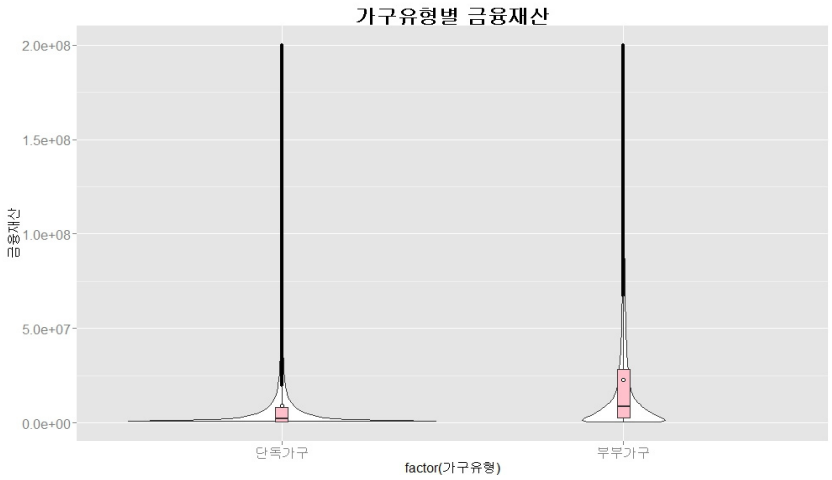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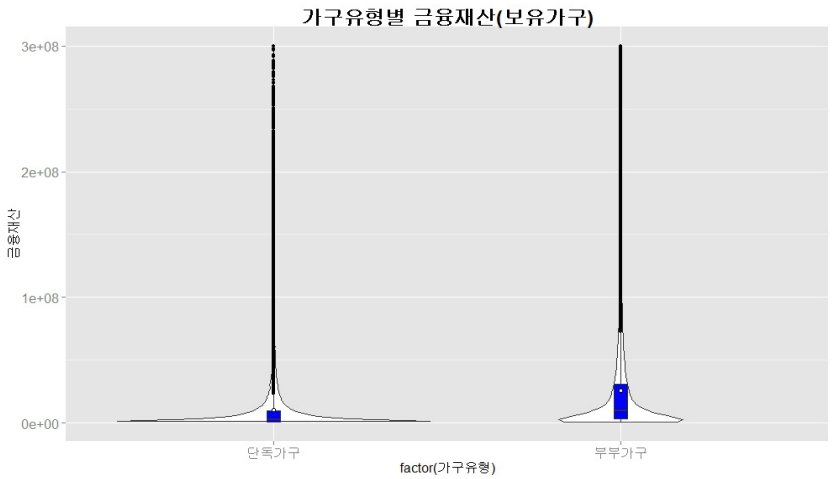

○ 부채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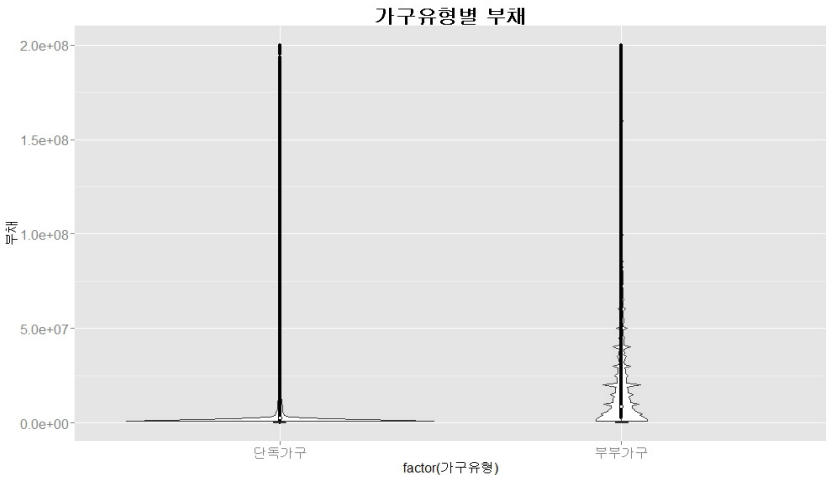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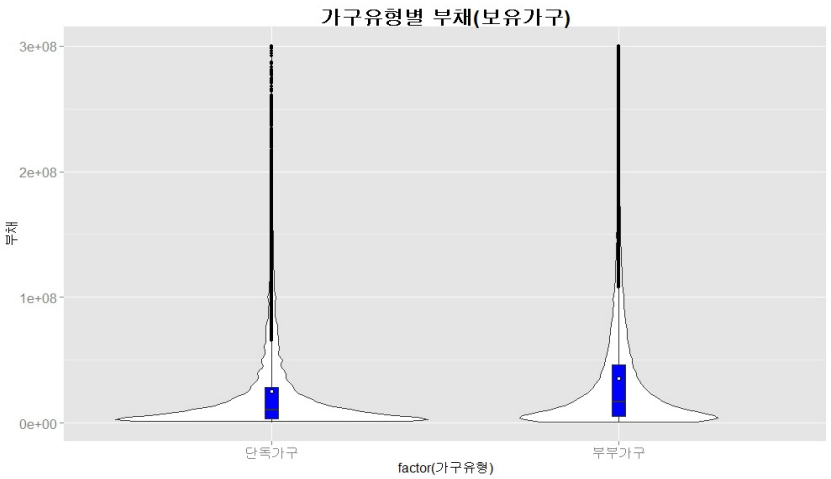

□ 지역구분 ☞ 대도시 vs. 중소도시 vs. 농어촌

○ 근로소득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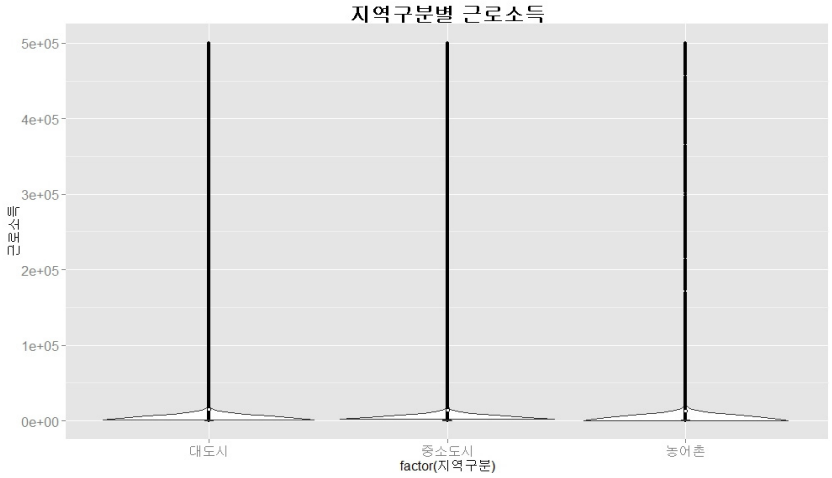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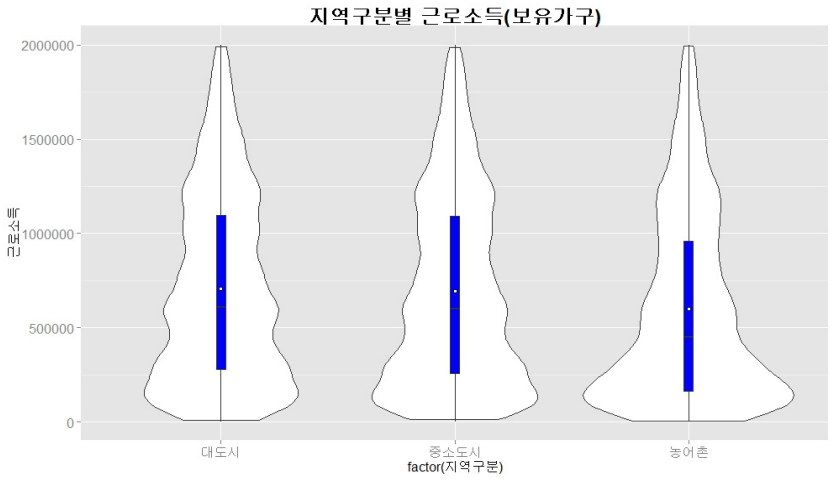

○ 사업소득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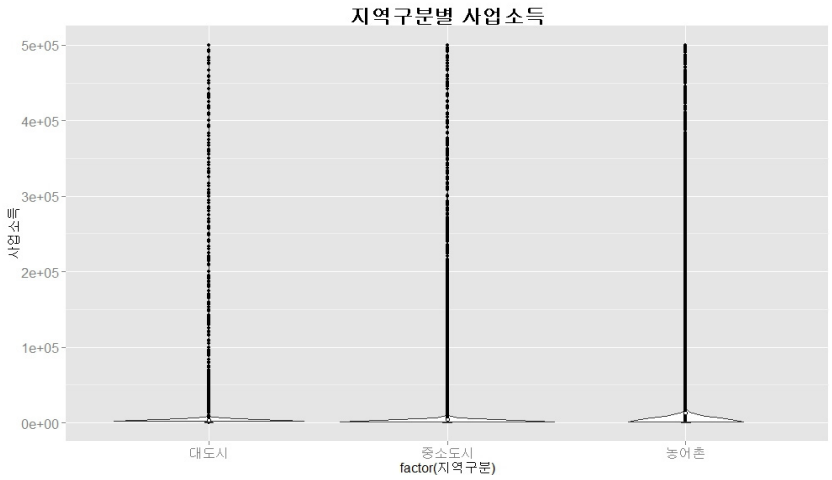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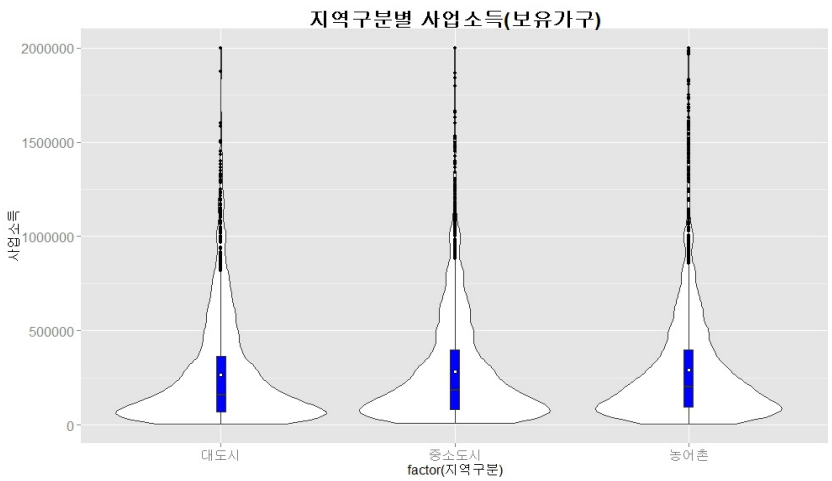

○ 재산소득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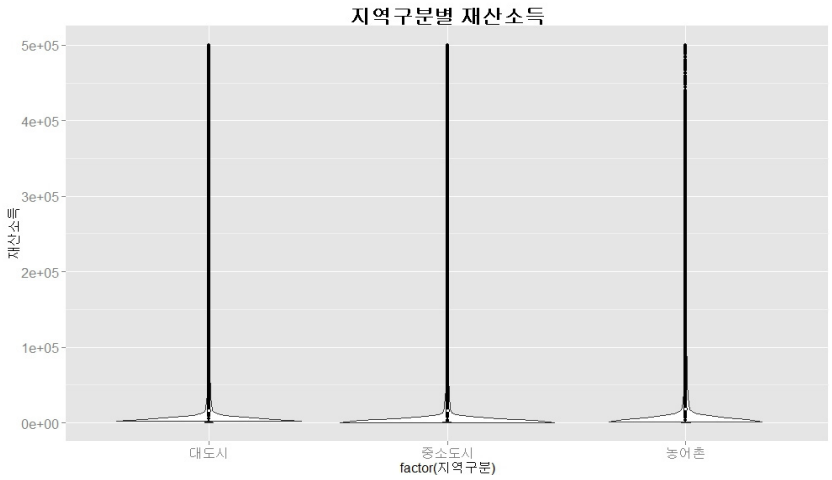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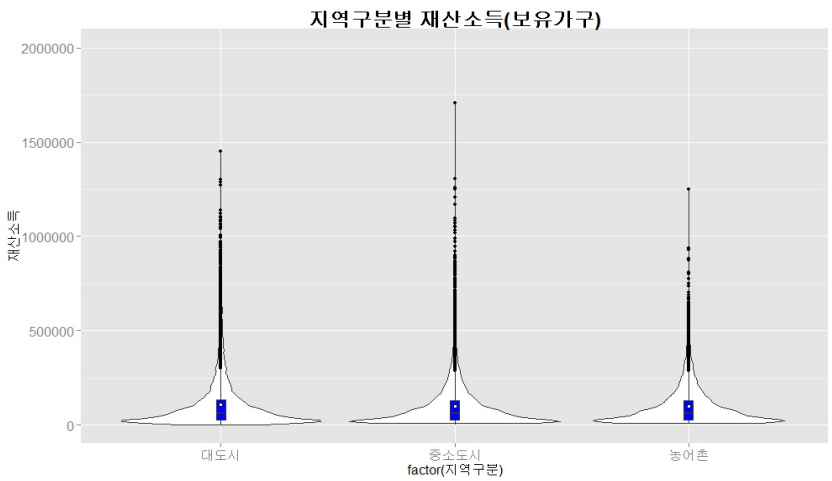

○ 공적이전소득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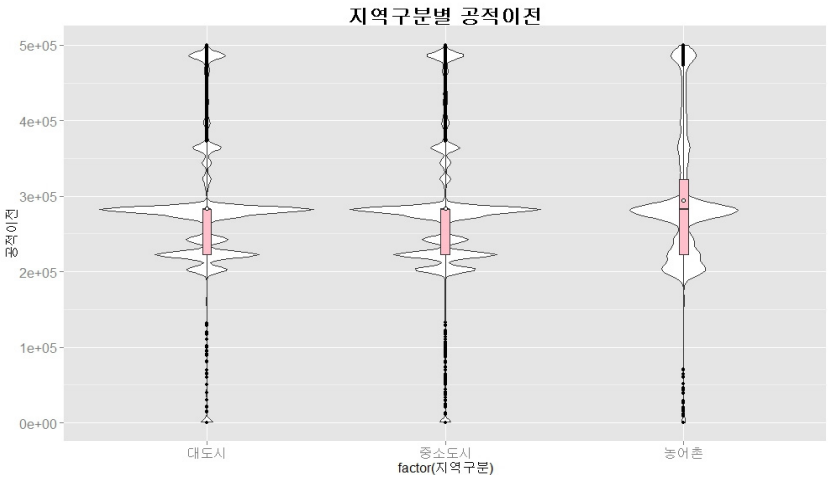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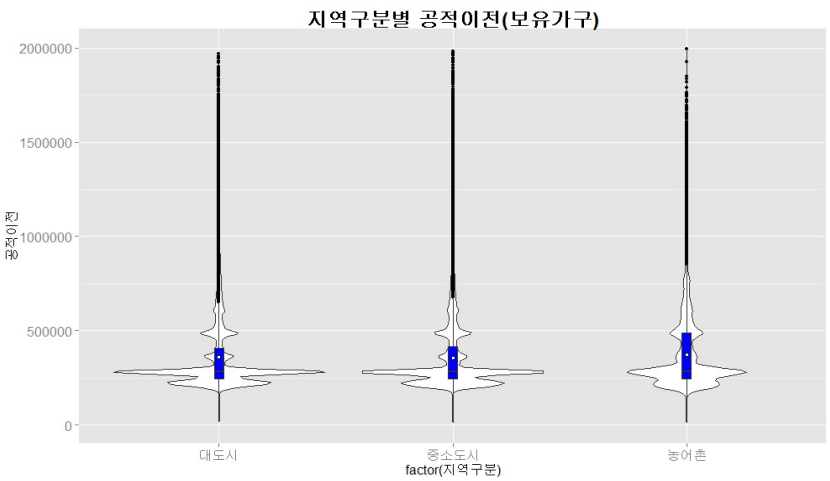

○ 주택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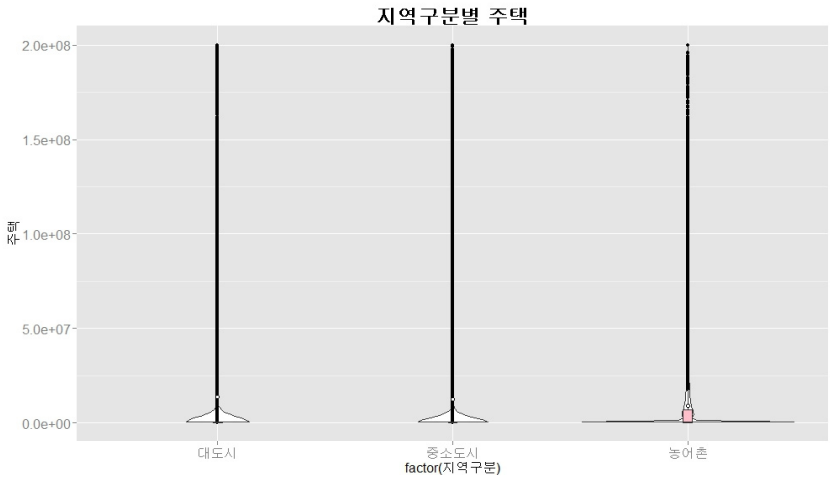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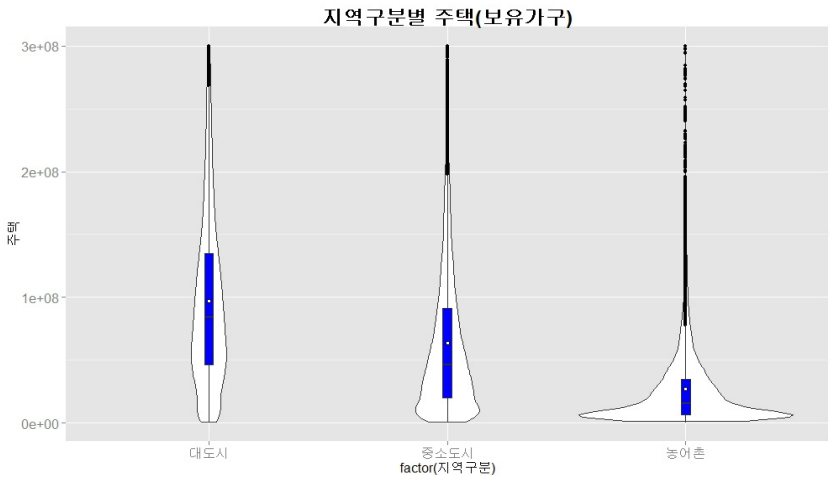

○ 토지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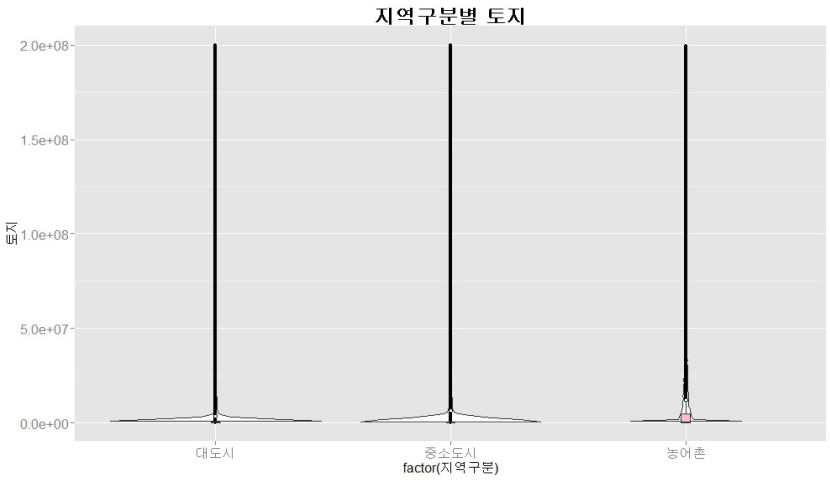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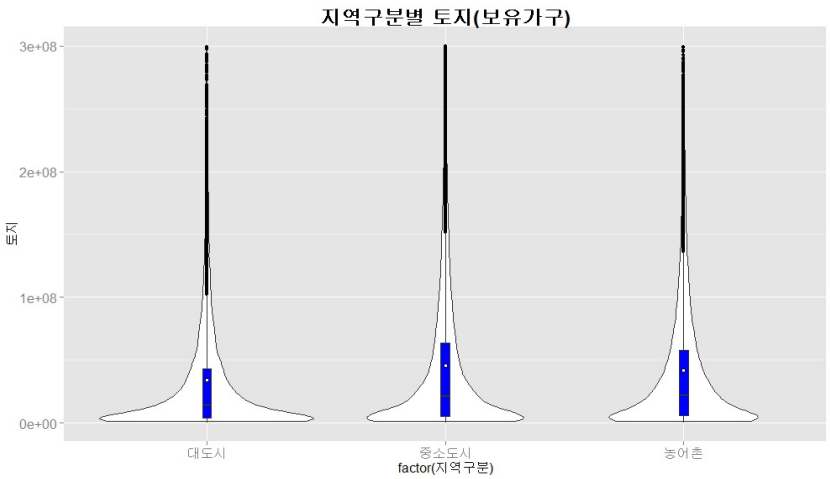

○ 건물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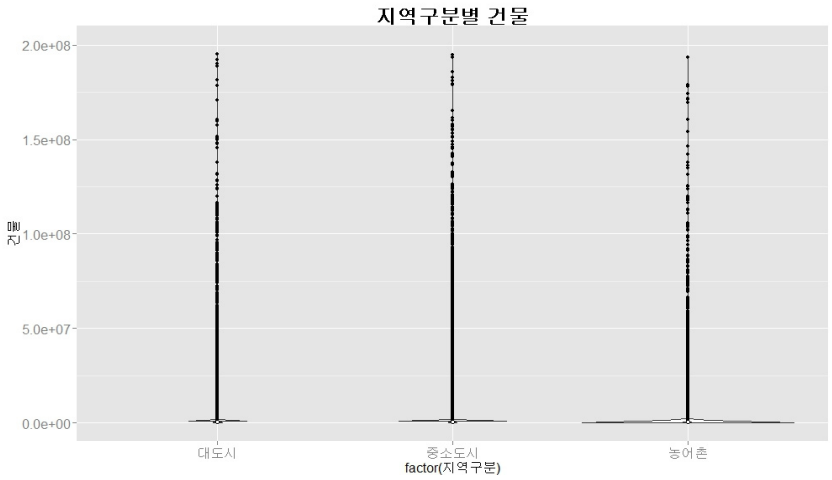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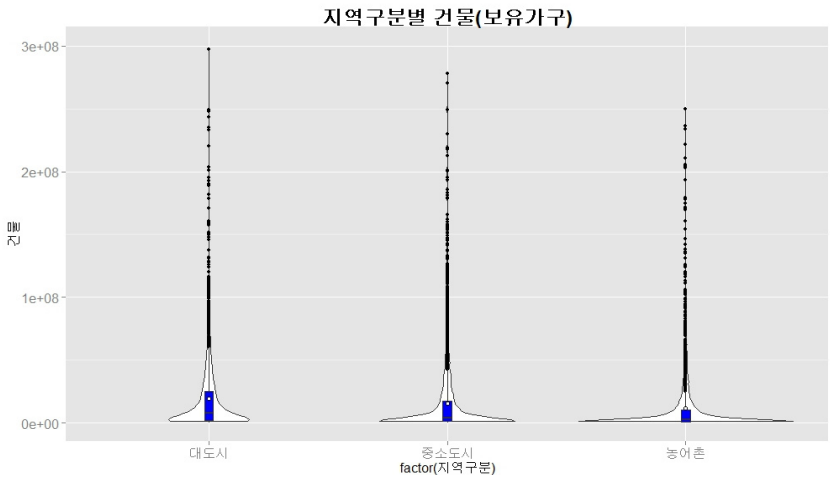

○ 전월세보증금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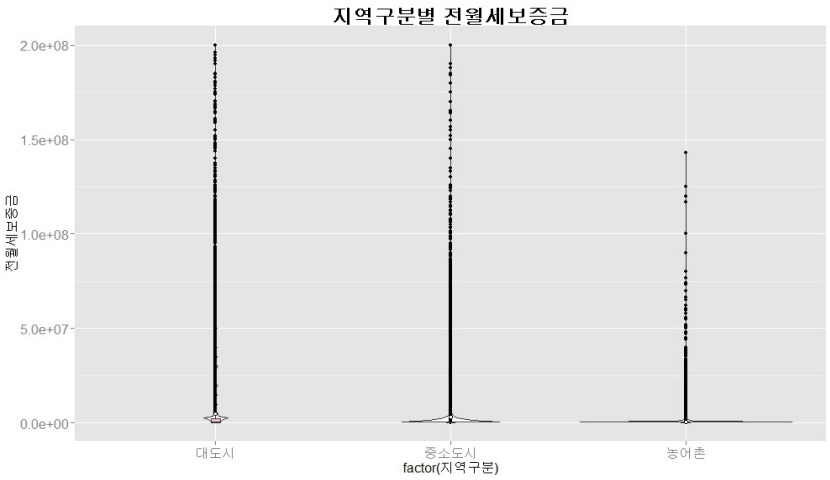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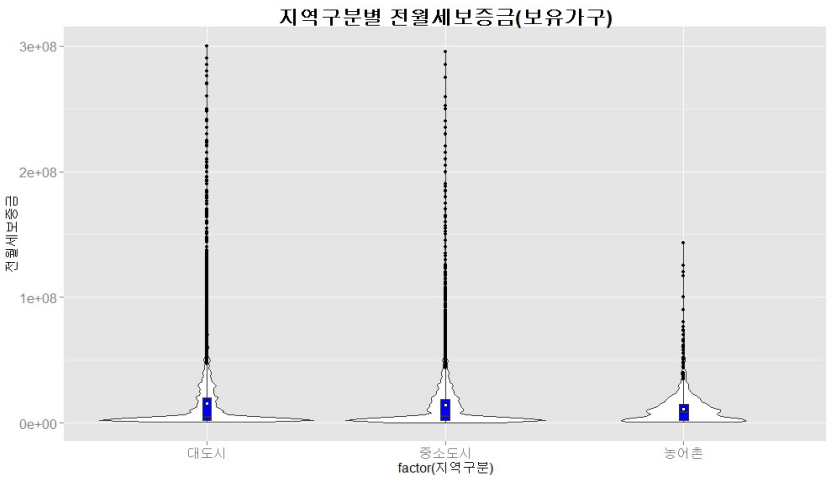

○ 금융재산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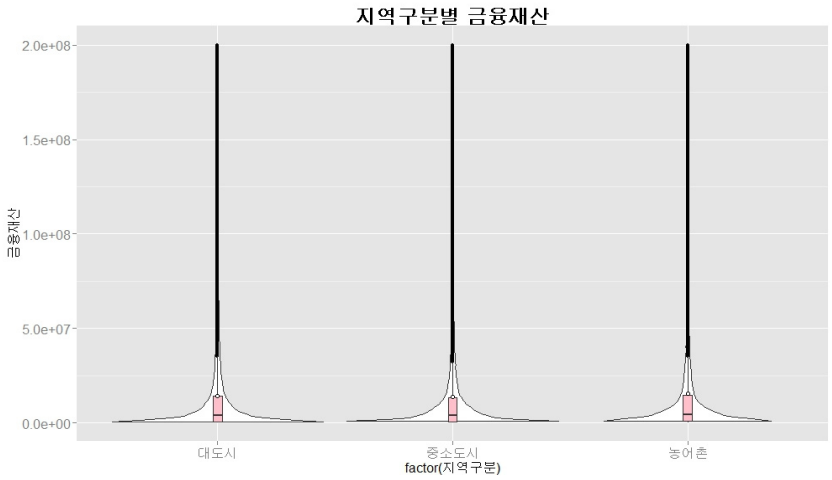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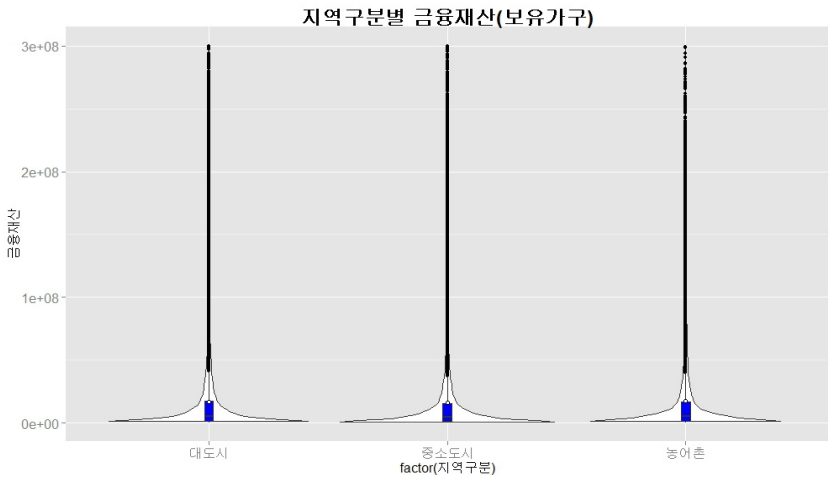

○ 부채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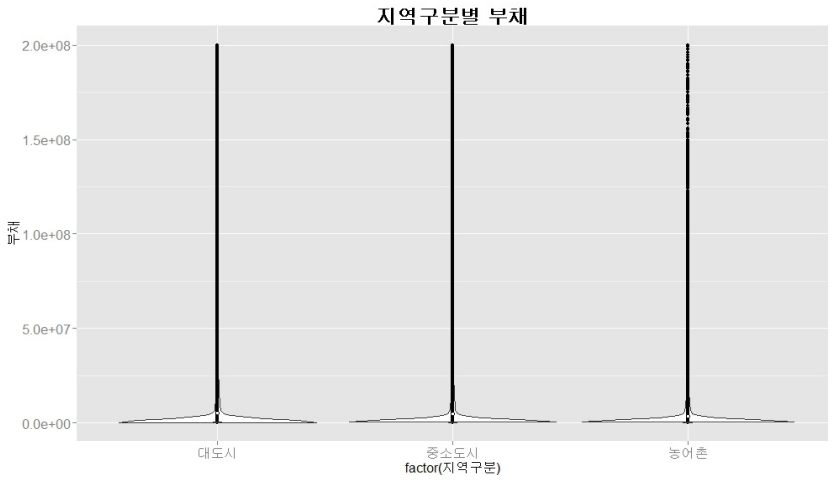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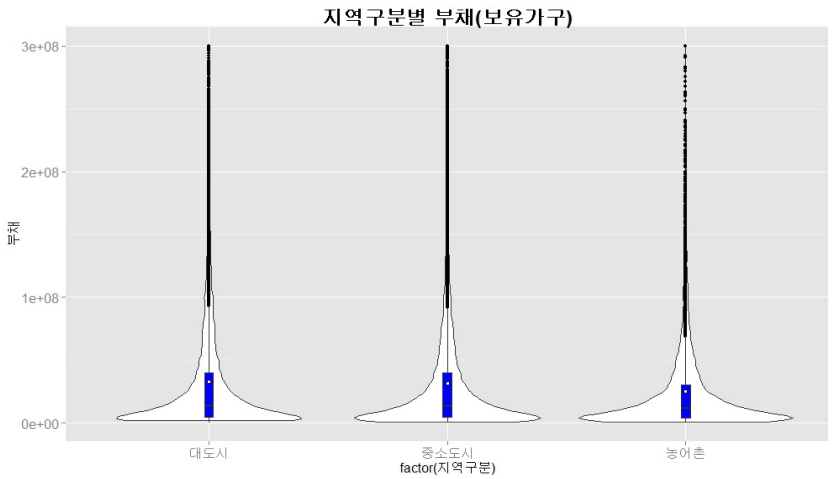

□ 연령집단 ☞ 18~64세 vs. 65세 이상

○ 근로소득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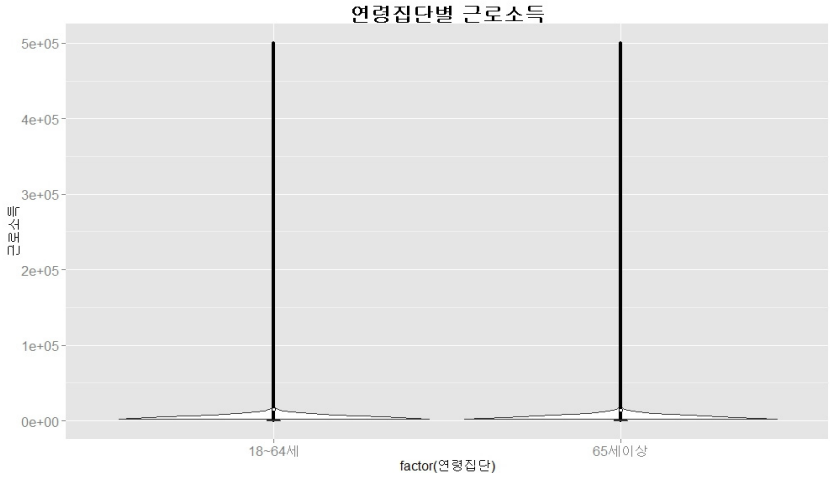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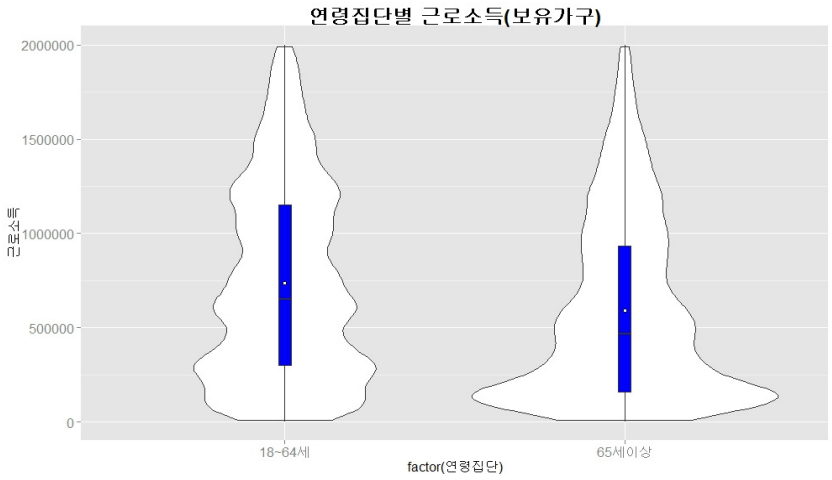

○ 사업소득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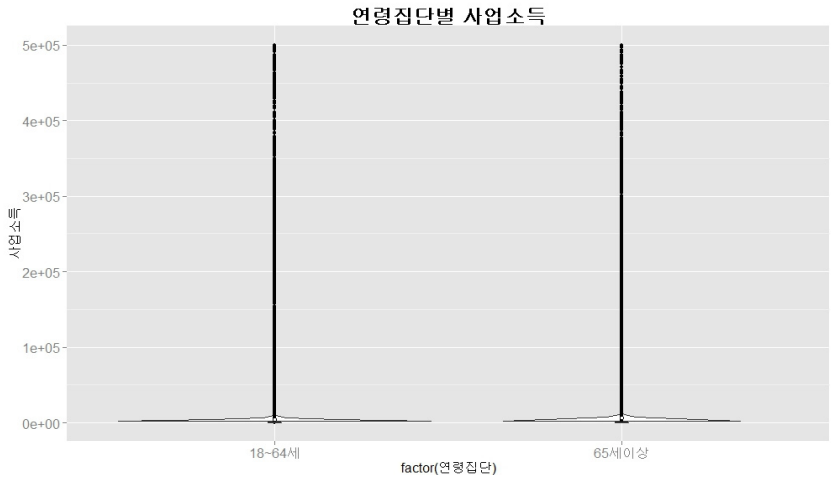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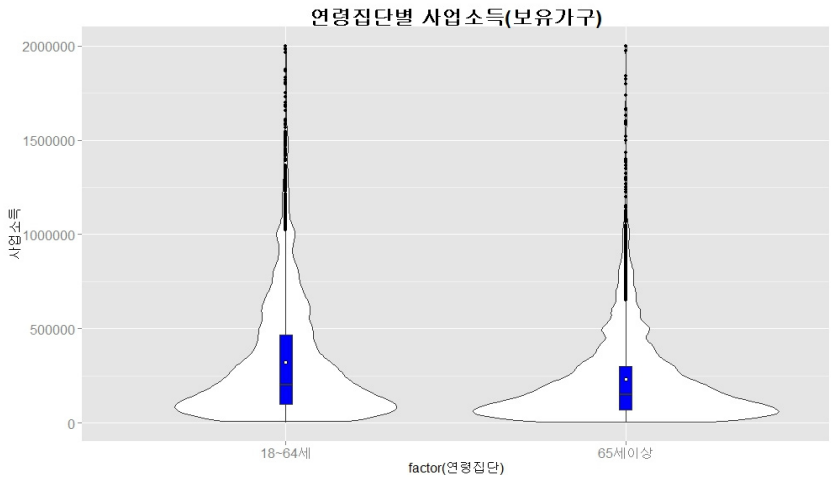

○ 재산소득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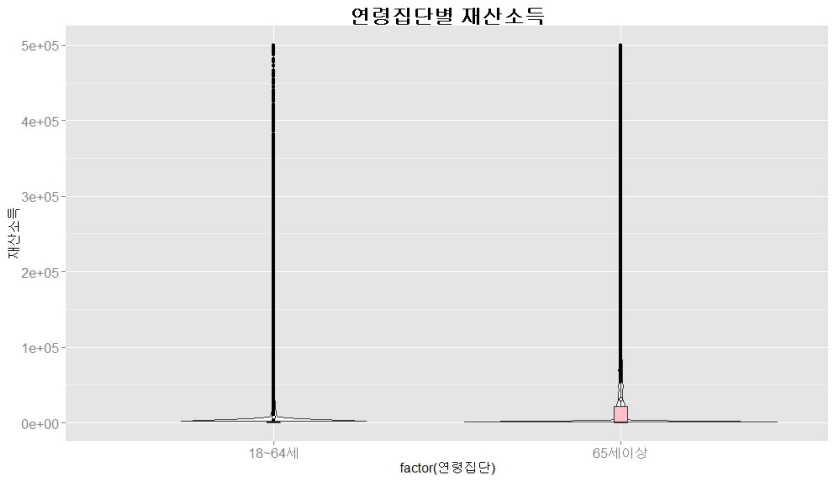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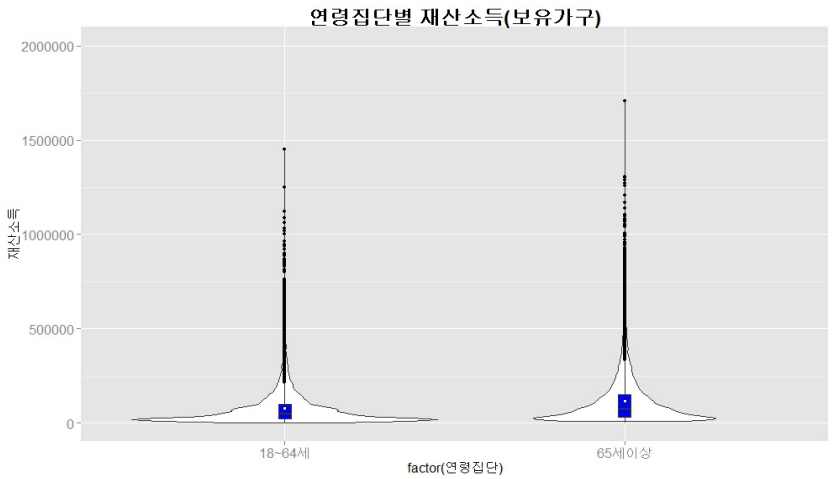

○ 공적이전소득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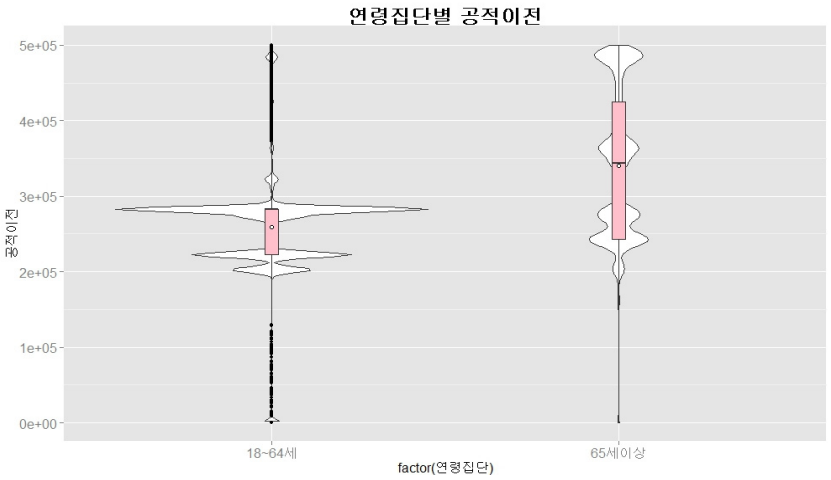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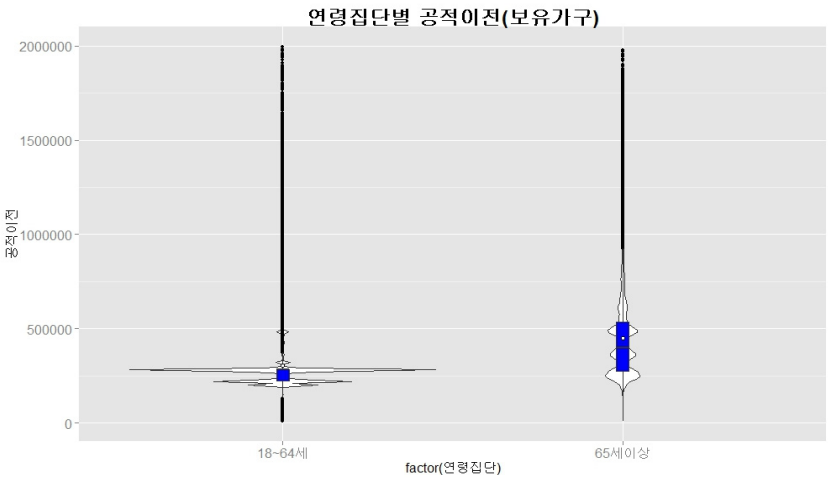

○ 주택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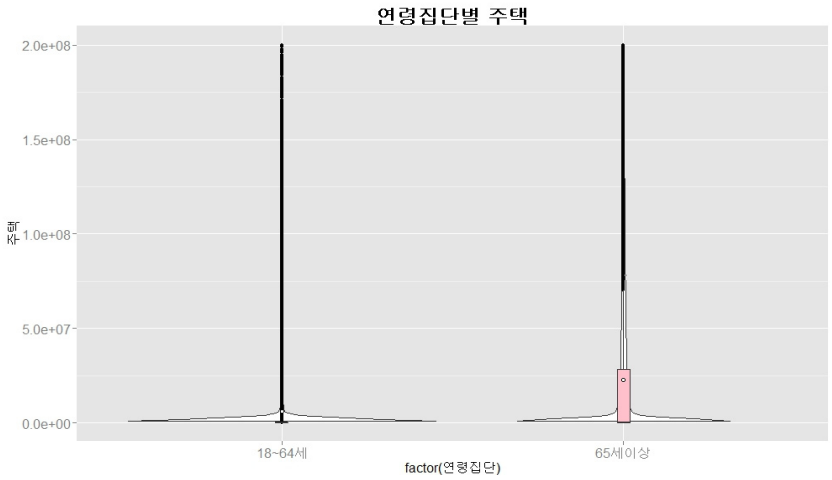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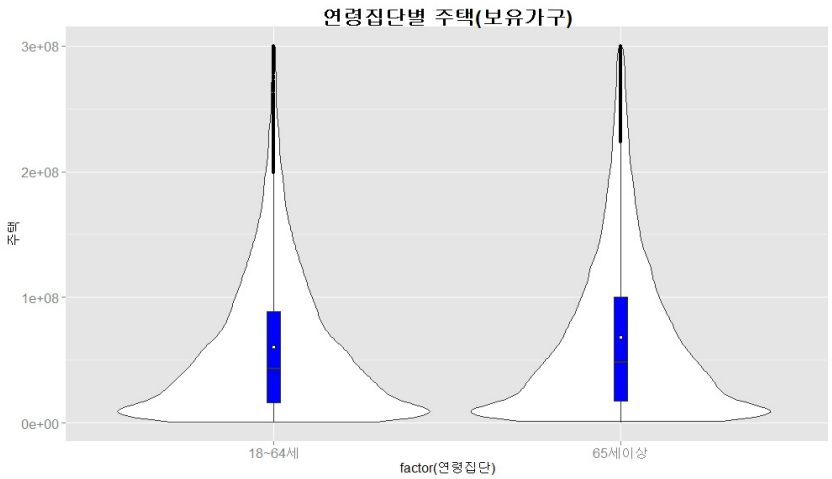

○ 토지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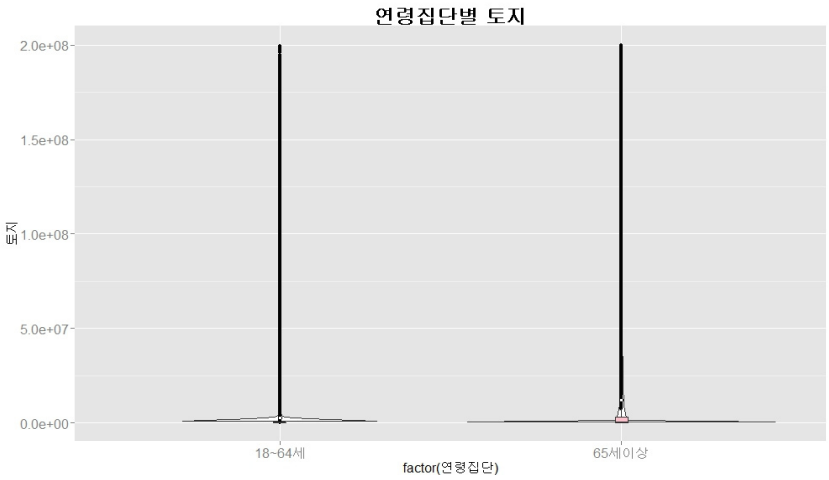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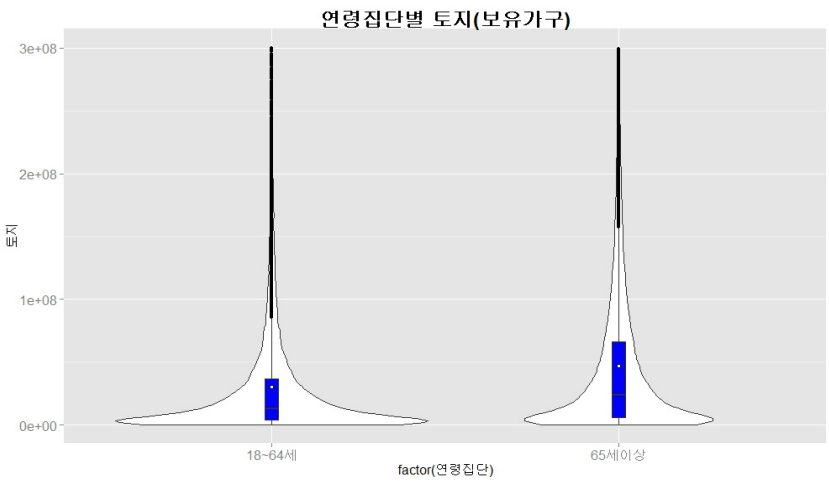

○ 건물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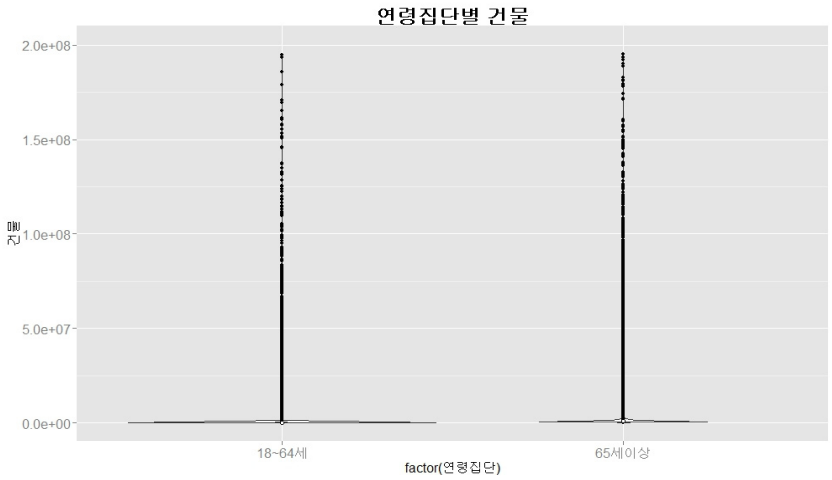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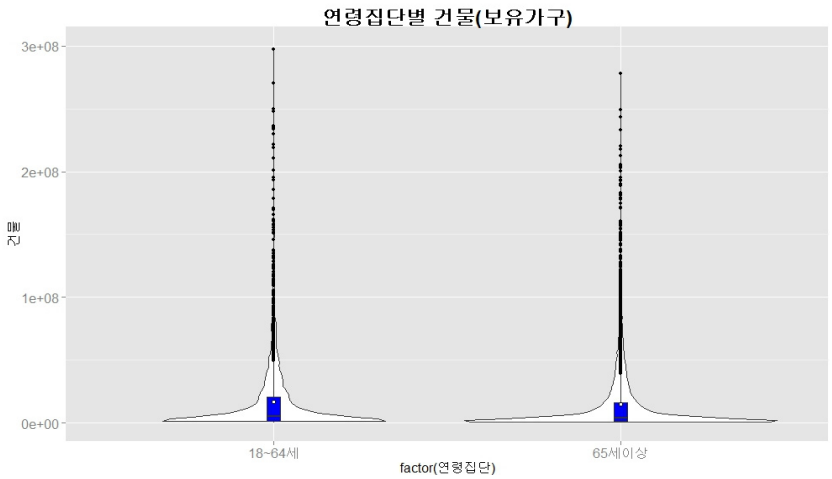

○ 전월세보증금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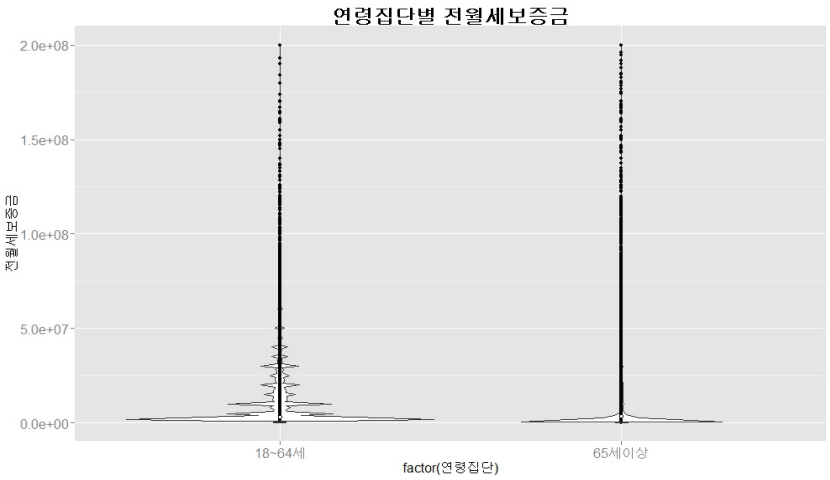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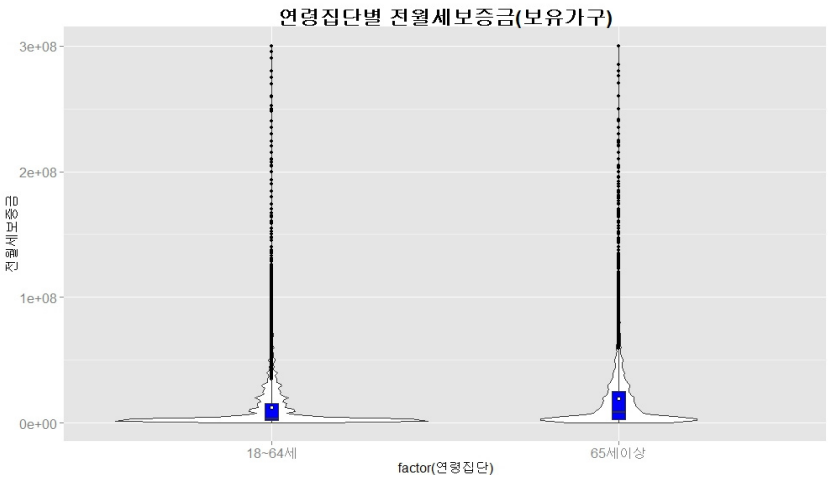

○ 금융재산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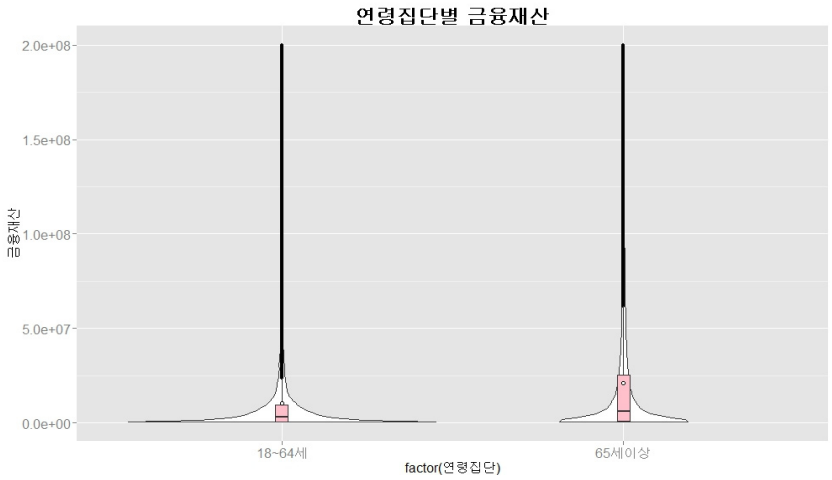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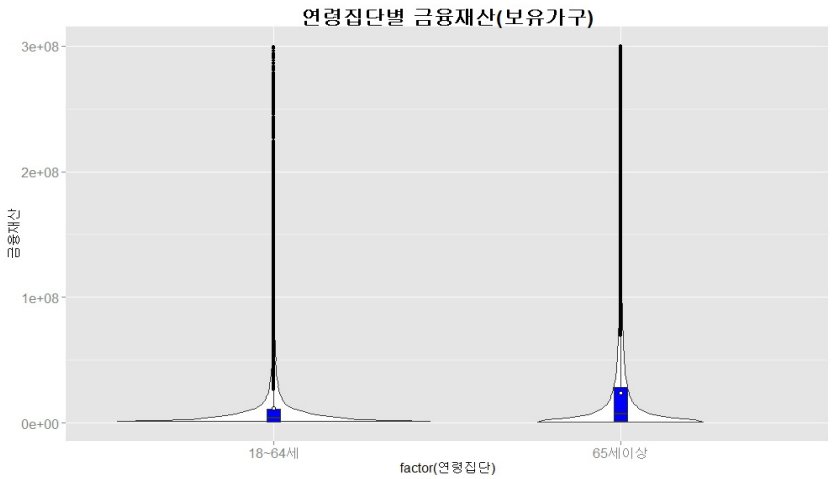

○ 부채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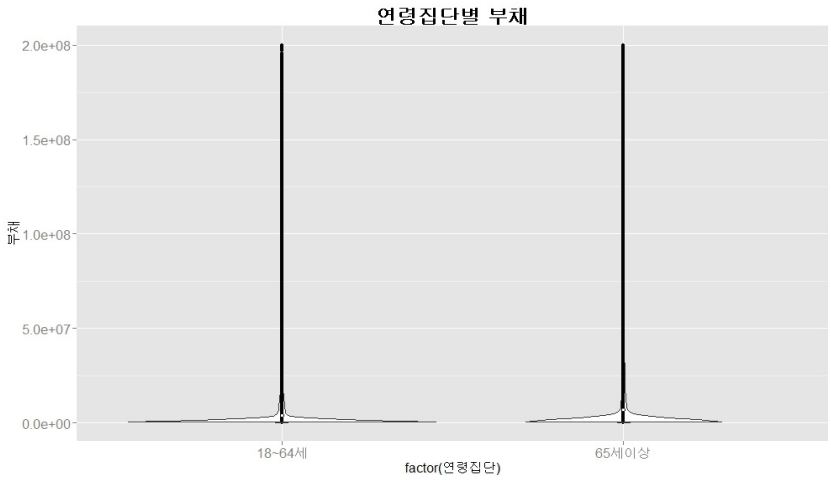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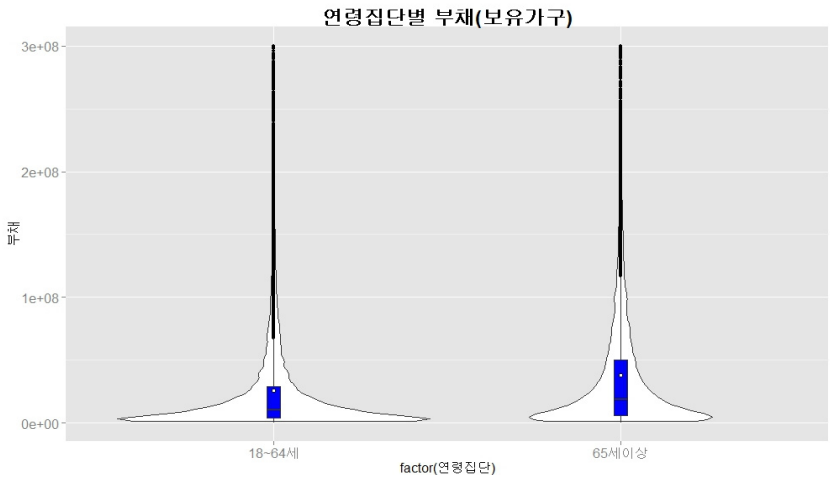

□ 장애등급 ☞ 1급 vs. 2급 vs. 3급 중복

○ 근로소득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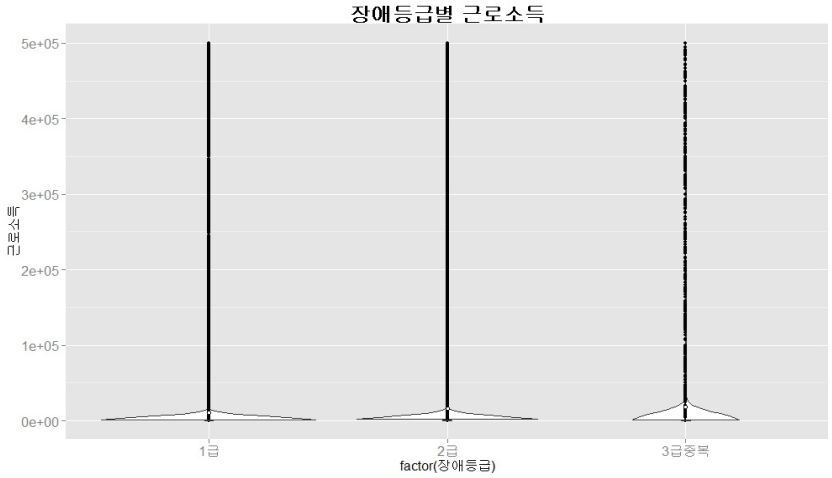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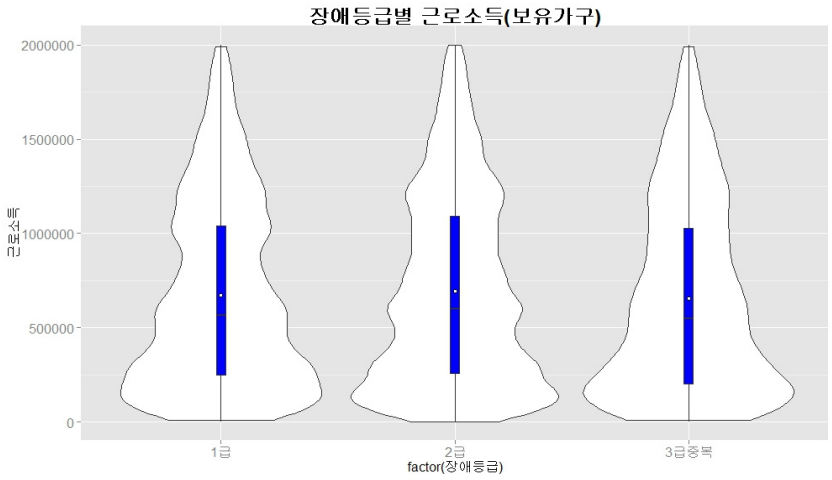

○ 사업소득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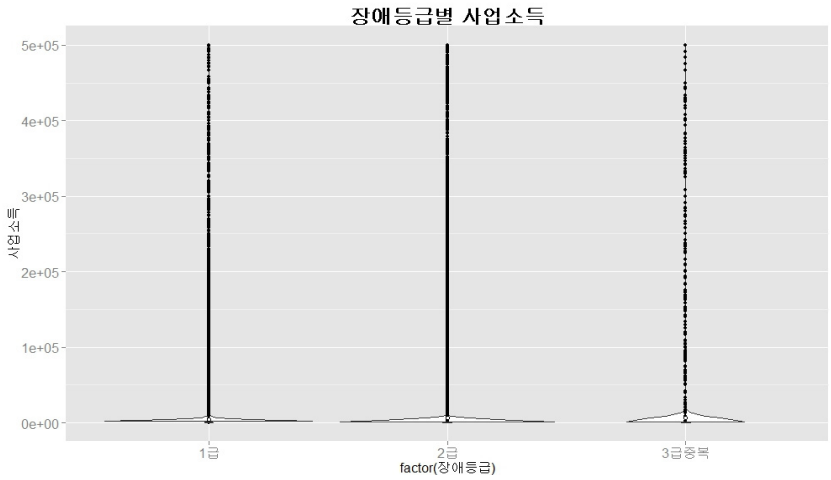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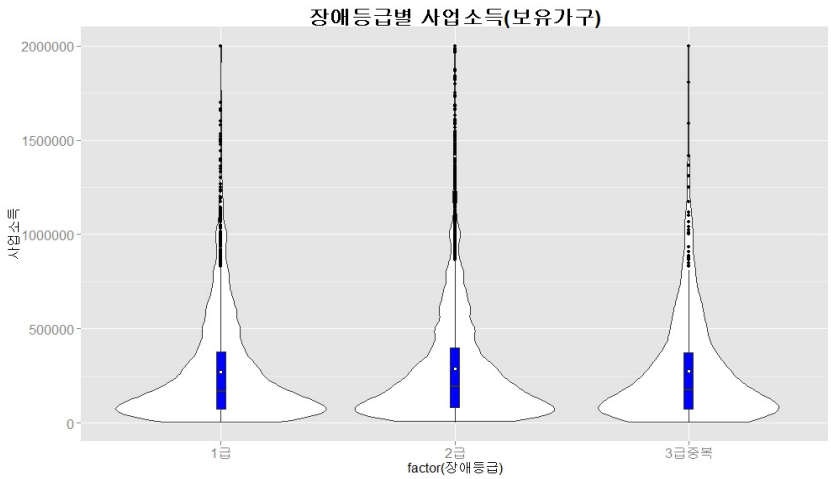

○ 재산소득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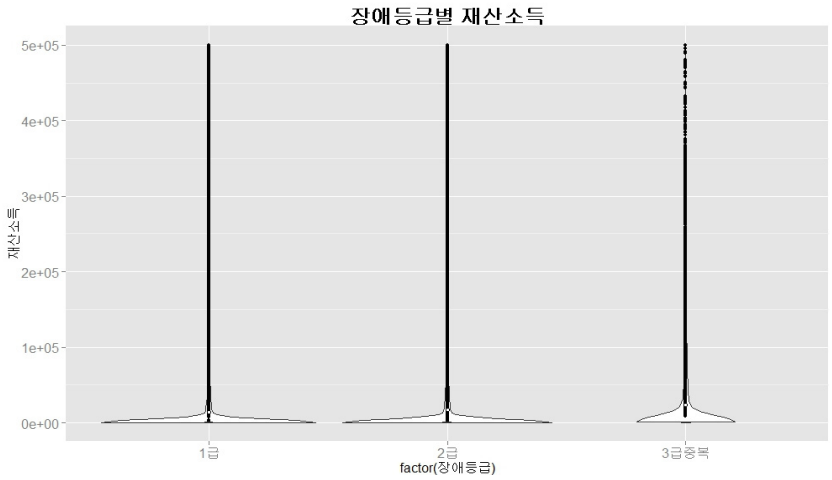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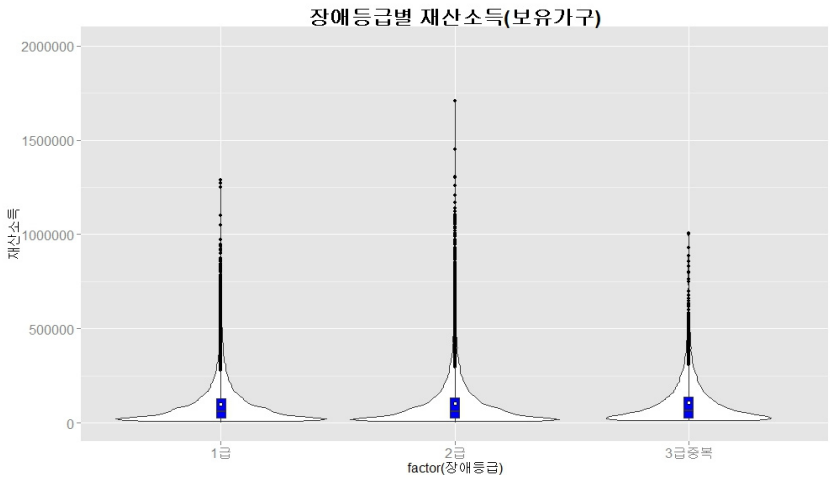

○ 공적이전소득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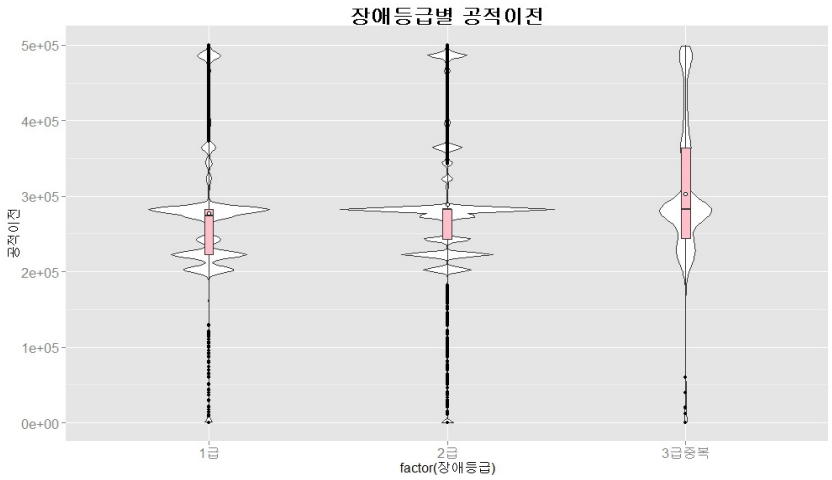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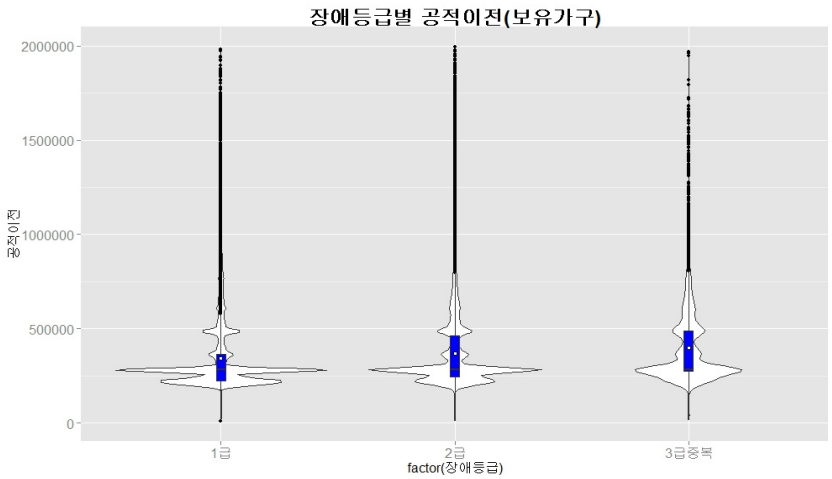

○ 주택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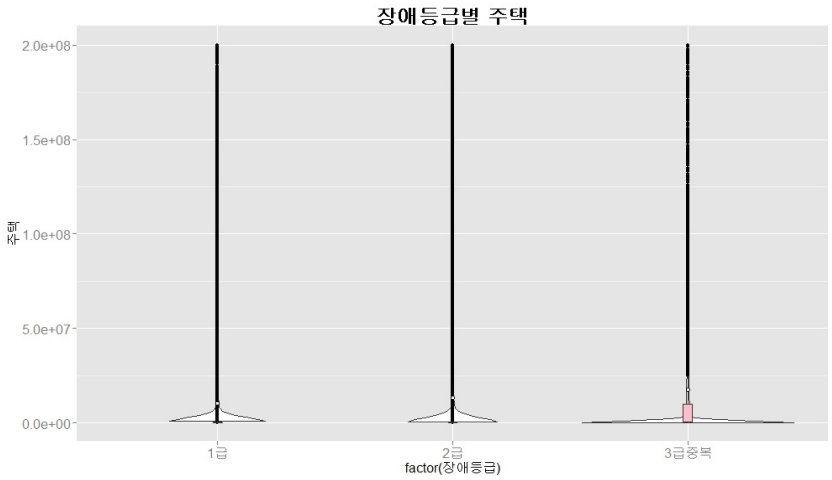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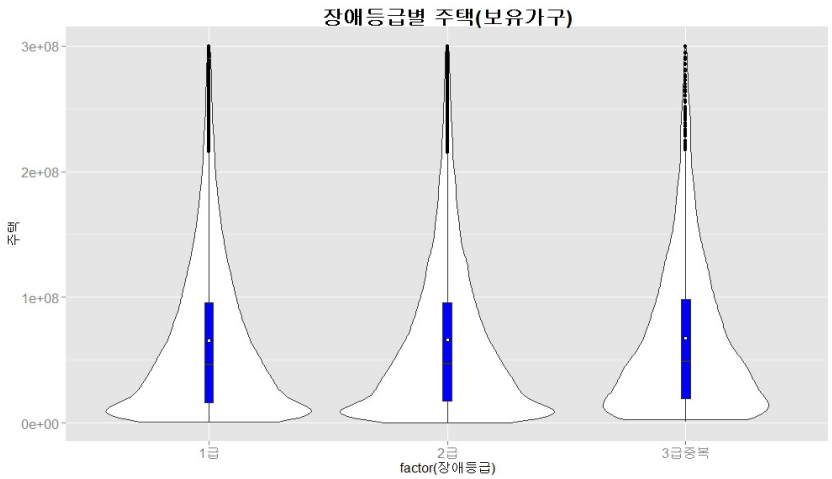

○ 토지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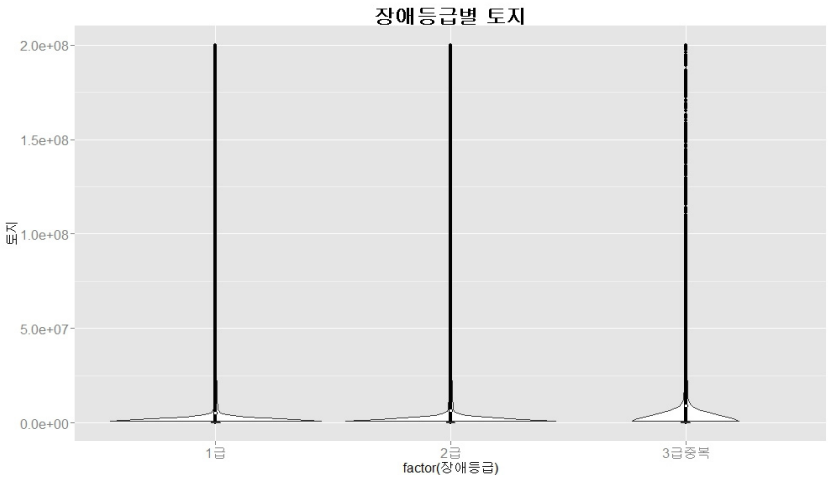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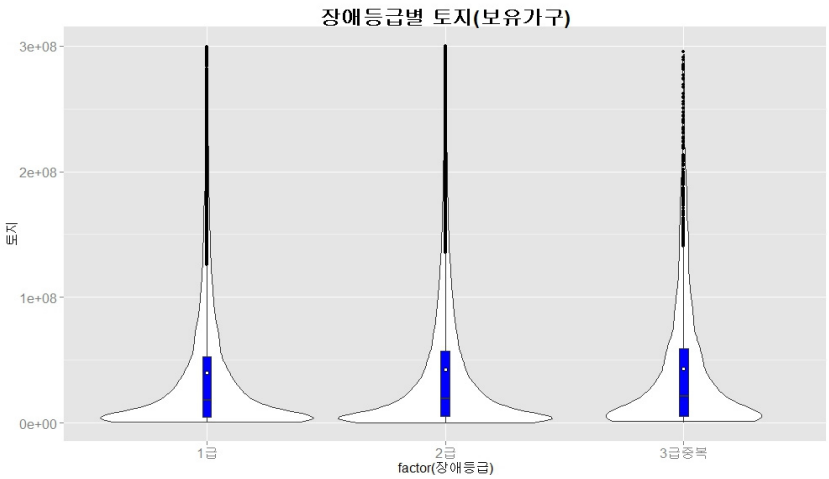

○ 건물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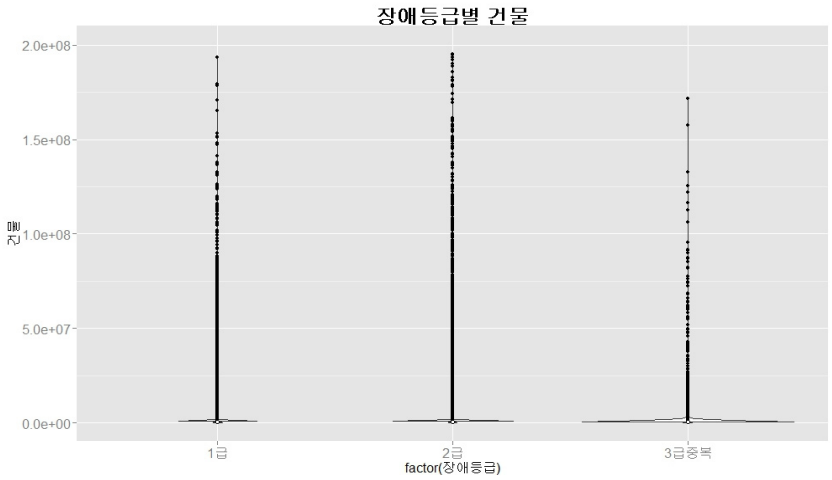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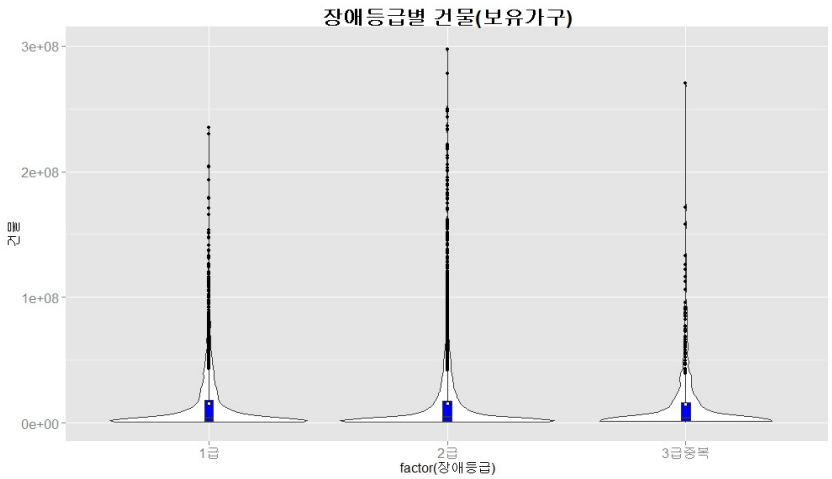

○ 전월세보증금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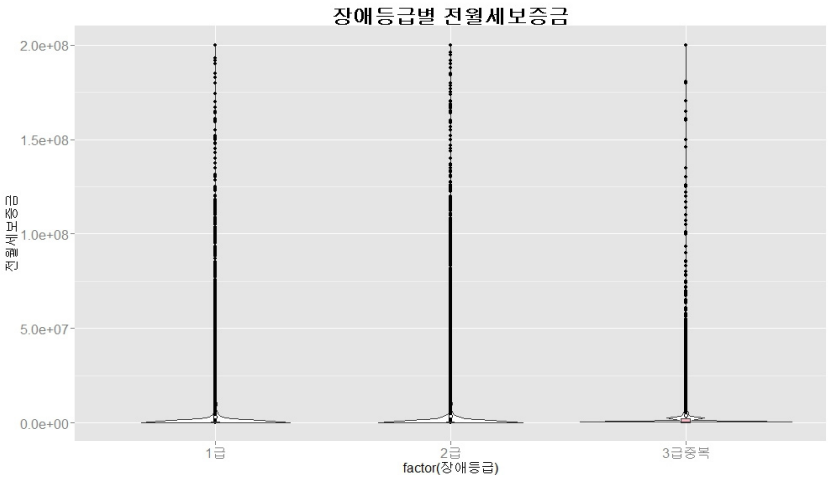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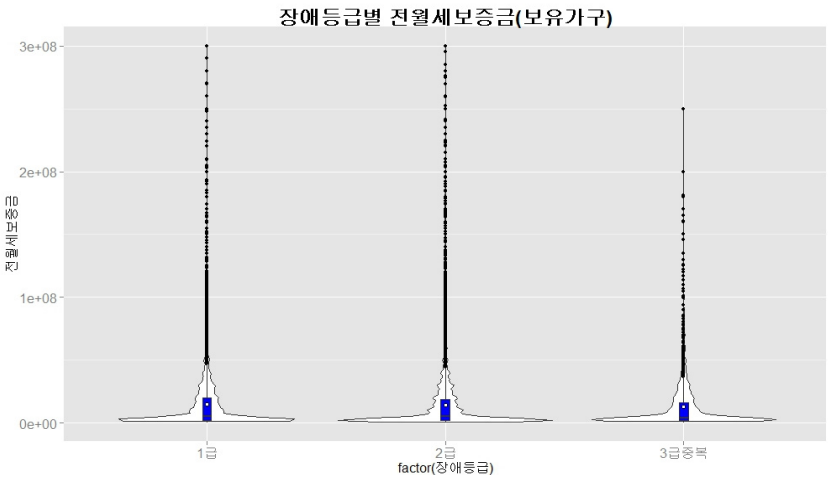

○ 금융재산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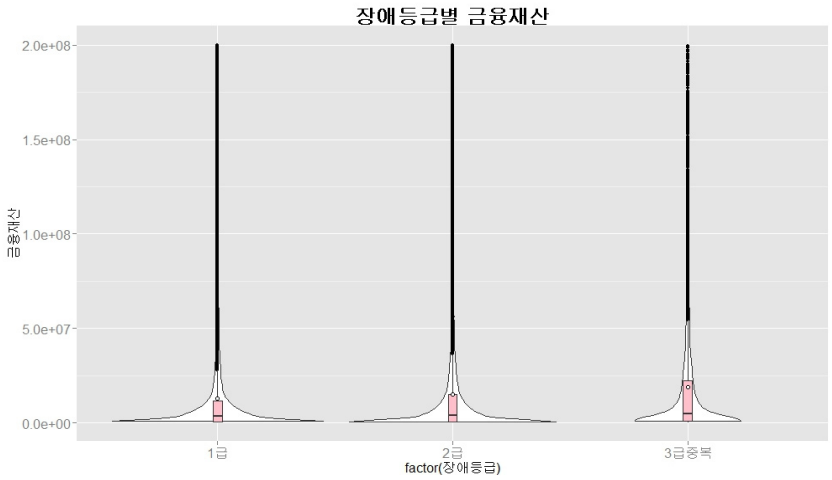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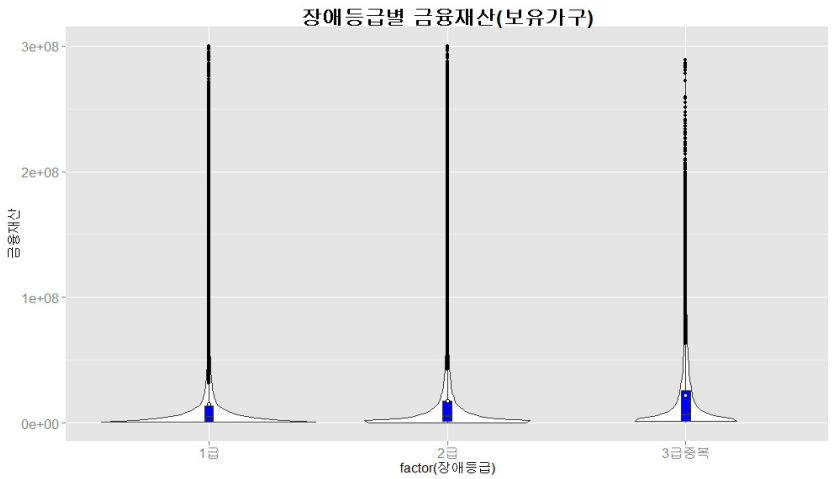

○ 부채

-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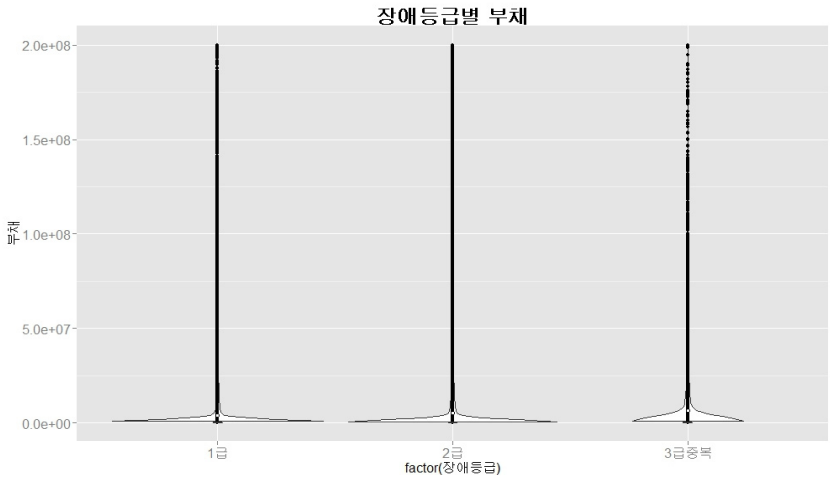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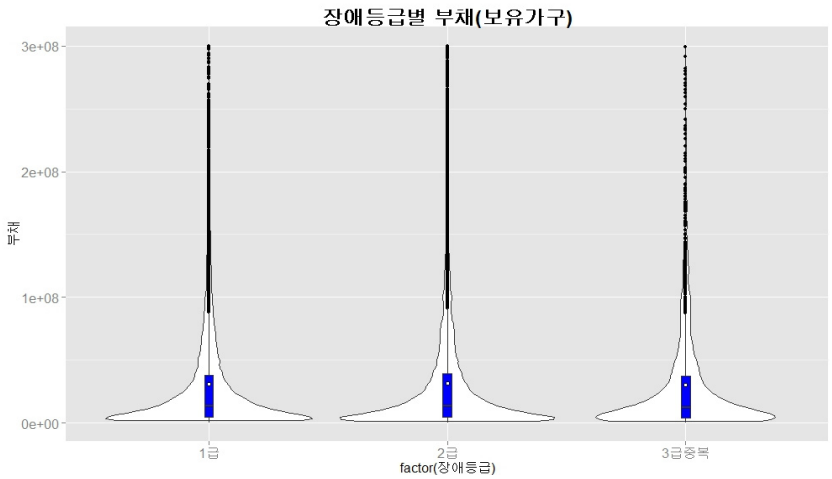

〈부록 3〉 중증장애인 가구 및 노인가구 소득인정액 분포 비교

□ 2017년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 분석 DB 기준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 및 노인가구 소득인정액 분포 비교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전체 중증장애인 및 노인 분포				
단독가구 기준(원) (부부가구의 경우 1.6배 적용)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가구		기초연금 노인가구	
	중증 장애인 비율	누적 중증 장애인 비율	노인 비율	누적 노인 비율
0	37.70%	37.70%	16.60%	16.60%
0 초과 ~ 100,000 이하	7.07%	44.77%	5.28%	21.88%
100,000 초과 ~ 200,000 이하	7.06%	51.83%	9.00%	30.88%
200,000 초과 ~ 300,000 이하	6.11%	57.94%	8.08%	38.95%
300,000 초과 ~ 400,000 이하	4.92%	62.86%	6.75%	45.71%
400,000 초과 ~ 500,000 이하	4.32%	67.18%	5.63%	51.34%
500,000 초과 ~ 600,000 이하	3.41%	70.59%	4.86%	56.20%
600,000 초과 ~ 700,000 이하	2.89%	73.48%	4.36%	60.56%
700,000 초과 ~ 800,000 이하	2.32%	75.80%	3.85%	64.41%
800,000 초과 ~ 810,000 이하	0.20%	76.00%	0.36%	64.77%
810,000 초과 ~ 820,000 이하	0.18%	76.18%	0.36%	65.13%
820,000 초과 ~ 830,000 이하	0.20%	76.39%	0.35%	65.48%
830,000 초과 ~ 840,000 이하	0.21%	76.60%	0.35%	65.83%
840,000 초과 ~ 850,000 이하	0.17%	76.77%	0.34%	66.17%
850,000 초과 ~ 860,000 이하	0.18%	76.95%	0.34%	66.52%
860,000 초과 ~ 870,000 이하	0.21%	77.16%	0.34%	66.86%
870,000 초과 ~ 880,000 이하	0.17%	77.33%	0.35%	67.21%
880,000 초과 ~ 890,000 이하	0.18%	77.51%	0.33%	67.54%
890,000 초과 ~ 900,000 이하	0.17%	77.68%	0.34%	67.88%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전체 중증장애인 및 노인 분포				
단독가구 기준(원) (부부가구의 경우 1.6배 적용)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가구		기초연금 노인가구	
	중증 장애인 비율	누적 중증 장애인 비율	노인 비율	누적 노인 비율
900,000 초과 ~ 910,000 이하	0.16%	77.84%	0.32%	68.20%
910,000 초과 ~ 920,000 이하	0.17%	78.01%	0.31%	68.51%
920,000 초과 ~ 930,000 이하	0.15%	78.16%	0.31%	68.82%
930,000 초과 ~ 940,000 이하	0.15%	78.31%	0.30%	69.12%
940,000 초과 ~ 950,000 이하	0.21%	78.52%	0.30%	69.42%
950,000 초과 ~ 960,000 이하	0.14%	78.66%	0.29%	69.71%
960,000 초과 ~ 970,000 이하	0.14%	78.80%	0.28%	69.98%
970,000 초과 ~ 980,000 이하	0.19%	78.99%	0.28%	70.26%
980,000 초과 ~ 990,000 이하	0.15%	79.14%	0.27%	70.54%
990,000 초과 ~ 1,000,000 이하	0.15%	79.29%	0.28%	70.81%
1,000,000 초과 ~ 1,010,000 이하	0.14%	79.44%	0.27%	71.08%
1,010,000 초과 ~ 1,020,000 이하	0.13%	79.57%	0.26%	71.34%
1,020,000 초과 ~ 1,030,000 이하	0.14%	79.71%	0.26%	71.59%
1,030,000 초과 ~ 1,040,000 이하	0.13%	79.84%	0.26%	71.85%
1,040,000 초과 ~ 1,050,000 이하	0.16%	80.00%	0.25%	72.10%
1,050,000 초과 ~ 1,060,000 이하	0.13%	80.13%	0.24%	72.34%
1,060,000 초과 ~ 1,070,000 이하	0.13%	80.25%	0.24%	72.58%
1,070,000 초과 ~ 1,080,000 이하	0.12%	80.37%	0.23%	72.81%
1,080,000 초과 ~ 1,090,000 이하	0.15%	80.52%	0.23%	73.04%
1,090,000 초과 ~ 1,100,000 이하	0.13%	80.66%	0.23%	73.27%
1,100,000 초과 ~ 1,110,000 이하	0.13%	80.78%	0.22%	73.49%
1,110,000 초과 ~ 1,120,000 이하	0.13%	80.91%	0.21%	73.70%
1,120,000 초과 ~ 1,130,000 이하	0.12%	81.03%	0.17%	73.86%
1,130,000 초과 ~ 1,140,000 이하	0.15%	81.18%	0.16%	74.03%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전체 중증장애인 및 노인 분포				
단독가구 기준(원) (부부가구의 경우 1.6배 적용)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가구		기초연금 노인가구	
	중증 장애인 비율	누적 중증 장애인 비율	노인 비율	누적 노인 비율
1,140,000 초과 ~ 1,150,000 이하	0.11%	81.29%	0.16%	74.19%
1,150,000 초과 ~ 1,160,000 이하	0.14%	81.43%	0.16%	74.35%
1,160,000 초과 ~ 1,170,000 이하	0.11%	81.54%	0.16%	74.51%
1,170,000 초과 ~ 1,180,000 이하	0.11%	81.65%	0.16%	74.66%
1,180,000 초과 ~ 1,190,000 이하	0.14%	81.79%	0.16%	74.82%
1,190,000 초과 ~ 1,200,000 이하	0.12%	81.91%	0.16%	74.97%
1,200,000 초과 ~ 1,210,000 이하	0.11%	82.02%	0.15%	75.13%
1,210,000 초과 ~ 1,220,000 이하	0.11%	82.13%	0.15%	75.27%
1,220,000 초과 ~ 1,230,000 이하	0.11%	82.24%	0.15%	75.42%
1,230,000 초과 ~ 1,240,000 이하	0.10%	82.35%	0.15%	75.57%
1,240,000 초과 ~ 1,250,000 이하	0.12%	82.46%	0.14%	75.71%
1,250,000 초과 ~ 1,260,000 이하	0.12%	82.59%	0.14%	75.85%
1,260,000 초과 ~ 1,270,000 이하	0.11%	82.70%	0.14%	75.99%
1,270,000 초과 ~ 1,280,000 이하	0.10%	82.80%	0.14%	76.13%
1,280,000 초과 ~ 1,290,000 이하	0.10%	82.90%	0.14%	76.26%
1,290,000 초과 ~ 1,300,000 이하	0.13%	83.04%	0.14%	76.40%
1,300,000 초과 ~ 1,310,000 이하	0.11%	83.14%	0.13%	76.54%
1,310,000 초과 ~ 1,320,000 이하	0.11%	83.25%	0.13%	76.67%
1,320,000 초과 ~ 1,330,000 이하	0.10%	83.35%	0.13%	76.80%
1,330,000 초과 ~ 1,340,000 이하	0.11%	83.47%	0.13%	76.93%
1,340,000 초과 ~ 1,350,000 이하	0.10%	83.56%	0.13%	77.07%
1,350,000 초과 ~ 1,360,000 이하	0.10%	83.66%	0.13%	77.20%
1,360,000 초과 ~ 1,370,000 이하	0.11%	83.78%	0.12%	77.32%
1,370,000 초과 ~ 1,380,000 이하	0.09%	83.86%	0.12%	77.44%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전체 중증장애인 및 노인 분포				
단독가구 기준(원) (부부가구의 경우 1.6배 적용)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가구		기초연금 노인가구	
	중증 장애인 비율	누적 중증 장애인 비율	노인 비율	누적 노인 비율
1,380,000 초과 ~ 1,390,000 이하	0.10%	83.97%	0.12%	77.57%
1,390,000 초과 ~ 1,400,000 이하	0.10%	84.06%	0.13%	77.69%
1,400,000 초과 ~ 1,410,000 이하	0.12%	84.19%	0.13%	77.82%
1,410,000 초과 ~ 1,420,000 이하	0.09%	84.28%	0.12%	77.94%
1,420,000 초과 ~ 1,430,000 이하	0.09%	84.37%	0.12%	78.07%
1,430,000 초과 ~ 1,440,000 이하	0.09%	84.46%	0.12%	78.18%
1,440,000 초과 ~ 1,450,000 이하	0.09%	84.54%	0.12%	78.30%
1,450,000 초과 ~ 1,460,000 이하	0.10%	84.64%	0.12%	78.42%
1,460,000 초과 ~ 1,470,000 이하	0.12%	84.76%	0.11%	78.53%
1,470,000 초과 ~ 1,480,000 이하	0.08%	84.84%	0.12%	78.65%
1,480,000 초과 ~ 1,490,000 이하	0.08%	84.91%	0.11%	78.76%
1,490,000 초과 ~ 1,500,000 이하	0.08%	85.00%	0.12%	78.88%
1,500,000 초과 ~ 1,600,000 이하	0.83%	85.83%	1.09%	79.97%
1,600,000 초과 ~ 1,700,000 이하	0.67%	86.49%	0.99%	80.96%
1,700,000 초과 ~ 1,800,000 이하	0.61%	87.10%	0.91%	81.87%
1,800,000 초과 ~ 1,900,000 이하	0.53%	87.63%	0.82%	82.70%
1,900,000 초과 ~ 2,000,000 이하	0.51%	88.14%	0.77%	83.46%
2,000,000 초과	11.86%	100.00%	16.54%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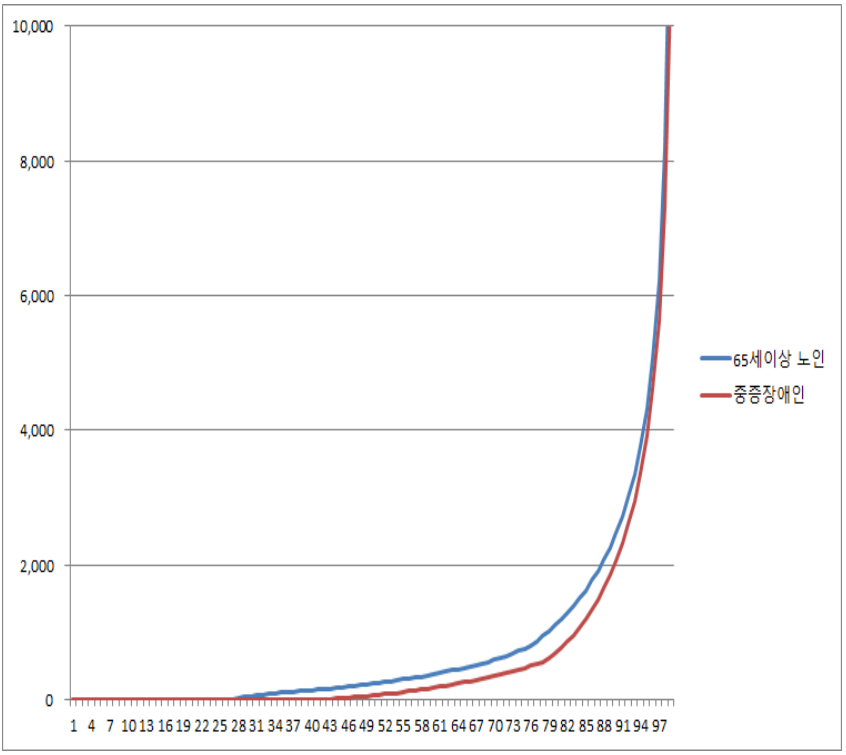
□ 중증장애인 가구와 노인가구 소득인정액 분포 비교